

【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

예 산 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 기금운용계획안 】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1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1. 2015년도 일자리 예산안	1
가. 일자리 예산안 규모	1
나.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2
1)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2
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3
3)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4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5
가. 총괄 현황	5
나. 세입예산안	6
다. 세출예산안	7
라. 기금운용계획안	9
마. 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10
3. 일반회계	11
가. 세입예산안	11
나. 세출예산안	12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
가. 특별회계 개요	12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3
다. 세출예산안	13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가. 특별회계 개요	13
나. 세입예산안	13
다. 세출예산안	14
6. 지역발전특별회계	15
가. 특별회계 개요	15
나. 세입예산안:해당사항 없음	15
다. 세출예산안	15
7. 고용보험기금	17
가. 기금 개요	17
1) 기금사업의 목표	17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17
나. 수입계획안	18
다. 지출계획안	19
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
가. 기금 개요	20
1) 기금의 사업목표	20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0
나. 수입계획안	21

다. 지출계획안	22
9. 임금채권보장기금	22
가. 기금 개요	22
1) 기금의 사업목표	22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3
나. 수입계획안	23
다. 지출계획안	24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
가. 기금 개요	25
1) 기금의 사업목표	25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5
나. 수입계획안	26
다. 지출계획안	27
11. 근로복지진흥기금	28
가. 기금 개요	28
1) 기금의 사업목표	28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28
나. 수입계획안	29
다. 지출계획안	30

II. 검토의견32

1. 일반회계 32

가.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32

1) 직업안정기관 운영(1031-301) 34

2) 해외취업지원(1035-304) 39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036-301) 47

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1043-304) 57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055-300) 60

6) 실업크레딧지원(신규, 1093-350) 67

나.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78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 80

2) 국가·민간자격관리(1138-350) 88

다. 노사정책(2000 프로그램) 91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2031-300) 92

2) 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96

라.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08

1) 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110

2)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3031-302) 113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3031-304) 121

4)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123

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400 프로그램) 129

1)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사업, 8422-883)	130
2. 지역발전특별회계	132
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132
나. 예산안 편성내역	134
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135
3. 고용보험기금	140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40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140
2) 고용보험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 명확화 필요	143
나.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151
1) 고용촉진지원금(1046-350)	153
2) 고용창출지원사업(1047-350)	157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1049-354)	166
4) 고용동향조사(1052-350)	171
5) 취약계층 취업지원(1055-351)	175
6) 고객상담센터 지원(1055-352)	180
7)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183
다.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189
1) 일·학습병행제 추진 등(1150-356)	191
2)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1145-350)	201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1148-350)	207

4)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1191-350)	215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217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1345-350)	218
2)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222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1345-352)	229
4) 모성보호육아지원(1346-350)	240
5) 임금피크제 지원(1347-351)	246
6) 중장년층 취업지원(1347-352)	253
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59
가. 산재보험사업(4000 프로그램)	259
1) 산재보험급여관리(4053-351)	261
2) 재해조사 역량강화(4053-353, 신규)	266
3)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273
나.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79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281
2)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285
3) 유해작업환경 개선(4153-350)	291
4) 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294
5) 산재예방시설융자(4158-450)	305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09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309

1)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311
2)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고용률 제고 필요	314
나.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318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318
2) 장애인취업지원(1456-311)	321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324
6. 임금채권보장기금	328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328
1) 무료법률구조지원 (3052-302)	329
7. 근로복지진흥기금	337
가. 중소기업계정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3000)	337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338
2)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3061-302)	342

【 참고자료 목차 】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351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381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386
【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387
【참고자료 5】 2013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	417
【참고자료 6】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2014. 8. 27)	418
【참고자료 7】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424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2012.5.17.)	428
【참고자료 9】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2014.5.26.)	435
【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447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450
【참고자료 12】 사내자격인증제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455
【참고자료 13】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460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	462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2015년도 일자리 예산안

가. 일자리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14.3조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조 131억원(7.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376.0조원 기준 5.7%에 해당함.

< 표 > 20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12년 (증가율)	'13년 (증가율)	'14년 (증가율)	'15안 (증가율)
◇ 총지출	325.4	349.0(7.2%)	355.8(1.9%)	376.0(5.7%)
◇ 일자리	11.2	12.7(13.4%)	13.2(3.9%)	14.3(7.6%)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여성(경력단절)·청년·장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임.

나.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1)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 (청년) 중견·중소기업에서 청년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을 신설(1.4천명)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함
또한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K-Move 스쿨 확대(2→3천명) 등 해외취업·인턴 규모를 확대(524→699억원, 6.4천명→8.9천명)함.

-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속 중인 고졸 학력 근로자(졸업 후 1년 이내)로 '14.4.15. 이후 취업하여 근속시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

능력중심의 산업현장을 만들고, 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869 → 2,158억원)함.

- ◆ 운영지원: 434→ 834억원
- ◆ 훈련비지원: 235→ 1,034억원
- ◆ 공동훈련센터: 200→ 290억원

- (여성)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6,982 → 8,047억원)하고,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신설 44억원)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신규 채용(195 → 223억원)하는 사업주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조정
- ◆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 도입: 한 아이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근로

자의 첫 달 급여 증액(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 → 100%, 150만원 한도)

- (장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238 → 338억원)하고, 중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291→ 330억원)함.

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 ◆ 희망리본을 패키지 I 과 통합하되, 패키지 I 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재설계
- ◆ ('14) 취업성공패키지 250천명(저소득층 등 130천명, 청년·중장년 120천명) 및 희망리본 12천명 → ('15) 취업성공패키지 300천명(저소득층 등 150천명, 청년·중장년 150천명)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15년, 376억원)하여 실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도록 지원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160억원, 5,967명)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지원금을 확대(305 → 665억원)함.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월소득 135 → 140만원)을 확대함.

3)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증설함(22개소 설치).

또한 정부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확대·강화(28 → 32억원)하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등 지자체 지원을 확대(803 → 900억원)함.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가. 총괄 현황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너지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고보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장애인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근복지금)이 있음.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¹⁾은 15조 5,3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865억원(7.5%) 증가하였음.

예산지출은 2조 49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6억원 증가(1.3%)하였고, 기금지출은 13조 4,871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09억원 증가(8.5%)하였음.

1) 기금전출금 및 기금여유자금(적립금) 등을 제외한 실지출을 말함

< 표 >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회계·기금별	'14년 예산		'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본예산(A)	수정			
● 총지출(a+b)	144,503	144,864	155,368	10,865	7.5
－ 예산지출(a)	20,241	20,241	20,497	256	1.3
· 일반회계	19,700	19,700	18,977	-723	-3.7
· 특별회계	541	541	1,520	979	181.0
－ 기금지출(b)	124,262	124,623	134,871	10,609	8.5
· 고보기금	70,549	70,910	77,680	7,131	10.1
· 산재기금	47,155	47,155	50,086	2,931	6.2
· 장애인기금	2,579	2,579	2,554	-25	-1.0
· 임채기금	2,865	2,865	3,071	206	7.2
· 근복기금	1,114	1,114	1,480	366	32.9
● 총 계	271,399	271,399	274,914	3,515	1.3

나. 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43억 5,2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9억 900만원(10.1%)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도 예산 584억 1,300만원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한 643억 2,200만원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00만원으로 2014년도와 동일함.

< 표 > 201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58,443	64,352	5,909	10.1
○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909	10.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	30	0	0.0

다. 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2조 1,609억 4,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590억 4,300만원(2.8%) 증가하였음.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89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 총지출 기준으로는 1조 8,976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723억 3,000만원(△3.7%) 감소하였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8억 1,900만원이 전액 감소하였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618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42.4%) 증가하였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억 6,800만원(819.9%)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14예산		'15예산안 (B)	증감(B-A)	%
	당초(A)	수정			
예산 총계	2,101,905	2,101,905	2,160,948	59,043	2.8
(총지출*)	2,024,105	2,024,105	2,049,648	25,543	1.3
• 일반회계	2,047,824	2,047,824	2,008,994	-38,830	-1.9
(총지출*)	1,970,024	1,970,024	1,897,694	-72,330	-3.7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819	819	0	-819	-100.0
•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3,472	43,472	61,896	18,424	42.4
• 지역발전 특별회계	9,790	9,790	90,058	80,268	819.9

※ 총지출은 예산총계에서 기금전출금 1,11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3개 특별회계는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

라. 기금운용계획안

2015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25조 3,304억 7,700만원으로, 2,925억 2,100만원(1.2%)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계 획		2015계획안 (B)	증 감(B-A)	%
	당초(A)	수정			
고보기금	11,291,046	11,291,046	11,226,098	-64,948	-0.6
산재기금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819	0.4
임채기금	1,049,472	1,050,693	1,204,028	154,556	14.7
장애인기금	528,843	528,843	653,119	124,276	23.5
근복지금	283,178	283,178	315,996	32,818	11.6
계	25,037,956	25,039,177	25,330,477	292,521	1.2

고용보험기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649억 4,800만원(△0.6%) 감소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0.4%) 증가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545억 5,600만원(14.7%) 증가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42억 7,600만원(23.5%) 증가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328억 1,800만원(11.6%) 증가하였음.

마. 2015년도 신규사업 및 2014년도 완료사업

고용노동부 소관의 2015년도 신규사업과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신규사업		
사업명	'15예산(안)	비고
□ 일반회계	14,502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496	
• 실업크레딧지원	12,870	
• 국가민간자격관리	136	
□ 고용보험기금	12,370	
• 실업크레딧지원	12,37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13	
• 재해조사역량강화	913	
□ 근로복지진흥기금	14,011	
•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011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00	
합 계	41,796	

< 표 > 2014년도 완료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완 료 사 업		
사 업 명	'14예산	비 고
□ 일반회계	26	
• 한국고용정보원지방이전	7,551	
□ 고용보험기금	1,000	
• 고용안정지원금	1,000	제도 폐지(11년)후 청구권 소멸시료 도래
합 계	8,551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3억 2,2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59억 9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과태료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 역 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 일 반 회 계	58,413	64,322	5,909	10.1
• 토지 및 건물대여료	22	22	0	0.0
• 기타재산수입	670	670	0	0.0
• 과태료 수입	24,697	33,270	8,573	34.7
• 위약금 및 가산금	53	53	0	0.0
• 기타경상이전수입	32,962	30,298	-2,664	-8.1
• 과징금,징계부과금,잡수입 등 기타 수입	9	9	0	0.0

나. 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9억 9,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388억 3,000만원 감소하였음.

< 표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 고용정책	1,210,297	1,102,813	-107,484
□ 직업능력개발	320,007	373,627	53,620
□ 고용평등실현	39,028	8,402	-30,626
□ 노사정책	25,495	24,779	-716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3,772	17,066	3,294
□ 국제고용노동협력	14,852	13,400	-1,452
□ 고용노동행정지원	344,859	356,576	11,717
□ 지방고용노동행정	1,714	1,031	-683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77,800	111,300	33,500
계	2,047,824	2,008,994	-38,830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개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함.

나.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다. 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세출예산이 전액 감소함.

< 표 > 2015년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감률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819	0	-819	-100.0

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개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함.

나. 세입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은 3,0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과 동일함.

<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법정부담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30	30	0	0.0
계	30	30	0	0.0

다. 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18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184억 2,4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건강진단 예산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진폐위로금지급 예산이 187억 9,6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진폐근로자보호	43,472	61,896	18,424	42.4
• 진폐위로금지급	39,956	58,752	18,796	47.0
• 건강진단	2,178	1,786	-392	-18.0
• 진폐근로자복지	17	17	0	0.0
• 진폐예방기본경비	687	687	0	0.0
• 건강진단지원금	634	654	20	3.2

6. 지역발전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음.

동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함.

나.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다. 세출예산안

201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00억 5,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802억 6,8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일반회계의 사회적기업육성(자치단체보조)사업이 생활기반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각 이관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감	증감률
□ 생활기반계정	8,289	9,515	1,226	14.8
•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 창출)	0	81,489	81,489	순증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9,790	8,266	-1,524	-15.6
• 직업안정기관운영	149	153	4	2.7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208	1,133	-75	-6.2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456	456	0	0.0
• 사회적기업육성	4,671	3,363	-1,308	-28.0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887	638	-249	-28.1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149	149	0	0.0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61	63	2	3.3
• 제주지노위인력지원	630	674	44	7.0
• 제주직업안정소인력지원	1,174	1,256	82	7.0
• 제주지노위기본경비	89	92	3	3.4
• 제주직업안정소기본경비	41	42	1	2.4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275	247	-28	-10.2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	303	303	순증
• 사회적기업육성(세종)	0	303	303	순증
계	9,790	90,058	80,268	819.9

7. 고용보험기금

가. 기금 개요

1) 기금사업의 목표

-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면서, 수급기간 중 맞춤형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재취업률 향상 도모
-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력과 경쟁력 강화 지원
-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수혜 확대 도모
-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등 고용서비스 기관 지원

- 노동시장 정보 분석, 직업연구 역량 등을 강화하여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년·취약계층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도모
- 현장직무와 산업계·지역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이 잘되는 좋은 훈련 제공
- 고령자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인프라를 보강하고, 임금피크제 개선 등 적극적 취업촉진정책 추진으로 고령자 고용확대
-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 비정규직 여성 재취업촉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향상

나. 수입계 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0.6%) 감소하였음. 이중 여유자금 회수 2조 2,821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8조 9,439억 3,700만원임.

이는 여유자금회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수입이 6,476억 7,100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	7,952,062	7,952,062	8,599,733	647,671
• 재산수입	156,285	156,285	90,927	-65,358
• 경상이전수입	108,592	108,592	121,772	13,18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2	42	35	-7
• 융자금회수	51,773	51,773	60,752	8,979
• 정부예금회수	2,985,074	2,985,074	2,282,161	-702,913
• 일반회계전입금	37,218	37,218	70,718	33,500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	-64,948

다. 지출계획안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2,260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649억 4,800만원 감소하였음. 이중 여유자금 운용 규모 3조 4,581억원을 제외하면 지출계획안은 7조 7,679억 8,400만원임.

장애인고용증진(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 및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획안 (B)	증감 (B-A)
	당초	수정(A)		
고 용 정 책	4,502,963	4,538,998	4,903,893	364,895
직업능력개발	1,459,653	1,459,653	1,631,774	172,121
고용평등실현	982,173	982,173	1,127,298	145,125
장애인고용증진	2,850	2,850	2,708	-142
고용노동행정지원	107,299	107,299	102,311	-4,988
여유자금운용	4,236,108	4,200,073	3,458,114	-741,959
계	11,291,046	11,291,046	11,226,098	-64,948

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 기금 개요

1) 기금의 사업목표

-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추진

- 산재의료사업 내실화 및 재활서비스 지원 강화로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 촉진
- 대형사고 예방 및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활동 강화·사업장 안전
관리체계 구축

나. 수입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입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고용주 및 피고용자 분담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 안 (B)	증 감 (B-A)
	당초	수정(A)		
• 사회보장기여금(분담금)	6,117,428	6,117,428	6,204,659	87,231
• 재산수입	260,648	260,648	182,078	-78,570
• 경상이전수입	128,507	128,507	153,467	24,96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06	8,306	9,440	1,134
• 관유물매각대	4,136	4,136	6,624	2,488
• 융자금회수	105,071	105,071	107,859	2,788
• 정부예금회수	4,906,702	4,906,702	4,921,294	14,59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54,619	354,619	345,815	-8,804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819

다. 지출계획안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계획안은 11조 9,312억 3,6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458억 1,9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산재보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 규모가 모두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획		'15계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산 재 보 험	4,085,174	4,085,174	4,265,266	180,092
산업재해예방	328,713	328,713	437,330	108,617
고용노동행정지원	301,645	301,645	305,980	4,335
기금간거래(예탁금)	300,000	300,000	300,000	-
여유자금운용	6,869,885	6,869,885	6,622,660	-247,225
계	11,885,417	11,885,417	11,931,236	45,819

9. 임금채권보장기금

가. 기금 개요

1) 기금의 사업목표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

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 등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체불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권리보호에 기여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 영세 소규모 사업장(10명 미만)에서 퇴직한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나. 수입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정부예금회수가 1,611억 9,2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미도래로 정부내부수입이 162억 5,700만원 감소하였음.

<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획		‘15계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 재산수입	17,777	17,777	34,658	16,881
• 경상이전수입	462,979	462,979	454,988	-7,991
• 융자금회수	122	122	853	731
• 정부예금회수	545,364	545,364	706,556	161,192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230	23,230	6,973	-16,257
계	1,049,472	1,049,472	1,204,028	154,556

다. 지출계획안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채당금 지급은 2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전년대비 동결, 채당금조력지원 및 채불청산지원사업주용자는 11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규모가 206억 6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금 예탁금 및 여유자금운용이 1,338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276,186	276,186	296,792	20,606
고용노동행정지원	10,274	10,274	10,344	70
기금간거래(예탁금)	70,000	70,000	150,000	80,000
여유자금운용	693,012	693,012	746,892	53,880
계	1,049,472	1,049,472	1,204,028	154,556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 기금 개요

1) 기금의 사업목표

-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고용 실시,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 고용애로 해소 및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한 맞춤형훈련 및 특화훈련 실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력 양성
- 장애인 고용관련 조사연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나. 수입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수입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기타민간융자금 회수는 26억 3,800만원 감소하였으나, 경상이전 수입과 정부예금회수가 각각 535억 1,700만원과 710억 1,6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 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 재산수입	6,886	6,886	9,267	2,381
• 경상이전수입	286,426	286,426	339,943	53,517
• 융자금회수	7,134	7,134	4,496	-2,638
• 정부예금회수	203,397	203,397	274,413	71,016
• 전입금	25,000	25,000	25,000	0
계	528,843	528,843	653,119	124,276

다. 지출계획안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지출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242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여유자금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직업능력개발원 운영 등 장애인고용증진사업 규모가 감소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린 예수원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기금간거래사업의 규모가 감소하였음.

< 표 > 2015년도 장애인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 장애인고용증진	208,928	208,928	204,410	-4,518
• 고용노동행정지원	48,963	48,963	51,009	2,046
• 기금간거래(전출금)	3,428	3,428	701	-2,727
•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8,000	18,000	0	-18,000
•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073	1,073	0	-1,073
• 여유자금운용	248,451	248,451	396,999	148,548
계	528,843	528,843	653,119	124,276

11. 근로복지진흥기금

가. 기금 개요

1) 기금의 사업목표

- 근로복지사업 수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2015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
-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퇴직연금 인프라 확충 및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극 추진으로 소속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장
- 영세·중소사업장의 선진기업복지제도(EAP, 선택적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완화
- 직장여성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아파트 운영 활성화 추진

나. 수입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수입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융자원금회수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사업계정 수입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에 따라 면허료및수수료수입(신용보증보험료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실업대책계정 수입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예금 회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중소복지계정>	246,233	246,233	264,880	18,647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763	7,763	9,056	1,293
• 기타경상이전수입	748	748	677	-71
• 기타잡수입	1,774	1,774	2,057	283
• 융자원금회수	52,350	52,350	85,981	33,631
• 정부예금회수	154,808	154,808	133,739	-21,069
• 복권기금전입	28,790	28,790	33,370	4,580

구 분	‘14계획		‘15계획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신용보증사업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	16	16	-
• 기타경상이전수입	7,057	7,057	7,166	109
• 면허료및수수료	1,809	1,809	3,724	1,915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중소복지계정전입)	5,758	5,758	6,507	749
<실업대책사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0	700	936	236
• 기타경상이전수입	138	138	90	-48
• 융자원금회수	825	825	475	-350
• 정부예금회수	20,642	20,642	32,202	11,560
계	283,178	283,178	283,178	-108,783

다. 지출계획안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3,159억 9,6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28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중소복지계정 지출계획안은 2,648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8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및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수행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신용보증계정 지출계획안은 174억 1,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27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신용보증대위변제 규모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실업대책계정 지출계획안은 337억 3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13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 획		‘15계 획 안 (B)	증 감 (B-A)
	당 초	수 정(A)		
<중소복지계정>	246,233	246,233	264,880	18,647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73,350	73,350	122,288	33,638
• 근로복지기금운영비	8,117	8,117	8,329	212
• 차입금이자	15	15	13	-2
• 신용계정으로전출금	5,758	5,758	6,507	749
• 여유자금운용	158,936	158,936	127,681	-15,955
• 국민주택기금차입금원금 상환	57	57	62	5
<신용보증계정>	14,640	14,640	17,413	2,773
• 신용보증대위변제	10,817	10,817	13,507	2,690
• 근로복지기금운영비	3,823	3,823	3,906	83
<실업대책계정>	22,305	22,305	33,703	11,398
• 여유자금운용	22,305	22,305	33,703	11,398
계	283,178	283,178	315,996	32,818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028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4억 8,400만원(△8.9%) 감소하였음.

< 표 > 고용정책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1,210,297	1,102,813	-107,484	-8.9
• 고용센터인력지원(1031)	35,630	0	-35,630	-100.0
•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26,097	37,332	11,235	43.1
•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10,341	10,446	105	1.0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	4,962	3,455	-1,507	-30.4
• 해외취업지원(1035)	23,729	37,737	14,008	59.0
• 대상별취업지원(1036)	223,929	274,618	50,689	22.6
• 사회적기업육성(1037)	155,883	64,712	-91,171	-58.5
•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19,813	14,834	-4,979	-25.1
•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101,772	18,319	-83,453	-82.0
•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2,819	3,179	360	12.8
• 한국잡월드운영(1049)	7,342	11,802	4,460	60.7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50)	400	400	0	0.0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	33,470	30,139	-3,331	-10.0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055)	555,155	579,265	24,110	4.3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및보급(1056)	1,215	1,215	0	0.0
•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1058)	2,490	2,490	0	0.0
• 해외인턴사업(1059)	5,250	0	-5,250	-100.0
• 실업크레딧지원(1060)	0	12,870	12,870	순증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대상별취업지원 506억 8,900만원(22.6%)
-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241억 1,000만원(4.3%)
- 해외취업지원 140억 800만원(59.0%)
- 실업크레딧지원 128억 7,000만원(신규)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112억 3,500만원(43.1%)
- 한국잡월드운영 44억 6,000만원(60.7%)
- 고용영향평가사업 3억 6,000만원(12.8%)
- 고용노동통계조사 1억 500만원(1.0%) 증액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사회적기업육성 911억 7,100만원(△58.5%, 지특회계 이관)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834억 5,300만원(△82.0%)
- 고용센터인력지원 356억 3,000만원(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
- 해외인턴사업 52억 5,000만원(해외취업지원에 통합)
- 한국고용정보원출연 49억 7,900만원(△25.1%)
-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3억 3,100만원(△10.0%)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15억 700만원(△30.4%) 감액됨.

1) 직업안정기관 운영(1031-301)

가) 예산안 편성내역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은 고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보다 112억 5,500만원 증액된 363억 9,7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21,688	25,142	36,397	11,255	44.8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설치비(182억 9,600만원) 및 운영비(4억 500만원)가 신규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기인함.

< 표 >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 직업안정기관운영 : 36,397백만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가 설치 : 18,296백만원

- 고용센터 신설 설치 : 2,100백만원*(1개소)

* 임차보증금 1,500백만원, 시설비 300백만원, 자산취득비 200백만원, 운영비 100백만원

- 기존고용센터 전환 설치: 16,220백만원(20개소)

- * 임차보증금 10,000백만원, 시설비 4,000백만원, 자산취득비 1,000백만원, 운영비 600백만원, 여비 96백만원
- '14년 신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본운영비 : 405백만원(135백만원*3개소)
 - * 일반수용비 15백만원, 공공요금 60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백만원
- '14년 이전 서초센터 임차료 등 : 1,562백만원
 - 연도 중 이전으로 8개월 반영된 서초센터의 관리비, 월임차료 등 운영비 12개월 반영
 - * 임차료 1,116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6백만원
- 고용센터운영: 11,777백만원(전년 동일)
 - * 관리비,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청사 유지 관리, 여비, 사무집기·기기 구입 등 기본경비
- 일일취업센터운영: 63백만원(전년 동일)
 - * 공공요금, 청사 유지 관리, 여비 등 기본경비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1,982백만원(전년 동일)
 - * 공공요금, 검사지 유인, 여비 등 기본경비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1,812백만원(전년동일)
 - * 참여자 식대, 프로그램 진행 경비 등 기본경비
- 사설경비요원: 500백만원(전년 동일)
 - * 악성민원 대응 사설경비: '12년 10개소 → '13년 17개소 → '14년 20개소

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사전준비 철저 필요

복지서비스를 자치단체, 고용센터, 새일센터(여성가족부), 자활센터(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국민들이 필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용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융합·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융합·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하였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고용센터 중심형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자치단체 중심 형으로 구분되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중심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2013년 12월 남양주고용센터에 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을 물리 적으로 결합한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70개의 고 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2015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개소를 신설하고, 20개소의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 환할 계획으로, 신설설치비 21억원과 전환설치비 162억 2,000만원을 예 산안에 편성하였음.

수요자인 국민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 사 업 취지의 타당성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 예산집행가능성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3년 개설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전 부지 선정, 부처간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설립까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동 사 업은 2015년 21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계 획하고 있으므로 연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까지 설치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역 선정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 우려됨. 또한 통합된 센터의 물리적

확장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통합센터의 공간확장 가능성 및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상황임.²⁾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비하여 예산의 이월이 우려되므로, 설치 지역을 확정하고 소요비용을 점검하는 등 연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다) 일일취업센터 중장기적 검토 필요

동 사업에는 일일취업센터 운영예산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일일취업센터란 건설인력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울산, 대전, 대구에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임. 동 센터는 IMF 직후 정부가 건설근로자와 현장을 연계하여 건설인력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음. 일일취업센터는 1998년 사업개시 당시 16개소를 개설하였으나, 민간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3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³⁾

한편, 건설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⁴⁾이 있음. 동 사업은 건설인력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 3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 5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투입하여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나, 고용센터 중 일부는 독립청사로 되어 있어 공간 확충이 어려우며, 다른 고용센터의 경우도 공간 임차가능여부 및 추가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려움.

3) 일일취업센터는 건설일용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나, 현실적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됨.

4)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 내 세사업임.

< 표 > 일일취업센터와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비교

	일일취업센터	건설인력취업지원
재 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2015 예산안	6,400만원	34억원
수행기관 수	3개소	29개소
기 능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알선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건설일용근로자 지원을 2015년 17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임)
수행주체	정부	민간위탁

양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동일하며, 사업의 목적 및 수단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여겨짐.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에서 기존 12개소 기관을 지원하던 것을 29개소로 확장하여 지원할 계획인 바, 일일취업센터와의 중복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은 직접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의 계층은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을 할 계획인 바,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양 사업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취업지원(1035-304)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된 연수프로그램 제공, 우수 구직자 확보, 해외우량 구인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5,800만원(30.2%)이 증액된 377억 3,700만원으로 편성됨.

< 표 > 해외취업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해외취업지원	13,863	28,979	26,579	37,737	8,758	30.2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이관 및 해외인턴 사업과의 통합, K-Move 스쿨 물량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세부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 2015년 해외취업지원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 외 취 업 지 원		증 감	증 액 사 유
	2014년	2015년		
합 계	28,979	37,737	8,758	
K-Move 스쿨	K-Move 스쿨 : 7,400 (200명×8백만원+1000명×5.8백만원) 글로벌 청년취업(GE4U) : 4,500 (1,000명×4.5백만원)	18,500 (500명×8백만원+2,500명×5.8백만원)	6,600	2,200명→3,000명 (물량확대) * 교육부 세계로사업 통합(600명)
민간취업알선	400 (200명×2백만원)	600 (300명×2백만원)	200	200명→300명 (물량확대)
해외인턴 지원	4,900 (700명×7백만원)	7,000 (1,000명×7백만원)	2,100	700명→1,000명 (물량확대)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해외취업 장려금 : 2,407 (1,444명 × 300백만원) 취업애로청년층해외취업지원 : 900 (300명×3백만원)	5,400 (2,000명×1.5백만원 +2,000명×1.5백만원×80%)	2,093	1,744명→2,000명 (물량확대) * 취업애로청년층 지원사업과 통합
K-Move 센터	1,750 (7개소×250백만원)	2,500 (10개소×250백만원)	750	센터 3개소 추가
K-Move 멘토	870 (멘토단 운영)	800 (멘토단 운영)	△70	
일자리 발굴 및 홍보	1,545	1,391	△154	
해외통합정보 망운영	2,511	200	△2,311	
사업운영비	1,796	1,346	△450	
-해외취업 운영비	1,446	1,346 (해외취업·인턴 운영비)	△450	
-인턴 연구용역 등	350			

가) K-Move 스쿨 사업 성과저조 예상

K-Move 스쿨 사업은 우리 청년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으로 편성됨.

주요 증액 사유는 K-Move 스쿨 사업이 기존 글로벌 청년취업(GE4U)사업 및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⁵⁾과 유사하여 중복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K-Move 스쿨로 일원화하고 사업물량을 확대(2,200명→3,000명)한데 따른 것임.

K-Move 스쿨의 2014년 8월말 기준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인원 1,200명 중 연수인원은 38.3%에 해당하는 459명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남.

더구나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2015년부터 K-Move 스쿨에 통합되는 글로벌 청년취업(GE4U)도 계획인원 1,000명 중 연수인원이 29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K-Move 스쿨, 글로벌 취업청년(GE4U) 사업은 하반기 연수 실시로 늘어나는 연수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세계로 프로젝트 :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구 분	세계로 프로젝트(교육부)
지원대상	대학·전문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예 산	('14년) 31억원
지원내용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공모를 통해 선정)
기 타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표 > K-Move 스쿨(GE4U 포함)사업 실적

(단위 : 2014. 8월말 기준, 명)

연도	구 분	계 획 인원	승 인 인원	개 시 인원	중 도 탈락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인원	진행 중
2013	맞춤형	1,000	1,569	883	110	773	256	-
	GE4U	1,000	960	658	26	632	347	-
	K-Move스쿨	140	140	155	15	95	-	45
2014.8.	K-Move스쿨	1,200	1,127	459	17	60	-	382
	GE4U	1,000	476	296	9	47	-	240

이는 K-Move 스쿨 사업이 워킹홀리데이 등의 단기 일자리가 아닌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질 높은 취업처이며, 단기훈련 뿐 아니라 직무관련 자격증과 연계된 장기 훈련을 제공함에 따라 취업처 발굴, 운영기관 선정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이라고 보임.

또한, 2014년에 단순노무직 배제, 연봉기준 신설⁶⁾(단기과정 1,500만원, 장기과정 2,400만원), 1년미만 취업비자 제외 등의 취업인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측면도 있음.

이러함에도 K-Move 스쿨 지원대상자를 금년 2,200명 대비 800명이 늘어난 3,000명(세계로 프로젝트 600명 포함)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5년

6) K-Move 스쿨 장기·단기 구분 기준

구 분	K-Move 스쿨(장기)	K-Move 스쿨(단기)
지원금액	·1인당 800만원 이하	·1인당 580만원 이하
연수과정 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취업인정기준	·연봉 2400만원 이상	·연봉 1500만원 이상

에 신규로 반영된 기존 교육부 소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의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내실 있는 운영기관 선정의 어려움, 연봉기준 등 취업인정기준 강화에 따른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3,000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아울러 K-Move 스쿨 사업은 국내외 비영리법인, 대학 등의 연수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연수기관에 대한 경비의 70%는 선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연수기관의 취업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수기관 운영경비는 연내에 전액 집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나) 민간해외취업알선 : 사업물량 조정 필요

민간해외취업알선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내외 민간 취업알선 업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구인처 개척을 위한 것으로 취업인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함.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의 2013년과 2014년(8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의 경우 계획인원 500명 중 144명, 2014년의 경우 계획인원 200명 중 19명만이 각각 취업하여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실적 및 집행현황

(단위 : 2014. 8월말 기준, 명, 백만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추경포함)	14.8월	‘15년도
예산 (계획)	예산	-	1,000	400	600
	물량	-	500	200	300
집행 (실적)	결산	-	336	32	-
	물량	-	144	19	-

이 사업은 단순노무직 배제 조항 신설, 연봉조건(2,400만원) 등 취업인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50일 이상인 자가 전체 취업인원의 90% 이상을 차지⁷⁾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나,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임.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사업물량을 확대(200명→300명)할 예정인데, 그간의 사업실적 및 민간 해외취업 알선 시장의 미성숙 등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사업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금년과 동일하게 200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확대된 사업물량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2013년도 해외 민간알선취업자 고용유지 현황

구분	계	60일 미만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50일	150일 이상
인원(명)	138	-	1	6	5	126
비율(%)	100	-	0.7	4.3	3.7	91.3

* ‘13년 총 취업자 144명중 동의서 누락자 6명 제외하고 출입국조회 실시함.

다) 해외인턴사업 : 해외취업률 제고 필요

해외인턴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고 구인처가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안)은 2014년 52억 5,000만원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편성됨.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부처는 세부 사업별로 분산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일부(9개 사업)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금년 8월 현재 글로벌무역인턴십 등 9개 기관 11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턴생 646명을 선발하여 359명을 파견⁸⁾하였음.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연계 시스템 미흡 등의 이유로 해외취업률이 2011년 5.1%, 2012년 7.2%, 2013년 6.4%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향후 고용노동부는 운영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 등 해외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8) 2014년 현재 인턴과정 수행 중으로 해외취업 실적은 없고 파견실적만 있음.

< 표 > 최근 3년간 해외인턴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

사 업 명	년 도	참 여 자	국 내 취 업	국 외 취 업	해 외 취 업 률	전 체 취 업 률
글로벌무역인턴십	2011	153	39	8	5.2	30.3
	2012	123	59	3	2.4	50.4
	2013	124	23	6	4.8	23.4
(글로벌지역전문가인턴십)	2013	266	23	5	1.9	10.5
플랜트해외인턴	2011	400	371	1	0.3	93.0
	2012	280	239	2	0.7	86.1
	2013	281	90	2	0.7	32.7
전시회해외인턴	2011	302	255	7	2.3	86.8
	2012	156	100	1	0.6	64.7
	2013	217	66	1	0.5	30.9
해외한인기업해외인턴	2012	102	40	10	9.8	49.0
	2013	158	12	25	15.8	23.4
국제전문여성인턴	2011	29	26	3	10.3	100
	2012	32	19	2	6.25	65.6
	2013	39	4	3	7.69	17.9
물류인력해외인턴	2012	60	42	12	20.0	90.0
	2013	62	20	14	22.6	54.8
중소기업해외인턴	2011	186	91	32	17.2	66.1
	2012	237	70	43	18.1	47.7
	2013	214	48	30	14.0	36.4
해외관광인턴십	2011	95	47	14	14.7	64.2
	2012	104	30	12	11.5	40.4
	2013	51	18	5	9.8	45.1
외식기업해외인턴	2011	140	47	1	0.7	34.3
	2012	110	6	2	1.8	7.3
	2013	50	3	2	4.0	10.0
합 계	2011	1,305	876	66	5.1	72.2
	2012	1,204	605	87	7.2	57.5
	2013	1,462	307	93	6.4	27.4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036-301)

가) 예산안 편성내역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과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15년에는 전년대비 575억 3,300만원 증액된 2,746억 1,8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3,851	217,085	274,618	57,533	26.5

예산이 증액된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물량을 2014년 25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늘리고, 취업지원기관 위탁 물량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2년부터 청장년층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I 유형(저소득층 등)과 II 유형(미취업 청장년층)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음.

양 유형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훈련비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I 유형 참여자들에게는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허용하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훈련비를 200만원까지 허용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표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역

구분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	20만원	훈련비: 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 월 28.4만원	취업성공수당: 1개월 근속: 20만원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50만원
II 유형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		훈련비:2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 당: 월 28.4만원	없음

동 사업은 실업자의 취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됨. 1단계에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진단을 한 후 의욕을 제고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하며, 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능력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마지막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서비스

1단계(3주~1개월)	2단계(최장 8개월)	3단계(최장 3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원 * IAP 수립자에 한정	▪ 훈련비 200~300만원 지원(내일배움카드) ▪ 훈련수당 월 40만원 지급(6개월간) ▪ 청년인턴, 장년인턴 등 참여 (해당 사업수당 수령)	▪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지급(근속 기간과 연계) * 패키지 I 유형에 한정

주: 훈련수당은 훈련참여지원수당(28.4만원)과 직업훈련수당(11.6만원)을 합한 것임

나) 예산 과다 편성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5만명 증가한 30만명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표 >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계획

(단위: 명)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2단계 훈련참여자	2단계 수료자
패키지 I	150,000	127,500	89,250	75,863
패키지 II	150,000	127,500	89,250	75,863
합계(A)	300,000	255,000	178,500	151,726

지원인원을 확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⁹⁾을 2015년부터 동 사업에 통합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자치단체, 중소기업청 등

9) 희망 리본(Re-born) 사업은 취업빈곤층의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약 12,000명을 지원하였음.

관계부처와 함께 자영업자의 희망리턴 패키지¹⁰⁾를 실시할 계획이란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목표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2014년 지원인원이 목표인 2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2015년 지원인원을 2014년보다 5만명 증가시킨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2014년 총 25만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이중 12만 6,438명이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인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사전단계 및 1단계 참여수당 514억원, 2단계 참여수당 632억원, 취업성공수당 277억 8,600만원 등 1,424억원의 참여자수당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2014년 8월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현황을 보면 총 125,5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단계를 수료한 자는 114,048명, 2단계 훈련참여자는 61,834명인 등 목표인원 대비 지원비율이 50% 내외에 불과함.

10) 희망리턴 패키지(1만명 목표): 사업정리 컨설팅(1단계, 중기청) → 취업성공패키지(2단계, 고용부) → 채무조정(3단계, 금융위)

< 표 >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현황(2014. 8월 기준)

(단위: 명, %)

	1단계 참여자	1단계 수료자	훈련참여자
패키지 I	69,343	64,851	36,943
패키지 II	56,178	49,197	24,891
합계(A)	125,521	114,048	61,834
계획(B)	250,000	212,500	126,438
비율(A/B)	50.2	53.7	48.9

주: '14년 프로세스 개편으로 인해 1단계 수료 후 최소 2~3주의 기간 경과 후 훈련참여가 가능하므로 '14년 8월 기준 훈련참여자는 과소 산정됨. 즉, 7월까지 1단계를 참여해야 8월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증가세가 정체된 것은 2012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2013년 그 비중이 20% 미만으로 축소되어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임.

< 표 > 참여경로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현황

(단위: 명, %)

		2011		2012		2013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전 체	합계	224,332	100.0	191,706	100.0	232,221	100.0
	일반	186,584	83.2	93,394	35.8	66,168	19.6
	취업성공 패키지	37,848	16.8	98,312	64.2	166,053	80.4

주: 2012년 취성패 II 사업 훈련참여 개시

자료: 고용노동부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2014년 최종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바, 2015년 목표를 이보다 5만명 많은 30만명으로 설정할 경우 예산 불용이 우려됨.

둘째,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감소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일학습병행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능력개발지원금 1,034억원을 편성하였음. 동 지원금은 개인별 훈련비 및 수당으로 지급되며, 총 16,424명을 지원할 계획임.

일학습병행제의 주 지원대상이 20~30대 청년층이 될 것이므로 동 사업의 패키지Ⅱ 지원대상과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패키지Ⅱ 2단계 훈련의 청년층 참여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검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지원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일학습병행제 본격 시행에 따라 청년층 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비용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재검토 필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① 구직의욕 제고 및 취업계획 수립, ② 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 ③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됨.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의욕을 제고하고 경로를 설정함. 설정된 경로에 따라 2단계에서 구직자는 부족한 능력을 훈련받고 인턴 등을 수행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하며, 3단계 취업알선을 통하여 직장에 취업하게 됨.

정부는 구직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2단계 직업훈련과정에서 비참여자에 비하여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추가 지급(28만 4,000원)받을 뿐 아니라, 300만원(Ⅱ유형은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의 80~100%를 지급받음. 반면, 동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이수한 자는 훈련비용의 30% 또는 50%를 자부담하고 있음.¹¹⁾

11) 다만,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정부가 보전함.

< 표 > 계좌제 훈련 참여경로별 금전적 인센티브 여부

훈련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경유여부	계좌제 참여과정	자부담 여부	수당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 취업성공패키지 경유	⇒ 특화·일반 과정 참여	⇒ 없음	⇒ 4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미 경유 (계좌제 직접참여)	⇒ 일반과정 참여	⇒ 있음 (30~50%)	⇒ 11.6만원

※취약계층 :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청년 : 18~34세로서 대학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 및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중장년층 : 35~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등

훈련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취업성공패키지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직업교육훈련을 수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후 II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¹²⁾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짐.

첫째, 훈련비용 자부담을 일반 참가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참여자들이 취미·여가 관련 훈련을 받을 유인을 가지게 됨.

일반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는 훈련생이 인력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음식·서비스 등의 4대 공급 과다직종¹³⁾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타 직종 자부담률(30%)에 비하여 높은 5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

12) 2014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 중 과다참여직종 훈련자에게는 10~20% 자부담을 부여함.

13) ① 음식 서비스 관련 직종, ②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직종, ③ 경영·회계·사무 관련 직종, ④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직종

는 훈련생이 해당 직종 직업훈련을 받을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들이 훈련하는 직종과 관계없이 직업 훈련비용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일반 참여자보다 4대 공급 과다 직종에 편중되고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개편하여 2014년부터 훈련비용의 10~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인당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비용이 연평균 120만원에 불과하여 자부담은 20~30만원 부담에 그쳐 과다직종 유입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실제 개편 후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들이 4대 과다직종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반실업자들이 해당 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보다 37.7%p 높은 7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표 > 훈련 직종별 참여인원(2014년 9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전체 직종 (23개 직종)	4대 과다직종				
			계	경영, 회계, 사무 관련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음식서비스 관련
일반실업자 (비율)		45,357 (100.0)	14,739 (32.5)	6,682 (14.7)	2,386 (5.3)	1,952 (4.3)	3,719 (8.2)
취업성공 패키지	소계	159,361 (100.0)	111,858 (70.2)	46,516 (29.2)	17,315 (10.9)	16,585 (10.4)	31,442 (19.7)
	I 유형	86,430 (100.0)	61,492 (71.1)	23,762 (27.5)	7,422 (8.6)	10,311 (11.9)	19,997 (23.1)
	II 유형 (청년)	51,725 (100.0)	36,008 (69.6)	16,291 (31.5)	8,924 (17.3)	4,745 (9.2)	6,048 (11.7)
	II 유형 (중·장년)	21,206 (100.0)	14,358 (67.7)	6,463 (30.5)	969 (4.6)	1,529 (7.2)	5,397 (25.5)
합계		204,718 (100.0)	126,597 (61.8)	53,198 (26.0)	19,701 (9.6)	18,537 (9.1)	35,161 (17.2)

취업성공패키지가 참여자들의 능력 및 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능력과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마련해주고 궁극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훈련비 부담을 타 직업훈련에 비하여 낮게 설정할 당위성은 낮으며, 훈련 유도는 자부담 상환제를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둘째,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참여자들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일배움카드제 일반 참여자는 월 1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훈련수당(11.6만원)과 함께 훈련참여지원수당(28.4만원)을 지급받음.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훈련받을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으로서 I 유형 참여자와 달리 취업역량이 취약하거나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II 유형 참여자들에게 I 유형 참여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할 당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타 직업훈련 참여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야기될 수 있음.

동일한 계층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취업성공패키

지 과잉참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II유형 참여자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 예산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1043-30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사업은 신성장동력¹⁴⁾ 및 뿌리산업¹⁵⁾ 분야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청년에게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신규로 14억 9,600만원이 편성됨.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	-	3,490	1,496	1,496	순증

이 사업은 청년층이 군입대로 인해 직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고용률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

14)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에 따른 신성장동력 산업(3대분야 17개 산업)

3대 분야	17개 산업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시티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15)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법」 제2조)임.

력 · 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2014년 4월 15일¹⁶⁾ 이후 입사해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신규) 산출내역

- 총 액: 1,496백만원(사업비(1,376백만원)+운영비(120백만원))
- 사업비: 1,376백만원(1,376명)
- 25,150명(만20세이하신규채용수요)×0.167(조정계수)×0.65(근속률)×0.72*×0.7(신청률)×100만원(근속장려금)
 - = 1,376명 × 100만원
 - * '14.4.15.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근로자부터 지원하므로 '15년에는 연간 지원대상자의 72%(=261/365) 수준에서 사업비 지출 예상

그런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기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 취업지원금을 180~300만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속장려금과 지급대상 등에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 고졸채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낮은 근속률인 점을 감안할 때 근속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졸인력 채용유인 제고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 제도는 기업의 고졸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신규채용에 대한

16) 청년고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4.15.) 발표일.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있고, 연간 10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근속의 인센티브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3년간 연간 동일한 금액보다는 장기 근속시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취업지원금 중복지원 우려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중소기업 근속장려금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구 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	근로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청년	15~34세 취업경험 없는 졸업자 2013년 지원대상자 43,861명 중 15,753명(36.0%)이 고졸
	기업	신성장동력 · 뿌리산업: 뿌리산업의 99.6%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근로자	최장 3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	취업지원금: 제조업 근무자 300만원, 제조업 이외 180만원 * 정규직 전환 1개월 20%, 6개월 30%, 12개월 50% 지원
	기업	-	인건비 지원: 인턴기간 3개월 (임금의 50%,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월 65만원)

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055-300)

가) 예산안 편성내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임. 2015년에는 전년대비 241억 1,000만원 증액된 5,792억 6,5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423,306	555,155	579,265	24,110	4.3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자의 임금 상한액을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 바, 단가 및 수혜자수를 증액 추계하였기 때문임.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개요

정부는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 산업재해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4대 사회보험이라 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을 들 수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나, 제도의 특성 또는 가입 회피 등의 원인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존재함. 이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국민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할 수 있음.

제도를 설계할 당시부터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상을 제도적 사각지대라 함.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동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반면, 법적으로는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보험료의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대상을 실질적 사각지대로 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현황을 추정해 보면,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원이 1,006만명이며, 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에서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있음.¹⁷⁾

1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취업자 2,529만명 (60.0%)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임금근로자 1,824만명 (43.3%)			
	적용제외 301만명 [16.5%]	적용대상 1,523만명 [83.5%]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미가입자 393만명 [25.8%]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특히 13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실질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음.

< 표 > 사업장 규모 및 임금수준별 고용보험 가입현황(2012년 기준)

(단위: 천명, %)

사업장규모	임금	가입대상	가입률
10인 미만 사업장	130만원 미만	2,294	26.6
	130~140만원	327	57.3
	140~150만원	173	58.3
	150~160만원	692	49.0
	160만원 이상	2,280	71.5
	소 계	5,776	49.7
10~29인	130만원 미만	748	59.4
	130~140만원	167	85.3
	140~150만원	93	89.9
	150~160만원	307	76.4
	160만원 이상	2,124	89.7
	소 계	3,439	81.7
전 체 근 로 자		15,230	74.2

다) 사업의 효과성 저조

동 사업의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의 효과성 문제임.

동 사업의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임. 동 사업 시작 이후 지원대상자층(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

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2012년 29.4%, 2013년 31.2%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2012년 72.3%→2013년 74.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는 두루누리 사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 표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근로자	70.8	72.3	74.1
동 사업 지원대상	28.9	29.4	31.2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 대상 근로자중 미가입자가 1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가 연간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즉, 동 사업의 목적인 신규가입자 유치는 제한적인 반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재정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신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주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 미가입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연례적으로 과다 산정하여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2012년에는 69.4%, 2013년에는 77.7%, 2014년(8월말 기준) 63.5%에 불과한 등 집행률이 저조함. 집행 부진은 고용보험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의 4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고용보험료 지원인원을 2014년 계획인원보다 6만명 많은 96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음.

< 표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집행실적

(단위: 만명, 백만원, %)

	보험료 지원인원						보험료지원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계 획	집행	집행률
	계 획	집행	집행률	계 획	집행	집행률			
2012. 7~12월	131	53	40.5	106	67	63.2	245,465	170,465	69.4
2013	100	61	61.0	89	78	88.8	514,761	400,170	77.7
2014	90	63	70.0	79	79	100.0	534,081	339,300	63.5
2015	96	-	-	84	-	-	559,691	-	-

주: 2014년 집행의 경우 지원인원은 7월 기준, 보험료지원금은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원 기준 소득액이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135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25%가 두루누리사업에 신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인원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지원기준 소득액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도 이루어지는 바, 현재 소득이 135~140만원인 근로자 중 일부만이 신규로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짐. 실제 최근 3년간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표 > 두루누리사업 고용보험 지원인원

(단위: 천명, %)

	합 계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가입률	적용제외
2011.3	2,638	662	1,627	28.9	349
2012.3	2,529	630	1,512	29.4	387
2013.3	2,421	622	1,371	31.2	42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동 사업의 수혜대상인원이 계획과 같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계획인원 96만명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은 집행실적과 가입예상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실업크레딧지원(신규, 1093-350)

가) 예산안 편성내역

실업크레딧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보험료의 25%를 부담함.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에 각각 128억 7,000만원, 12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실업크레딧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계 획 액	2014년 계 획 액 (A)	2015년 계 획 안 (B)	증 감	
				(B-A)	(B-A)/A
실업크레딧지원 (일반회계)	-	-	12,870	12,870	신규
실업크레딧지원 (고용보험기금)	-	-	12,370	12,370	신규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 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수급액 인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및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음.¹⁸⁾

정부는 실업자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지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 재원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에서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예산안에 총 3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 실업크레딧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합 계
고용노동부	12,870 (운영비 500포함)	-	12,370	25,240
보건복지부	-	12,370	-	12,370
합 계	12,870	12,370	12,370	37,610

동 사업을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월 34만 2,000명 중 40%인 13만 6,800명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18)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 국회예산정책처, 2014. 10. p.102

< 표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으로 지원기 간 상한 설정 ※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 가능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 ※ 지원비중: 국민연금 25%, 고용부 일반회계 25%, 고용보험 25%,
지원절차	① 국민연금공단,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접수 ② 실업크레딧 대상자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통보 ③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자에게 보험료 25%(본인부담분)만 부과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상한액 : 최대 70만원*) ※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140만원 미만) 감안

나) 형평성 문제 우려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시 제도의 혜택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한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약 50%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됨.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임. 동 국가들은 실업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지라도 실업부조¹⁹⁾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고, 실업부조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2013년 기준으로

19)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경우도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조세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취업자 2,529만명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는 1,13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연금은 취업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와 농어업인 등도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2,032만명에 이르고 있어,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할 것임.

< 표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3년 8월)

취업자 2,529만명 (60.0%)				
비임금근로자 705만명 (16.7%)	임금근로자 1,824만명 (43.3%)			
	적용제외 301만명 [16.5%]	적용대상 1,523만명 [83.5%]		
			실제가입자 1,130만명 [74.2%]	미가입자 393만명 [25.8%]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주: 1. (%) -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

2.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또는 적용대상자 대비 비중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유경준 외, 2014

특히,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저조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취약한 계층이 동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별이 용이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만 실업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및 초단기계약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는 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정부는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크레딧제도의 지원을 받아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재원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하기로 하였음. 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그 지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관련 법률에는 실업크레딧에 대한 지출근거는 없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각 기금에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음.

2014년 10월 현재 실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가입시 실업자들의 인정소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4.9.12.)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크레딧 지출 관련 개정안은 발의(제출)되지 않고 있음.

< 표 > 실업크레딧 제도 관련 개정안 현황

구 분	소관 부처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입법추진 현황
국민연금법 개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국고지원 근거, 지원 대상 등 규정)	관련 법률안 상임위 계류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 구직급여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근거 마련	관련 법률안 미발의(미제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한 재정운용이 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2015년 예산안 편성시 제도의 근거와 관련한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의 개정현황 및 개정된 법률안의 시행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라) 실업크레딧 가입 저조 우려

동 사업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크레딧 제도 가입 의사를 묻고 신청에 따라 크레딧을 제공하게 됨. 동 제도에 가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3~8개월)동안 매달 최대 1만 5,750원²⁰⁾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됨.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대상 구분의 편의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임.

2014년 통계에 따라 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34만 2,000명이며, 정부는 수급자의 40%인 13만 6,800명이 실업크레딧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상황²¹⁾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할 경우,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해외 각국에서는 실업자가 실업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크레딧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실업자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20) 보험료= 소득인정액 × 보험료율(9%)로 이루어짐.

동 사업의 최대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보험료는 54,000원이고, 실업자는 이 중 25%만 부담하게 되므로, 실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4,000원 × 25% = 15,750원임.

21)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신뢰는 52.8%) 그 이후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한편, 가입률을 40%로 결정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가입률을 다시 추계하고 추계한 결과에 따라 크레딧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마) 고용보험기금의 분담 필요성 검토 필요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이 각각 25%씩 분담하기로 하였음. 2015년 예산안에는 6개월분 실업크레딧 보조 예산이 각 123억 7,000만원씩 총 37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실업크레딧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목희의원) 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 1,984억 5,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²²⁾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은 연 661억 5,000만원을 지출하게 됨.

일반회계에서 실업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특수 목적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동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목적 부합성, 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금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11659호)에서는 보험료 50% 지원을 가정하고 연 1,323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하였으나, 보험료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1,984억 5,000만원으로 재정소요액을 수정 추계함.

지원수준	2014~2017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보험료 70% 지원	927	1,853	1,853	1,853	1,853	8,339
보험료 50% 지원	662	1,323	1,323	1,323	1,323	5,954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²³⁾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실업크레딧 제도는 고용의 촉진 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실업상태의 생활안정보다는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기금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이에 고용노동부는 궁극적으로 동 제도로 인하여 실업자의 생애소득이 증가하며,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 타 국가에서도 실업기금을 통하여 크레딧의 재원을 지원하는 바, 고용보험기금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업기금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인데, 이들 국가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실업기금의 운용성격이 다르며, 상당 국가가 납부면제 등의 방식으로 연금기금이 실업크레딧 재원을 충당함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3)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표 > 실업크레딧 제도 재원부담 관련 해외 사례

구 분	재 원 부 담
영국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일본	저소득 실업자 등에 한해 면제기간(이중 가입기간으로는 1/3만 인정)으로 인정(국고부담)
프랑스	납부면제 후 급여 시 국고와 사회연대기금(FSV)에서 재정지원
스웨덴	국고에서 기여금 대납
체코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부여(연금기금)
룩셈부르크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노르웨이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그리스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벨기에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핀란드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이탈리아	국고(비기여기간에 대한 급여비)
포르투갈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아일랜드	납부면제 통한 크레딧(연금기금 등에서 급여 시 부담)
독일	실업보험급여수급자: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실업부조급여수급자: 국고에서 기여금형태로 전액부담 기타 등록실업자: 연금기금에서 급여 시 재정부담
오스트리아	실업급여수급자: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실업부조수급자: 국고에서 기여금 전액부담
덴마크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여금 형태로 전액 부담
아이슬란드	실업자는 실업급여의 4%, 고용보험기금 8% 부담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0.6’

이를 감안할 때, 미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크레딧 제도의 고용보험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둘째, 재정안정성 문제임. 동 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누어서 관리됨.²⁴⁾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을 지출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업크레딧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지출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고갈되어 현재 법정배율인 1.5~2.0배에 못 미치는 0.6배에 불과한 실정임.

< 표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2002~2014년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7,979	17,508	21,145	22,454	25,412	26,063	28,628	29,937	29,786	35,738	43,709	49,220	57,832
지출 (A)	9,130	11,375	15,844	19,054	22,842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47,670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	-1,069	-3,662	-15,357	-11,799	-6,138	-151	3,163	10,162
적립 금(B)	37,994	44,127	49,428	52,828	55,398	54,329	50,667	35,310	23,511	17,373	17,222	20,385	30,547
적립 배율 (B/A)	4.2	3.9	3.1	2.8	2.4	2.0	1.6	0.8	0.6	0.4	0.4	0.4	0.6

24)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

실업급여 계정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업크레딧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계정 적립금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실업크레딧은 의무지출로 차후 기금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736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6억 2,000만원(16.8%)가 증가하였음.

< 표 >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안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20,007	373,627	53,620	16.8
●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	74,362	65,436	-8,926	-12.0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72,135	63,209	-8,926	-12.4
○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27	2,227	0	0.0
●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56,202	93,505	37,303	66.4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52,869	90,272	37,403	70.7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333	3,233	-100	-3.0
●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146,868	169,280	22,412	15.3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124,024	147,668	23,644	19.1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22,844	21,612	-1,232	-5.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38,075	45,270	7,195	18.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34,358	41,524	7,166	20.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	3,717	3,746	29	0.8
● 국가·민간자격관리(1138)	0	136	136	순증
○ 국가·민간자격관리	0	136	136	순증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1148)	4,500	0	-4,500	-100.0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500	0	-4,500	-100.0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374억 300만원(70.7%)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236억 4,400만원(19.1%)

- 한국기술대학교운영지원 71억 6,600만원(20.9%)
- 국가·민간자격관리 1억 3,600만원(신규)이 증액됨.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실업자능력개발지원 89억 2,600만원(Δ 12.0%)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1억원(Δ 3.0%)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 12억 3,200만원(Δ 5.4%)
- 중장년취업아카데미운영 45억원(순감)이 감액됨.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

가) 한국폴리텍대학 예산 개요

(1) 수입 예산

한국폴리텍대학의 총 수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692억 8,000만원,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및 보조금 1,194억 4,800만원과 자체수입금 501억 5,000만원 등 총 3,38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2,939억 7,500만원보다 449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인력양성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일반회계 출연금	고용보험기금	자체수입금	계
2013년	139,829	106,388	33,158	279,375
2014년	146,868	113,748	33,359	293,975
2015년	169,280	119,448	50,150	338,878

(2) 지출 예산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출예산은 총 3,388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94억 3,000만원, 고용보험기금 1,194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로 폴리텍대학운영지원 1,476억 6,800만원, BTL 정부지급금 2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으로 기술·기능인력

양성 714억 7,600만원, 능력개발훈련지원 41억 7,600만원, 신기술 장비
확충 43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년도 예산	‘13년도 지출액	‘14년도 예산	‘15년도 예산안
<총 계>	279,375	275,937	293,975	338,878
<일반회계>	172,987	169,549	180,227	219,430
폴리텍대학운영지원 (1135-308)	122,146	121,871	124,024	147,668
BTL정부지급금 (1135-750)	17,683	14,520	22,844	21,612
○ 운영비(210) ²⁵⁾	13,032	10,281	16,800	15,470
○ 민간이전(320)	4,651	4,239	6,044	6,142
○ 자체수입	33,158	33,158	33,359	50,150
- 사업수입(등록금 등)	28,013	28,768	28,436	28,692
- 사업외 수입 (예금이자 등)	5,145	4,390	4,923	21,458
<고용보험 기금>	106,388	106,388	113,748	119,448
기술기능인력양성 (1152-350)	58,115	58,115	65,663	71,476
- 출연금(350)	48,946	48,946	54,874	59,974
- 민간이전(320)	9,169	9,169	10,789	11,502
능력개발훈련지원 (1152-351)	8,289	8,289	8,289	4,176
신기술시설·장비확충 (1152-352)	39,984	39,984	39,796	43,796

25)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BTL정부지급금 운영비 81억 4,6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나)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은 폴리텍대학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훈련인프라 구축비 및 경상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36억 4,400만원 증액한 1,476억 6,8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121,873	124,024	147,668	23,644	19.1

예산 증가는 교직원 능력개발, 홍보사업(38억 9,300만원)이 고용보협기금에서 이관되고, 서비스인력양성시설 확충사업(20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다) 서비스인력양성시설 건립 사전준비 철저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70%인 1,718만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여겨짐.

< 표 > 각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만명)

구 분	1980	1990	2000	2000	2012
서비스업	506	844	1,295	1,638	1,718
제조업	308	499	431	414	410
농림수산건설업	550	458	382	331	330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3.7.4.

반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표 > 1인당 노동생산성

(단위: 만원)

구 분	2004	2008	2011
서비스업(A)	2,950	3,500	3,860
제조업(B)	4,930	6,470	8,510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비율(A/B)	0.60	0.54	0.45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3.7.4.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할 때,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분야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전통서비스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콘텐츠, 광고, 보건, 교육분야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재, 진입장벽 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늦기 때문으로 파악됨.

< 표 > 서비스업 고용비중(2009)

(단위: %)

	서비스업 전체	도소매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금융	기타
한 국	68.8	23.6	7.8	4.2	9.7	3.3	20.2
미 국	83.4	22.4	9.3	11.7	14.4	4.1	21.5
OECD	71.1	20.6	7.1	9.8	12.0	3.2	17.8

자료: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3.7.4.

정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발전대책”(2013. 7.4., 관계부처 합동)에서 폴리텍 대학에서 서비스분야 신규과정을 신설하고 학과를 개편하기로 하였음.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3.5. 관계부처 합동)에서 서비스산업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비스특화 폴리텍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동 계획에 따라 폴리텍에 신규로 서비스인력양성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조속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음. 이에 2015년 예산안에 건물매입비 140억원, 리모델링비 48억원, 부대시설비 13억원을 포함한 201억원을 편성하였음.

< 표 > 서비스인력양성시설 설치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항목	추정근거	매입(임대)	
		예산액	시기
계		20,100	
매입(임대)비	· 8,830㎡×2,340,000원×70%	14,000	‘15년
리모델링	· 24개실 × 200 - 전기공사 및 강의실배치비용포함	4,800	‘15년
부대시설	· 식당 1개소 × 1,000 · 휴게실 3개소 × 100	1,300	‘15년

신설될 서비스인력양성시설은 정규 학위과정보다는 단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며, 주로 보건의료, 금융정보SW분야 등의 인력을 연간 600명 양성할 계획임.

제조업이 성장한계에 이른 현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서비스 인력양성시설 설치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일반적으로 신규캠퍼스 설립 추진 시에는 설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시설배치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한 뒤,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함. 예컨대 강서캠퍼스를 여성친화캠퍼스로 구축하려는 여성친화캠퍼스 구축사업²⁶⁾도 2013년 8월까지 여성특성화캠퍼스 구축 TF를 운영하여 학과배치 및 운영계획 포함한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2013년 7~10월

26) 경력단절여성 훈련참여를 위하여 여성친화적 직종으로 학과를 전면 개편 또는 신설하고 여성특성화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임

“서비스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 특성에 적합한 여성친화직종 6개 분야 18개 과정을 도출하는 등 사전연구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리모델링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사전에 예산 활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표 > 여성친화캠퍼스 구축 소요예산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010	866	2,355	2,789
설 계 비	287	287		-
시설공사비	5,363	579	2,355	2,429
비품구입비	360	-		360

그런데, 서비스인력양성시설 설치는 현재 내부시설, 교과과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입지 후보군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2015년 내로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까지 종료할 것을 예정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음.

< 표 > 서비스인력양성시설 추진 일정(안)

구 분	'14.10	11	12	'15.1	2	3	4	5	6	7	8	9	11	12	'16.1
입지선정															
매입계약															
리모델링															
커리큘럼개발															
장비확충															
모집															
개원															

특히, 개인소유 건물을 개조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탐색 및 협상을 통한 구입의 과정이 필요함. 그런데, 위치, 면적 등 서비스인력 양성시설의 용도에 부합하는 건물을 탐색하는 데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주와의 협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이 같은 입지선정 및 매입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을 경우 예산 이월이 우려되는 바, 동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당해 연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2) 국가·민간자격관리(1138-350)

가) 예산안 편성내역

국가·민간자격관리사업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간자격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국가·민간자격관리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민간자격관리	-	-	136	136	신규

동 사업에는 신고포상금 예산 1억 1,500만원과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위탁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하여 자격의 신뢰도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불법대여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이후 2014년 4월 「국가기술자격법」에 신고포상금 조항이 신설²⁷⁾되고, 2015년부터 자격증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1,500만원이 편성됨.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더불어 민간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등록, 변경등록, 폐지신고 등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2,1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함.

< 표 > 2015년 국가·민간자격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115백만원

▪ 산출내역 : 230건(추정 신고건수)×500,000원(건당 지급액)

* 추정 신고건수 : 최근 5년간 연평균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153건)의 1.5배

* 포상금액(50만원) : 직업안정법 상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포상금(건당 40~100만원) 참고하여 산출

○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위탁비용 21백만원

▪ 산출내역 : 민간자격 등록 14백만원 + 민간자격 사후관리 7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비 : 14,000,000원

* 인건비 : 10백만원(0.2명×50백만원)

<인건비 : 등록접수, 검토 및 확인, 민원 사실관계 조사, 등록증발급, 사후관리 등>

* 등록검토비 : 4백만원(100종목×4만원)

<출장비, 우편발송비 등>

- 민간자격 사후관리비 : 7,000,000원

<사후관리비 : 민원 사실관계 조사, 컨설팅 등>

* 출장경비 : 3백만원(30개소×1회×1명×10만원)

* 외부전문가활용비 : 4백만원(25개소×1회×1명×16만원)

나) 포상금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및 제도,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대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포상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행정처분 수보다 50% 많은 수준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서도 포상금은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다. 노사정책(2000 프로그램)

2015년도 일반회계 소관 노사정책사업 예산안은 247억 7,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7억 1,600만원(-2.8%) 감소하였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예산이 7,200만원, 노사발전재단 지원 예산이 6억 4,400만원 각각 감소하였음.

< 표 > 2015년도 노사정책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노사정책사업	25,495	24,779	-716	-2.8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4,588	4,588	0	0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3,179	3,107	-72	-2.3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2,845	2,845	0	0
노사발전재단 지원	14,883	14,239	-644	-4.3

※ 종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의 명칭을 2015년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으로 변경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2031-300)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근로자 권익 보호,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임.

< 표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사업
노동단체 (노동조합)	▪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 분규 해소를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 중소기업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영리법인	▪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생산적 교섭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혁신 추진 ▪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 ▪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 그 밖에 노사협력,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5억 8,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과 동일함. 노동단체 지원 목표액이 40억 1,600만원,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목표액이 5억 3,200만원이고, 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예산이 4,000만원 반영되어 있음.

< 표 > 2015년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4,588	4,588	0
○ 노동단체 지원	4,016	4,016	0
○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	542	532	-10
○ 사업평가	30	40	10

가) 사업 명칭 변경 재검토 필요

2014년 현재 이 세부사업의 명칭은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이나 정부는 세부사업의 명칭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부사업의 명칭은 사업목적과 자금의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국고보조 예산의 경우 사업 명칭에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민간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재 지원대상사업 중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 등 일부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상 고용노동부),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이상 보건복지부), ‘비영리만간단체지원’(안전행정부) 등과 같이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나) 비영리법인 지원대상사업 조정 필요

고용노동부 고시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사업 중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혁신추진’은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일반적이는데, 작업장혁신 추진은 결국 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작업장혁신 추진은 관련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된 노사발전재단이나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하거나, 현재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보조를 통해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에서 보조사업평가단은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앞으로 어느 범위 내의 사업에 대하여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²⁸⁾.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추진방식을 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대상사업은 없는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단체별 또는 사업별 지원한도 설정 검토 필요

현재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의 보조조건은 사업예산의 최소 10% 이상을 피보조단체가 자체 부담하는 것과 노동단체 지원의 경우 연구사업의 과제당 한도를 4천만원 이하로 한정된 것임.

그러나 공모와 신청, 그리고 심사에 의한 지원결정과 보조금 교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보조금 예산이 특정한 단체나 법인으로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여러 단체와 법인에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교부하기 위해서 단체별·법인별 또는 사업별로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매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고

28)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9,000만원, 최저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4-6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의 경우도 단체별 지원 한도액은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총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²⁹⁾.

2) 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i) 노사상생협력교육, ii) 국제교류·협력, iii)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iv)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v)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등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142억 3,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억 4,400만원 감소하였음.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2014년 현재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3000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만, 2015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노사정책 사업으로 옮기고 위탁사업비(210-15목)에서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비목을 변경할 것임. 그리고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예산이 1억원 편성되었음.

29)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이란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직능단체, 지자체 등 민간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고취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표 > 2015년도 노사발전재단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 노사발전재단 지원	14,883	14,239	-644
○ 노사상생협력교육	397	333	-64
○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416	347	-69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3,530	3,130	-400
○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825	780	-45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598	598	0
○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3,583	3,583	0
○ 일가양득확산 지원	0	100	100
○ 일반관리비	5,534	5,368	-166

노사발전재단 지원 예산은 2013년도까지만 해도 29억 9,600만원에 불과했으나 다른 사업들을 흡수·통합(2014년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2015년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하면서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가) 재정사업자율 평가 결과 : 매우 미흡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재정은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매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1/3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부처 자체평가(2월말)→ 전문기관 사전 검토(3월말)→ 기획재정부 확인·점검(5월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5월말)을 거쳐 최종 평가등급이 정해짐.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은 가장 낮은 등급인 ‘매우 미흡(100점 만점 기준 47점 득점)’을 받았음.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성과지표(노사상생협력교육 효과성, 분쟁예방 조정 효과성, 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 참가자 인식 개선 효과성 등)의 목표치가 합리적·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사업효과를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문제발굴 및 환류실적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임.

2014년부터 동 사업의 예산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보조사업도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자율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나) 노사상생협력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고위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노사정 관계자 초청, 외국인투자기업·해외투자기업 지원, 노동관계 대외 홍보 등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표 > 노사상생협력교육 운영과정 및 참가대상

과정명	운영방식	참가대상
고위과정	1일	기업체 CEO, 노조위원장
기본과정	1박2일	노사현장 실무자 및 중견간부
심화과정	2박3일	인사노무부서장, 노사교섭·실무담당자

< 표 > 노사발전재단 국제교류협력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국제노동협력	외국의 노사정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노사관계 제도 및 노동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양국 노사정간 우호협력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지원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및 외국 공관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노동정책 및 제도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노동정책 설명회, 노사관계 포럼 등 개최
해투기업 노사관계 지원	해외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 중인 기업의 경영자, 관리자, 현지 파견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노사관계, 노동시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발간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개선	근로자, CEO의 노사관계 인식 개선 및 생산적 노사관계 홍보 등을 통해 노사관계 대외신인도 제고

노사상생협력교육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이지만, 2015년도 예산안이 2014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10% 이상 감소했으며, 201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노사상생협력교육은 9,800만원(△22.7%), 국제교류협력은 2억 1,500만원(△38.3%)이나 감소하였음.

< 표 > 노사상생협력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예산 감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노사상생협력교육	431	397	333	-64	-16.1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562	416	347	-69	-11.3

관련 예산의 감소를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구조조정 결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감소의 규모가 크고 속도 또한 빠르며,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균형 있게 실시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국가와 정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두 사업의 예산규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 기존 국제노사협력본부 산하 국제노동외국인력팀을 분리하여 국제노동센터(본부장급)를 출범시켰는데, 국제교류협력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업무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예산 삭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에 관한 국제협력업무를 고유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를 개정하여, 재단이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다)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사업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사업은 대학교, 언론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사단체 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실시,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했으나, 2014년부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운영기관이 되어 간접보조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음.

2015년도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을 위한 예산안은 7억 8,000만원(보조금 7억 7,100만원, 사업평가비용 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8억 2,500만원) 대비 4,500만원 감소하였음.

2014년 현재 고려대, 한국경제신문 등 8개 교육기관에서 각각 3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고보조액은 2011년에 8억 7,100만원이던 것이 2015년에는 7억 7,1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생 1인당 보조액도 2010년 375만원에서 2015년에는 321만원으로 감소하게 됨.

< 표 > 교육생 1인당 평균 보조액

(단위: 천원)

연 도	국고보조액(A)	교육생 수(B)	교육생 1인당 보조액(A/B)
2015(안)	771,000	240명	3,213
2014	815,000	240명	3,396
2013	831,000	240명	3,463
2012	871,200	240명	3,630
2011	871,200	240명	3,630
2010	543,350	145명	3,747

동일한 교육의 수준과 질을 유지한다고 전제할 때 국고지원이 감소하면 결국 교육생의 자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³⁰⁾, 교육기관에

30) 교육기관은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

교부하는 보조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하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라)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장시간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표 >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개요

구 분	지원수준	지원방식
컨설팅	▪ 700~15백만원 내에서 비용 전액 지원(단,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	▪ 재단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하거나, 전문기관에 비용 지원
교육	▪ 무료	▪ 임금, 근로시간, 평가 및 훈련에 관한 무료 교육 진행
코칭	▪ 무료	▪ 8주 이내 6회 이상 코칭 방문을 통한 1:1 일터혁신 코칭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와 같은 53억 7,000만원(사업비 35억 8,3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7억 8,700만원)임.

동 사업은 2014년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임. 위탁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공고-입찰-심사-낙찰자 결정 등의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노사발전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의 근로자들 또한 고

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용안정에 대한 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30명으로, 재단 정규직(정원 내 인원을 말함) 5명,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근로자가 16명임. 기간제근로자 중 9명은 2014년 9월말 현재 이미 근무기간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전환되었고, 나머지 7명은 2015년 상반기 중에 2년을 충족하게 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 2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마) 일가양득 확산

일가양득 확산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이란, 일과 일 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자기 계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여 삶을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동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게 될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안은 1억원임. 재단은 1억원의 예산을 인사·노무담당자 교육(200명 목표, 예산 1,500만원)과 매뉴얼 발간 및 우수사례집 제작(이상 예산 8,500만원)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째, 사업실시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미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매뉴얼’이 발간·배포 되었음.

2014년 2월 18일 정부, 기업, 경제단체, NGO 대표 등이 모여 일가양득 대국민 선포식을 열었음. 이 날 선포식에서 i) 정부는 캠페인 추진, 유연근무 돌봄 등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ii) 기업은 적절한 근로방식 도입 및 기업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iii) 근로자는 일 가정 여가의 균형 속에서 조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 노력을, iv) 경제 및 사회 단체는 생활 속,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의 실천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2014년 5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매뉴얼에서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i) 업무시간 중 생산성 높이기, ii) 회식·야근, 꼭 필요한지 되돌아보기, iii) 휴가, 유연근무 사용 늘리기, iv) 육아부담, 남성·기업·사회가 나누기, v) 알찬 여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소개하였음.

그리고, 네이버(NAVER)에 특별 홈페이지를 오픈, 일가양득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제도(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자기개발, 근로자 고민상담, 시간선택제 일자리, 남성 육아휴직)를 소개하기도 했음(2014.7.10~7.31, 130만명 접속).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15년에 새로운 매뉴얼이나 우수사례집을 제작할 시급성은 없으며, 소수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을 시켜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교육인원을 예산안에 따른 목표치(200명)보다 확대하고 최고경영자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에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노사파트너십 지원, 내일희망일터혁신 지원, 노사상생협력교육,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의 내용이나 지원대상에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포함·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령,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과정을 운영하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2013년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나 지원프로그램에 일가양득 확산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노사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과 문화의 형성을 유도해 가야 할 것임.

둘째, 일가양득 확산을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노사발전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 컨설팅 등이 일가양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현재도 노사발전재단이 여러 위탁사업, 보조사업을 수행하느라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을 일가양득 확산의 주관기관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³¹⁾.

바) 노사발전재단 인력구조 조정 필요

노사발전재단에는 정원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과다하여 대책이 필요함.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 임원을 제외한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정원은 모두 155명이고 현원은 127.5명(단시간근로자 포함, 휴직자 및 출산전후휴가자 8명 제외)으로 결원률이 17.7%로 매우 높음.

2011년 3월 21일 국제노동협력원, 전직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출범한 이후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정원은 155명에서 변함이 없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했음에도 퇴직과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현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표 > 노사발전재단 직원 정·현원 및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9월말
정원(A)	155	155	155	155
현원(B)	145	141	135	127.5
정현원차(C=A-B)	10	13	20	27.5
결원률(C/A)	6.5	8.4	12.9	17.7
신규채용인원	6	4	8	0

31)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직제상 정원은 변동이 없고 그나마 그 정원마저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반면, 노사발전재단에는 직원 외에 무기계약직 53명과 기간제근로자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 정원의 70.3%에 해당하는 수준임. 재단에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많은 것은 정부 위탁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들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한시적 사업이나 대체인력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혹은 정원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있음. 그러나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비해 정원 외 인력이 너무 많아 조직 구조가 다소 기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구조와 인력 상황이 고착될 경우 조직과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직제상 결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고, 더 이상 정원 외 인력을 늘리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임. 이 경우 담당예정업무에 적합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면 소정의 전형을 거쳐 그들을 정원 내로 흡수하는 것이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부분의 지출계획안은 4,49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3억 3,200만원(13.7%)이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40억 1,100만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100억원) 등 신규사업 2개가 편성되었음.

< 표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342,381	395,321	449,653	54,332	13.7
• 근로감독역량강화	493	524	498	-26	-5.0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3,567	4,570	4,774	204	4.5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2,906	1,279	1,215	-64	-5.0
•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1,585	1,483	1,409	-74	-5.0
• 장시간근로개선지원	5,333	5,808	416	-5,392	-92.8
• 근로감독활동지원	4,821	4,732	5,154	422	8.9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1,418	1,300	3,600	2,300	176.9
• 체당금지급	223,919	252,484	274,253	21,769	8.6
• 무료법률구조지원	19,867	20,299	20,299	0	0.0
• 체당금조력지원	121	406	200	-206	-50.7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970	2,997	2,040	-957	-31.9
•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	-	4,011	4,011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	10,000	10,000	-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
• 문화예술제	534	626	595	-31	-5.0
•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2,038	2,655	2,522	-133	-5.0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1,084	1,176	1,117	-59	-5.0
• 퇴직연금사업운영	1,267	1,881	3,275	1,394	74.1
•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운영	469	416	400	-16	-3.8
• 생활안정자금대부	60,207	81,868	100,368	18,500	22.6
• 신용보증대위변제	11,782	10,817	13,507	2,690	24.9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해당금지급 2,742억 5,300만원(8.6%)
- 생활안정자금대부 1,003억원 6,800만원(22.6%)
- 신용보증대위변제 135억 7백만원(24.9%)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6억원(176.9%)
- 퇴직연금사업운영 32억 7,500만원(74.1%) 증액됨.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20억 4,000만원(△31.9%)
- 장시간근로개선지원³²⁾ 4억 1,600만원(△92.8%)
- 해당금조력지원 2억원(△50.7%) 감액됨.

32) '15년부터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인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노사발전재단지원(2036-311)」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은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

1) 근로감독역량강화(3031-300)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은 근로기준제도·관행 개선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근로감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선진화된 노동행정체제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억 9,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600만원 소폭 감소하였음.

< 표 >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근로감독역량강화	493	524	1,071	498	-26	-5.0

< 표 >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 근로감독역량강화	524	1,071	498	-26	-5.0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291	291	277	-14	-4.8
○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233	233	221	-12	-5.2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0	547	0	0	0

동 사업의 세사업은 i)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사업 ii)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사업이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위탁교육, 법령 등 자료 발간, 노동사범수사 교육비, 정책연구과제수행,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15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을 이유로 5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함.

최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수사는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법령 위반 유형이 점차 새롭고 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기존의 근로기준 위반행위(근로시간 미준수, 임금·퇴직금체불 등) 외에도 근로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미스터리쇼퍼³³⁾, 사업장전자감시, 정신적 가학³⁴⁾, 산재은폐, 노조활동 방해, 불법파견·간접고용 등)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화, 수사의 신속화가 필수적 전제라고 보임.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산하 노동청에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의적절함.

33) Mystery shopper란 ‘내부모니터요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직원(근로자)을 불시에 감시하기 위하여 손님을 위장한 감시자(모니터요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태도, 성의, 친절도, 청결도, 판매기술, 고객만족도 등을 체크하는 것임. 이러한 미스터리쇼퍼는 내부직원 중 선발되거나 외부서치업체직원이 선발되고, 이러한 가장고객의 증가로 인해 서구의 직장은 “유연한 감옥”이라고 비판받고 있음.

34) ‘모라하라 (モラハラ) 또는 모럴 해러스먼트’라고도 불리며 직장(사업장)에서 상급자,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각종 형태의 정신적 압박, 괴롭힘, 모욕 등을 당하는 인권침해를 의미함.

첫째,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신설하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³⁵⁾을 구축하는 것은 PC, 서버 등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의 수집·복원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노동사범수사를 가능하게 함³⁶⁾. 현재 각 노동청(지청)에서 압수수색 시 매번 검찰 디지털포렌식팀에 수사협조(증거분석)를 요청하고 있으나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둘째, 근로기준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중요사건의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적인 PC 포맷,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은폐를 방지할 수 있음. 최근 노동사범들이 사건 조작 및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법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는 법령위반 사실을 수사하는 특별사범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 필요함³⁷⁾.

< 표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 예산 세부내역

총 5억 4,700만원(디지털 포렌식 장치 구입 비용)

-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180백만원): HDD 이미지 복제, 무결성 검증 등 장비
- 포렌식프로그램(49백만원): 삭제된 데이터 복원 및 분석용 S/W
- 모바일 분석장비(173백만원):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저장된 데이터 복원·분석
- 수사지원장비(18백만원): 금속탐지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 소모품(27백만원), 기타 기반시설(100백만원): 봉인라벨, 정전기 방지 봉투 등
증거 무결성 입증용 소모품 및
분석실 시설 등

35)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 법의학’이라 불리며, 컴퓨터·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삭제된 정보 포함)를 탐지·복구·분석·보존 및 원본 여부를 증명하여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과학수사의 기본 절차임.

36)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개월의 소요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함.

37) 비교사례로서, 특허청, 공정위, 관세청 등에서도 자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과학적 증거수집을 통한 수사여건을 마련하고 선진근로감독기법의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노동청)의 수사역량강화 및 자료수집확대는 기업 및 국민일반에 개인정보침해 등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활동, 시스템 구축·운영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임.

2)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3031-302)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사업은 i) 지방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민간조정관을 통해 노무상담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ii) 최저임금제 홍보 및 지도·감독,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및 홍보를 수행하며, iii)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47억 7,4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2억 4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3,567	4,570	4,774	204	4.5

< 표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 취약근로자근로조건보호	4,570	5,616	4,774	204	4.5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3,445	4,106	3,649	204	5.9
○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406	406	406	0	0.0
○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262	262	262	0	0.0
○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457	842	457	0	0.0

동 사업은 세사업으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최저임금준수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세사업의 추진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됨.

2015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세사업에 있어 다음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사업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를 위한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비 및 성과사례비, 연구개발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보루역할을 해오고 있음.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

레이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준수 의무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안착 및 활성화는 시급한 문제임.

특히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함)’는 민관협력사업으로서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제 준수, 임금체불금지, 성희롱예방·방지 등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위한 감시·홍보활동을 하는 것임.

2014년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상·하반기 각각 100명씩 지킴이를 위촉·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법령 위반·의심 사업장 693개소를 적발하거나 최저임금준수 등의 사항을 전국 46,411개소 사업장에 홍보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음.

다만, 해마다 지킴이에 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킴이 활동비와 사례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³⁸⁾, 전국에 걸쳐 단 100명의 지킴이가 21주간만 활동하는 것은 나름의 한계에 봉착했음.

2015년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비 및 성과사례비 예산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2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13,000원 x 100명 x 21주).

38)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세사업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매년 재위촉에 따른 번거로움과 업무단절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고질적인 사업비 부족이 생긴다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지킴이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활동기간도 21주에서 52주로 늘리는 등³⁹⁾ 제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킴이 사업은 최저임금제도에 당면한 사업장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시정과 홍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그 활성화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그동안 정부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홍보, 연구 등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에 비하여 지킴이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하겠음.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킴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활동비, 사례비 지급이라는 답습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지킴이 활동을 독려하여야 할 것임. 이후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여 법령 준수, 근로조건 개선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임.

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지도점검·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기간제 일자리에 있거나 5인 이

39)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산액으로 연간 10억 7,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있는 연소근로자(청소년)⁴⁰⁾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⁴¹⁾ 그 잘못된 관행은 시정이 시급한 문제임.

< 표 > 최근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⁴²⁾

(단위 : 년, 개소, 건수)

점검 년도	점검 대상	위반 사업장	위 반 내 용							
			취직안허 증거소지	증명서 미바치	근로시간 미준수	야간휴일 근로미인가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주지	근로계약 미체결	기타
‘11	2,711	2,384	7	847	217	401	296	1,605	1,245	5,603
‘12	1,940	1,780	4	431	117	262	206	1,253	1,186	4,130
‘13	3,057	2,572	-	99	15	35	488	1,768	1,787	4,203
합계	7,708	6,736	11	1,377	349	698	990	4,626	4,218	13,936

40) 관련법상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인 자이고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나, 근로기준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해야할 연소근로자는 대체로 청소년과 일치한다고 볼 것임. 연소근로자(청소년)는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단기간 근로(알바), 단시간 근로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41) 201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이 청소년 근로 환경의 개선책 마련과 적절한 근로감독 실시 등을 지적한 바 있음.

42) ‘14년 6월 현재에도 945개소를 점검하고 있고 이 중 656개소의 위반상황을 확인하여 시정,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표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조치결과

(단위 : 년, 개소, 건수)

연도	점검 대상 (개소)	위반내용(건수)	조치내용(건수)		
		건수 (업체수)	시정 (업체수)	사법처리 (업체수)	과태료 (업체수)
'11	2,711	9,681 (2,384)	9,676 (2,381)	5 (3)	
'12	1,940	7,589 (1,780)	7,581 (1,776)	7 (3)	1 (1)
'13	3,057	8,395 (2,572)	8,374 (2,558)	19 (12)	2 (2)
'14.6월	945	1,525 (656)	1,518 (650)	5 (4)	2 (2)

연소근로자(청소년)는 향후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군으로서 미래 노동시장의 주축이 될 세대임에도, 현재 근로관계법⁴³⁾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는 노동시장 왜곡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 최근 정부에서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나의 소중한 첫 번째 일자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고용노동부)”을 의제로 논의한 바 있음. [참고자료 4 :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2014년을 보면, 세사업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주로 i) 방학기간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⁴⁴⁾⁴⁵⁾ ii) 청소

43) 노동법의 대분류 중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문제된다고 할 것임.

44) 2014.1.15.부터 2.28까지 전국 945개소를 감독하여, 656개소에서 21,525건의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렸음.

년 알바 10계명 책자(13만부) 및 리플렛(5만부)을 제작·배포하였으며
 iii)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였음.[참고자료 5 : 2013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2015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는 동 세사업을 확충하여 i) 청소년근로권익 보호교육을 확대하고, ii) 권역별 거점 알바신고센터(전국 10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iii)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고·진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졌으나,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받지 못한 상태임.

< 표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의 추가요구(총 1,414백만원)

○ 청년·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교육 확대(5.64억원) * 교육자료 개발(30백만원) , 교육자료 제작(534백만원) ※ 사업필요성 : -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15년도 예산 반영액은 직전년도(‘14년, 5억원)와 같은 수준이라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한계 -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노동법 특강”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교재 및 강의자료 제작·보급이 미흡 - 이에 청소년 근로권익 특강을 내실화하고 일반 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배정이 필요 ○ 권역별 거점 알바신고센터 운영 내실화(2.5억원) * (‘14년) 10개소 × 5백만원 → (‘15년) 10개소 × 30백만원 ※ 사업필요성 : - ‘14년도에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를 지정*(10개소)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개소 당 500만원 지원)토록 함(*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 학교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알바신고센터 지원 금액이 개소당 연 50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

45) 이처럼 향후 방학기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을 상시·수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 근로 피해사건대리 지원(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운영)(6억원)

- 100명(보호위원)×500,000원(활동비)×12개월=600백만원(위탁사업비)

※ 사업필요성 :

- 연소 근로자의 피해 신고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소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 방안 추진할 계획
- * 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 지방관서별로 2~4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전국 100명)할 예정

<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신고사건 처리건수	1,076	1,214	1,449	1,736	1,598	1,718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소년은 앞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로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근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학교교육 등으로 근로관련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근로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근로관계법 위반사례를 엄단할 필요는 무척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⁴⁶⁾.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홍보나 현장점검에 머물러 있는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사업을 근로권익보호 교육과 알바신고센터운영, 피해사건 법률지원 등으로 확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청소년보호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노력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46) 2014년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청소년 고용노동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이 확대·증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3)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3031-304)

‘고용상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법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12억 1,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400만원 감소하였음. 2013년도에는 예산규모가 31억 900만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내역사업 중 하나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지원’ 사업(2014년도 예산 15억 7,500만원)이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 표 > 2015년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B)	증 감 (B-A)	
				%
□ 고용상차별개선 지원	1,279	1,215	-64	-5.0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	768	730	-38	-4.9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등	511	485	-26	-5.1

2015년도 예산안에는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예산이 신규로 2,200만원 반영되어 있음.

고용노동부는 현재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을 확

대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및 농림어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노동계에서 사용자책임의 회피, 근로자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허용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⁴⁷⁾. 종래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현재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가 변경된 제도를 잘 준수하는지 근로감독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에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을 유도·촉진한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단시간근로자(시간선택제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바뀐 제도를 인지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지는 않는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감독해야 할 것임.

4)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은 i) 퇴직연금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설계를 조력하기 위한 교육·컨설팅·홍보·연구 사업과 ii)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사회적 안착을 돕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안은 36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3억원 대비 176.9%에 해당하는 23억원이 증가하였음.

< 표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1,418	1,300	3,600	2,300	176.9

< 표 >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주요 세부내역 비교(2014년도/2015년도)

'14예산	'15예산안
총액: 1,300	총액 : 3,600
○ 홍보: 499백만원	○ 퇴직연금사업장 확대적용('11~12년) 등을 감안하여 홍보사업비 감축(350백만원)
○ 교육·컨설팅: 580백만원	○ 교육·컨설팅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한 중소기업 도입률 제고 (859백만원) - 퇴직연금분석센터 위탁*을 통한 정책개발지원·기획조사 등(300백만원) * 퇴직연금시장 변동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연구용역비: 80백만원	○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u>신규</u>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 (2,200백만원) - 가입근로자(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퇴직연금 부담금의 10%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⁴⁸⁾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⁴⁹⁾, 2026년 초고령사회⁵⁰⁾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고령화 및 공적연·기금의 소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공적연·기금 의존을 탈피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절실한 상황임⁵¹⁾.

48)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는 사회.

49)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사회.

50)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사회.

51) 2010년 OECD국가의 GDP대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비율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약 50조원에 불과하여 4% 상당임. 앞으로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함에 따라 2015년 약 78조원, 2020년 150조원으로 적립금 목표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8월 27일 정부는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참고자료 6 :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2014. 8. 27)]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현황과 향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14년 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자료 : 금융감독원

< 표 >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계획안(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예상)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2015년도부터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사업은 36억 상당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이 2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산출근거

- ☞ 근거요소 1 : 30인 이하 전체 사업장 161만개, 근로자 499만명
- ☞ 근거요소 2 : ‘18년까지 사업장 10% 가입 가정 시 16만개, 91만명 가입 예상(이 중 140만원 미만 근로자 21만명)
- ☞ 근거요소 3 : 21만명 중 1차년도 가입예상 근로자 약 4만4천명
- ◎ 추계: 44천명 * 10만원(사업주 연간 부담금 100만원 가정 시 10%선) * 0.5(6개월분)
= 총 22억원
- ※ 지원 규모(지원 대상 근로자 21만 명)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중기 기금제도 가입유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10%선에서 관계부처 협의로 합의되었음

세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지원’은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의 신규사업이자 향후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주 지원 사업은 큰 의미를 가짐.

다만, 신규 사업의 실시예 앞서 다음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 사업계획의 현실성 확보임. 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으로 4만 4천명 가량⁵²⁾을 예상하는데 이 사업의 본격적 실시는 2015년 7월 1일

이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확보하고 사업을 준비할 시일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32,637개소) 및 가입자(135,892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4만 4천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제도의 사전 준비 및 가입을 위한 홍보·안내·가입유도 등의 노력이 없는 한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보임⁵³⁾.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그 입법의 추이⁵⁴⁾에 따라 제도시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變數)에도 유의하여 철저히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52) 월 소득 140만 미만 근로자의 10% 상당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53) 신규발굴되는 것을 전제로 동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만약 신규발굴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기존가입자가 기금가입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하다면 동사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게 됨.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2014.10

54) 동 사업 중 국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사업의 경우, 세사업의 시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임.

< 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말
사 업 장(개소)	10,303	18,221	26,427	32,637
가 입 자(명)	20,622	59,069	102,461	135,892
적 립 금(억원)	131	902	2,906	4,607
운용관리수입(백만원)	27	246	767	1,170
해지사업장(개소)	428	2,955	3,923	4,550
해지근로자(명)	1,160	10,688	35,815	66,407
지 급 액(억원)	6	85	489	1,180

※ 자료 : 근로복지공단, 각 연도별 실적은 누계기준임.

둘째, 지원금의 규모가 제도유인에 효과적인 수준인가에 관한 부분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지원금을 퇴직연금부담금의 10% 상당(10만원으로 추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으로 가입·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⁵⁵⁾.

따라서 지원금을 사업에 소극적인 그룹을 대상으로 차별화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일 경우 제도가입 유인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그 지원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음. 지원금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앞서서, 제도운용의 모의계획(simulation)을 하거나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5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금이 하나의 판촉금(promotion)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가입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적절한 유인효과를 가지는 보조금(subsidy)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마.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8400 프로그램)

2015년도에 일반회계가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회계-기금간 거래(전출금) 지출계획안은 1,113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35억원(43.1%) 증가하였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700억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전액 감액되었음.

< 표 > 2015년도 회계-기금간 거래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B)	2015계획안 (B)	증 감 (B-A)	전출대상기금
합 계	77,800	111,300	33,500	-
○ 고용보험운영	218	718	500	고용보험기금
○ 모성보호지원	35,000	70,000	35,000	고용보험기금
○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0	산재기금
○ 산재예방사업	9,200	9,200	0	산재기금
○ 장애인기금운영	25,000	25,000	0	장애인기금
○ 임채기금운영	82	82	0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000	0	-2,000	고용보험기금

1)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사업, 8422-883)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3항). 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계획안은 2014년도 계획과 같은 92억원임.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계획안 11조 9,312억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금 3,000억원과 여유자금운용 6조 6,227억원을 제외한 사업성 경비 성격의 지출예산총액은 5조 86억원임.

< 표 > 2015년도 산재기금 지출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계 획	2015계 획 안
산재보험(A)	4,085,174	4,265,266
산업재해예방(B)	328,713	437,330
고용노동행정지원(C)	301,645	305,980
소계(D=A+B+C)	4,715,532	5,008,576
공자기금예탁(E)	300,000	300,000
여유자금운용(F)	6,869,885	6,622,660
총계(D+E+F)	11,885,417	11,931,236

2007년까지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87억원이었으며, 2008년에 인상되어 현재와 같이 92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산재기금으로의 출연금 92억원이 2015년도 기금 지출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에 불과하며, 산업재해예방(4100 프로그램) 사업의 지출예산 총액 4,373억원과 대비해서도 2.10% 수준임. 이는 2014년도에 비해 각각 0.7%p와 0.02%p 하락한 수치며, 2007년과 비교하면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음.

< 표 > 산재기금 지출예산과 일반회계 전입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계 획	2014계 획	2015계 획안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예산총액(A)	168,384	328,713	437,330
지출예산총액(B)	4,157,885	4,715,532	5,008,57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C)	8,700	9,200	9,200
C/A	5.17	2.80	2.10
C/B	0.21	0.20	0.18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2015년도 전체 안전예산을 2014년도 17.9% 확대한 14조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를 확대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는 지출예산 등의 규모에 연동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발전특별회계

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쟁력 강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임.⁵⁶⁾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명되었으나,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등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인 권역에서 벗어나 주민 일상생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전환됨에 따라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지역발전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정명칭과 회계운영 사항 등을 변경하였음.(2014.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였음. 또한 지역발전위원회가 예산편성의 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도록 하였음.

5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변동 내역

구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① 생활기반계정으로 개명 *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추가하여 25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일반회계 등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사회발전계정 신설 검토중)
예 산 편 성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30일) 지방 → 부처 → 기재부 지역위 ↑ 평가결과(6.30)	예산신청 (5.31일) 예산요구 (6.13일) 지방 → 부처 → 기재부 지역위 ↑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3일)
예 산 집 행 ⁵⁷⁾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 사업집행 후 남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 사업집행 후 남은 잔여예산은 유사한 사업에 전용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4.5.2.

57)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나. 예산안 편성내역

고용노동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총 14개 사업, 900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표 >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 (본예산) (A)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B-A)	%
총 계	8,564	8,564	9,790	91,059	90,058	80,268	819.9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소계	8,564	8,564	9,790	9,267	8,266	-1,524	-15.6
제주이관업무지원	8,289	8,289	9,515	9,020	8,019	-1,496	-15.7
직업안정기관운영 (7041-301)	145	145	149	153	153	4	2.7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광특) (7041-306)	728	728	1,208	1,133	1,133	-75	-6.2
청년강소기업체 험 프로그램 (7041-307)	456	456	456	456	456	0	0.0
사회적기업 육성 (7041-309)	3,268	3,268	4,671	4,204	3,363	-1,308	-28.0
신규실업자등직업 훈련(7041-310)	1,676	1,676	887	798	638	-249	-28.1
노동위원회전문성 강화(7041-313)	145	145	149	149	149	0	0.0
노동위원회청사 관리(7041-314)	59	59	61	63	63	2	3.3
제주지방노동 위원회인력지원 (7041-401)	589	589	630	674	674	44	7.0
제주직업안정소 인력지원 (7041-402)	1,097	1,097	1,174	1,256	1,256	82	7.0
제주지방노동 위원회기본경비 (7041-403)	86	86	89	92	92	3	3.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2014예산 (본예산) (A)	2015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B-A)	%
제주직업안정소 기본경비 (7041-404)	40	40	41	42	42	1	2.4
자치단체 직업능 력개발지원(제주)	275	275	275	247	247	-28	-10.2
자치단체 직업능력 개발지원(제주) (7042-301)	275	275	275	247	247	-28	-10.2
생활계정 소계	0	0	0	81,489	81,489	81,489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0	0	0	81,489	81,489	81,489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037-312)	0	0	0	81,489	81,489	81,489	순증
세종계정 소계	0	0	0	303	303	303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0	0	0	303	303	303	순증
사회적기업육성 (세종) (1037-313)	0	0	0	303	303	303	순증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제주이관업무와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세종계정과 생활기반계정에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예산이 편성되었음.

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 조정 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과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차별성을 보임.

일반회계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해당부처에 예산을 신청한 후, 부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게 됨. 반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경제발전계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된 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담당부처에 제출하게 됨. 담당부처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예산 편성의견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함.

<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편성 방식

계정 편성 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2014.5.2.

예산의 집행에 있어도 일부 차이가 있음. 일반회계 또는 기금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⁵⁸⁾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

5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월 등을 할 수 있음. 또한 예산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⁵⁹⁾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용·이용 절차를 거쳐 타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함.

이와 달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특정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하며,⁶⁰⁾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유사 사업에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음.⁶¹⁾ 이는 자치단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만,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이를 타 사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타 사업에 사용된 내역도 관리되지 않는 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교부금 85억 6,400만원 중 25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고, 이 중 17억 4,900만원을 타 사업에 사용하였음. 특히,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은 예산 16억 7,600만원 중 13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를 타 사업에 사용하였음. 이에 국회는 2013년도 결산 심사시 “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5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6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였음.

이를 감안할 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한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 등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표 >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집행 부진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8월말 기준)		2015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안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1,676	1,676 <299>	1,676	1,676 <312>	887	718 <156>	638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447	447 <411>	728	728 <568>	1,208	1,208 <510>	1,133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145	145 <79>	145	145 <86>	149	123 <61>	149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은 연례적으로 계획인원에 비하여 훈련실시인원이 미달하여 예산집행이 3억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2015년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참여자수가 지속적으로 계획인원에 미달함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표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계획인원 대 실시인원

(단위: 명)

	연 도	계 획 인 원	참 여 자	종 료 자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2011	863	469	338
	2012	1,158	533	429
	2013	1,239	445	382
취업성공패키지	2011	230	381	97
	2012	230	344	136
	2013	550	687	146

주: 계획인원은 종료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임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사업은 조사관 교육과 워크숍, 부문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인데, 연례적으로 교육비용이 계획보다 적게 소요되어 실행액이 1억원 미만임에도 2015년에는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될 경우,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타사업의 전용재원으로 활용가능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고용보험기금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1) 고용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설치되었음.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이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액은 11조 2,261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사업주분담금+근로자분담금)이 8조 5,997억원, 여유자금 회수가 2조 2,822억원 등임.

< 표 > 2015년 고용보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13 계 획 액	2014 계 획 액(A)	2015 계 획 안(B)	증 감	
				(B-A)	(B-A)/A
계	95,411	112,910	112,261	-649	-0.6
사회보장기여금	61,428	79,520	85,997	6,477	8.1
재산수입	1,375	1,563	909	-654	-41.8
경상이전수입	1,094	1,086	1,218	132	12.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	1	1	0	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16	517	607	90	17.3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0,725	29,851	22,822	-7,029	-23.5
일반회계 전입금	272	372	707	335	90.0

고용보험기금은 수혜자의 성질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자영업자의 실업급여계정,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⁶²⁾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에 급여의 0.65%씩 납부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주가 급여의 0.25~0.85%를 납부함.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계정에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0.25%를 납부함.

62)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표 > 고용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구분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65%	0.65%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주: 자영업자는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으로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2014년 고용보험기금의 순지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7조 7,680억원임.

< 표 > 2015년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사 업 명	2013 계획액	2014 계획액(A)	2015 계획액(B)	증 감	
				(B-A)	(B-A)/A
계	95,411	112,910	112,261	-649	-0.6
【 사 업 비 】	64,831	70,910	77,680	6,770	9.5
고용정책	42,110	45,030	49,039	3,649	8.0
직업능력개발	13,116	14,597	16,318	1,721	11.8
고용평등실현	8,532	9,822	11,273	1,451	14.8
장애인고용증진	30	28	27	-1	-5.0
고용노동행정지원	1,043	1,073	1,023	-50	-4.7
【여유자금 운용】	30,580	42,001	34,581	-7,420	-17.7

2) 고용보험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 명확화 필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됨.⁶³⁾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계정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를 받음.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근로자 또는 실직한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

< 표 >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내역 및 계획안

(단위: 억원)

계 정	지급 내역	2015년 계획안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51,463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전직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26,145

양 계정은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계정은 연간 지출

63) 자영업자는 별도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혜를 받음.

액의 1.5~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1.0~1.5배의 적립금을 쌓도록 규정되어 있음.⁶⁴⁾

2014년 현재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0.6배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적립금은 2.1배 적립되어 있음.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부족은 모성보호급여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회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해결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요청한 바 있음.⁶⁵⁾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적립금 보험료율을 2012년 1.0%에서 1.3%로 증가시켰으므로, 적립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64)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65)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보험료율을 1.0%에서 1.3%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적립금이 일부 증가하였음.

< 표 >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2002~2014년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17,979	17,508	21,145	22,454	25,412	26,063	28,628	29,937	29,786	35,738	43,709	49,220	57,832	62,893
지출 (A)	9,130	11,375	15,844	19,054	22,842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47,670	51,463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	-1,069	-3,662	-15,357	-11,799	-6,138	-151	3,163	10,162	11,430
적립 금(B)	37,994	44,127	49,428	52,828	55,398	54,329	50,667	35,310	23,511	17,373	17,222	20,385	30,547	41,977
적립 배율 (B/A)	4.2	3.9	3.1	2.8	2.4	2.0	1.6	0.8	0.6	0.4	0.4	0.4	0.6	0.8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2013년 결산 기준 적립금 배율이 2.1배로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립금 배율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1.6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누적적립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립금 배율 감소는 동 계정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12,718	11,153	12,804	13,580	15,563	15,531	16,430	17,717	17,920	20,333	22,445	21,808	25,152	26,468
지출 (A)	6,872	7,133	7,897	10,270	15,694	20,226	18,467	21,951	18,426	17,463	16,001	18,727	23,164	26,145
당기 수지	5,846	4,020	4,907	3,310	△ 131	△ 4,695	△ 2,037	△ 4,235	△ 506	2,870	6,445	3,081	1,988	323
적립 금(B)	26,132	30,152	35,059	38,369	38,238	33,543	31,506	27,271	26,765	29,635	36,080	39,161	41,149	41,472
적립 배율 (B/A)	3.8	4.2	4.4	3.7	2.4	1.7	1.7	1.2	1.5	1.7	2.3	2.1	1.8	1.6

적립금이 법정배율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지출 확대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 받거나, 정부 정책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바, 기금 지출의 안정성, 일반회계와의 차별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첫째, 2015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 사업이 이관되었는데, 동 사업들의 고용보험기금 지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5년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 HRD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 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등 6개 사업(1,674억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음.

< 표 >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일반회계)	‘14년 예산		사업명(고보기금)	‘15년 계획(안)
중장년취업아카데미	45	➔	중장년취업지원	8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위탁사업비 등)	838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82
장년취업인턴지원	227		장년취업인턴지원	171
고용센터인력지원	356		고용센터인력지원	374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68		고용센터인력지원	68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	235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4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44
계	1,769		계	1,674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장년인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는 참여자 대부분이 고용보험 기가입자이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고용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하므로 이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표 >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된 사업과 그 사유

사 업 명	사업 내용	이관 사유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중장년이 성공적인 재취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재설계 및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지원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위탁사업비 등)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장년취업인턴지원	•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등 종합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 전원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자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 고용센터 비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일을통한 빈곤탈출지원	• 기초수급자 상담관련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지자체 소속) 인건비 지원	
타 부처 인력양성사업	• 국가기간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기능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등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인력양성 사업	• 직업훈련 예산과정에 산업계 수요 반영, 인력양성사업 간 중복해소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인력양성사업을 고보기금으로 통합 추진(‘14.5. 국가재정전략회의)

그러나,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속 기관으로 고용센터 비정규직 인력은 고용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달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또한 청·장년 인턴사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사업주 지원보다는 실업자 대책에 가까우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둘째,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부 사업이 사업 성격상 고용보험기금 지원 필요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국회는 2013년 결산 심사시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 등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

정부는 HRD 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17억원)과 능력개발훈련지원(39억원)이 고용보험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음.

< 표 >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 내역

(단위: 억 원)

사업명(고보기금)	‘14년 계획	→	사업명(일반회계)	‘15년 예산(안)
HRD확산 및 역량 강화	17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7
능력개발 훈련지원*	39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39
계	56		계	56

그러나, 국회는 동 사업뿐 아니라 외국인력지원센터지원,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사업,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사업등도 일반회계 또

는 장애인기금으로의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또한 이관된 사업 중 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의 경우 기관 운영비 성격의 예산(총 6개 내역사업, 44억원 규모)이 고보기금에 여전히 편성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2013년 결산
외국인력지원 센터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4,755
HRD확산 및 역량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 교육훈련사업비 지원	1,718
능력개발훈련지원	한국폴리텍대학 홍보, 교직원능력개발 등 기관운영비성 경비 지원	8,289
장애인고용시설설치 비용융자	장애인 신규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의 설치비용 융자	18,999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비용을 무상 지원	3,000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목적 부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발생하
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일반회계
와 구분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지출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 부담자
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나. 고용정책(1000 프로그램)

고용정책사업 부분의 지출계획안은 4조 9,038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9억 3,000만원(8.9%)인 증가하였음. 신규로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운영, 고용센터인력지원, 실업크레딧지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용안정지원금과 자영업자전직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음.

< 표 > 고용정책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
□ 고용정책	4,230,758	4,502,963	4,903,893	400,930	8.9
• 고용유지지원금	27,157	49,998	33,059	-16,939	-33.9
• 고용촉진지원금	29,653	30,487	66,522	36,035	118.2
• 고용창출지원사업	26,503	113,203	84,018	-29,185	-25.8
• 고용안정지원금	1,676	1,000	0	-1,000	-100.0
• 건설근로자고용지원금	21,576	14,283	8,365	-5,918	-41.4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67,710	108,441	166,180	57,739	53.2
• 직업정보지원	6,024	5,941	7,064	1,123	18.9
• 고용동향조사	3,566	2,962	2,867	-95	-3.2
• 중장기인력수급전망및동향분석	1,286	1,566	1,620	54	3.4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7,957	30,379	28,377	-2,002	-6.6
• 민간고용서비스지원	48,324	37,259	43,170	5,911	15.9
• 지역고용촉진지원	53,114	81,085	90,726	9,641	11.9
• 학교와노동시장연계지원	6,271	6,426	5,783	-643	-10.0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운영 (신규)	0	0	2,809	2,809	-
• 근로자이동실태조사	547	496	551	55	11.1
• 실업급여	3,881,920	3,997,817	4,274,520	276,703	6.9
• 고용센터인력지원(신규)	0	0	52,593	52,593	-
• 고용보험사업평가	350	800	1,000	200	25.0
• 고용보험징수관리	15,147	15,271	16,234	963	6.3
•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융자)	327	415	270	-145	-34.9
•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	30	137	0	-137	-100.0
• 자영업자실업급여	1,620	4,997	5,795	798	16.0
• 실업크레딧지원(신규)	0	0	12,370	12,370	-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실업급여 2,767억 300만원(6.9%)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577억 3,900만원(53.2%)
- 고용센터인력지원 525억 9,300만원(신규)
- 고용촉진지원금 360억 3,500만원(118.2%)
- 실업크레딧지원 123억 7,000만원(신규)
- 지역고용촉진지원 96억원 4,100만원(11.9%)이 증액됨.

고용정책프로그램의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 고용창출지원사업 291억 8,500만원(△25.8%)
- 고용유지지원금 169억 3,900만원(△33.9%)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20억 200만원(△6.6%)
- 고용동향조사 9,500만원(△3.2%)이 감액됨.

1) 고용촉진지원금(1046-350)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인건비)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임.

2015년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안)은 665억 2,200만원으로서 2014년 계획안 304억 8,700만원에 비해 360억 3,500만원(118.2%)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표 > 고용촉진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3결 산	'14계 획 (A)	'15계 획(안)		증 감 (B-A)	%
			요 구	조 정(B)		
고용촉진지원금	29,653	30,487	66,522	66,522	36,035	118.2

동 사업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연 860만원, 다만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하도록 하고 있음⁶⁶⁾.

동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

66) 국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등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고 지원수준 또한 최대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사업의 체계나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 고용촉진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① 구인·구직등록<사업주, 구직자> → ②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 지원대상자 확인 후 채용<사업주> → ③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④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동 사업의 사업취지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로 참여인원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계측부실 및 집행부진을 이유로 줄곧 축소조정되어 왔던 사업임. 그런데 2014년도에는 8월 현재 지원인원 13,747명에게 480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등 2013년도에 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표 > 최근 6년간 고용촉진지원금 집행내역

(백만원, %)

년도	계획액 (A)	전용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08	130,765	43,857	174,621	143,377	82.1	109.6	31,245
2009	115,056	0	126,561	71,762	62.4	56.7	54,799
2010	99,264	△ 14,126	85,138	52,326	52.7	61.4	32,812
2011	57,184	△ 20,139	37,045	19,651	34.4	53.0	17,394
2012	47,892	△ 20,645	27,247	15,254	31.9	56.0	11,993
2013	39,057	0	39,057	29,653	75.9	75.9	9,404

< 표 > 최근 4년간 사업추진 실적

2011	- 6,023개소 7,548명 19,651백만원
2012	- 3,529개소 4,061명 15,254백만원
2013	- 7,308개소 8,516명 29,653백만원
2014. 8	- 11,685개소 13,747명 48,047백만원

2015년에는 16,622명을 목표로 665억 2,200만원의 계획액 집행을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원인원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014년 대비 118.2%(360억 3,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고⁶⁷⁾, 특히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평균지원액 54억원 상당을 토대로 증가추세 5%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2015년도에 동 사업이 예측대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첫째, 시장의 경기변동과 기업의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원을 구체적으로 계측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시장상황과 기업여건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여러 경제적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2014년도의 지원인원, 월평균지원액 등을 기초로 2015년도의 사업을 단순 계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67) * 연도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현황(천명): ('11)63 → ('12)143 → ('13) 201 → ('14목표) 250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인원(명): ('13) 8,516 → ('14.8) 13,747 → ('15계획) 16,622

둘째, 동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그에 따른 시차(time lag)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동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인원(2015년도 30만명 목표)에 비례하여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련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 진행할 필요가 있음⁶⁸⁾. 또한 이 사업 자체적으로도 확인절차, 채용절차, 3개월 기간 후 지원금신청절차, 확인 후 지원금지급절차 등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함⁶⁹⁾.

셋째, 동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부진 및 사업규모 축소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앞서 언급한 대로 동 사업은 초창기 확대추세에 있었으나 계속된 집행부진 등으로 2008년도 이후에는 축소되어 왔음. 이번에 다시 사업활성화가 된 것은 2014년도 1년 상당 뿐이므로 수년에 걸쳐 계속된 고질적 집행부진이 해소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2015년도 사업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할 것임.

68)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목표가 3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취성패 이수 후 취업, 고용유지기간(지원금 지급주기) 등을 고려하면 2014년 동 사업의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9) 즉, 예측인원에 대하여 바로 지원(사업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감소분(Δ)까지 예측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할 필요도 있음.

2) 고용창출지원사업(1047-350)

가) 사업 개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규직전환지원,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용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⁷⁰⁾.

동 사업의 목적은 정규직 전환,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고용지원과 전문인력의 고용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역량을 높이는 것임.

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도 1,132억 300만원에 비해 291억 8,500만원(25.8%)이 감소한 84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고용창출지원사업	26,503	113,203	30,385	84,018	-29,185	-25.8

계획액이 대폭 변경된 사유는 ①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이 각각 245억 4,100만원(31.3%), 201억 3,000만원(78.1%) 감소하였고 ②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이 신규로 135억 6,900만원 편성되

70)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구체적 세사업으로서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 등”이 포함되었음.

였기 때문임. 2015년도 계획액 감축에 대하여는 그간의 집행부실 부분을 축소하고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사업별계획과 목표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 세부사업명	113,203	30,385	84,018	-29,185	-25.8
○ 정규직전환지원	0	0	13,569	13,569	순증
○ 일자리함께하기	78,316	18,590	53,775	-24,541	-31.3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3,650	3,956	4,090	440	12.1
○ 전문인력채용지원	3,823	3,823	5,460	1,637	42.8
○ 고용환경개선지원	25,788	2,390	5,658	-20,130	-78.1
○ 기타 관리비용	1,626	1,626	1,466	-160	-9.8

<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내역사업별 지원목표(총 10,805명)

정규직전환지원(신규)	안전보건관리자 400명, 파견근로자 1,367명, 기간제근로자 2,700명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신규채용인건비 1,116명, 임금보전지원 2,232명, 설비투자 지원 40개소, 설비투자용자 40개소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인건비지원 1,000명
전문인력채용지원	인건비지원 1,000명
고용환경개선용자	용자지원 600개소, 무상지원 55개소

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준비 철저

2015년 동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840억 1,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성과에 따라 고용률 개선, 실업문제 해결 등의 여러 고용노동적 사회문제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사업은 급작스런 사업확대로 인하여 사업의 세부적 계획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집행부진이 계속된 것도 사실임. 이러한 점을 기초로 2015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¹⁾.

첫째, 사업 전반적으로 집행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계획 마련이 필요함. 동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집행이 50%를 하회하였고, 이에 따라 세사업의 잦은 변경 및 예산의 대폭 증감이 반복되었음. 특히 세 사업 중 큰 규모를 가진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번에 각각 245억 4,100만원(31.3%), 201억 3,000만원(78.1%) 감축된 바도 있음.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사업대상인원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마련되었고 지원대상요건도 엄격하였기 때

7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과다편성 및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분리 편성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2014.10.

문이었음⁷²⁾. 따라서 2015년에는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세사업 각각으로 개선대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⁷³⁾.

< 표 > 고용창출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년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1	16,440	-	-	-	16,440	6,102	37.1	37.1	10,338
2012	50,497	-	-	-	50,497	22,092	43.7	43.7	28,405
2013	47,662	-	-	-	47,662	26,503	55.6	55.6	21,159
2014.9	113,203	-	-	-	113,203	22,360	19.8	19.8	-

둘째, 세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정규직전환지원’의 적절성에 관한 것임. 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상태의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년 동안 50~57만원 상당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의 적절성이나 효과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i) 정

72)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음.

73)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의 제도개편으로 다음을 들고 있음. 「‘13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72페이지 참조.

< '14년도 제도개편 주요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다각화
 - * 설비투자지원 및 융자, 임금보전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신설
-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채용지원 대상 업종 확대(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모든업종)
- 지원금 지급주기 단축(6→3개월)
- 지역특화산업지원 신설

규직전환 지원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고용의 신규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의 확대를 독려하고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사업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고용창출지원사업들⁷⁴⁾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⁷⁵⁾. ii) 정규직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부분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등을 고용창출지원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신규 세사업인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전환지원이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임⁷⁶⁾.

74)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유망창업기업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임.

75)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2014.10. 참조.

76)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2014.10. 참조.

< 표 >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추계근거

□ 정규직전환 지원 13,569백만원 <신규 반영>

- 안전보건관리자 : 1,368백만원
* 400명 × 평균단가 57만원 × 6개월
- 파견근로자 : 4,101백만원
* 1,367명 × 평균단가 50만원 × 6개월
- 기간제근로자 : 8,100백만원
* 2,700명 × 평균단가 50만원 × 6개월

□ 이 중 안전보건관리자 지원금 예산 추계(총 1,368백만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 단가 : 57만원/월 = [260만원(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평균임금) - 146만원(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평균임금)] × 50%
 - 물량 : 400명/년 = 5,370명(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수) × 20%(비정규직 비율, 주요 협·단체 및 사업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 약 40%(사업 참여율, 시행첫해 임을 감안)

다)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지출계획 조정 필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135억 6,9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음. 그러나, 고용형태 변경과 임금인상이라는 두 가지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임금상승분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출계획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기간제근로자

사용자가 i)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ii)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함.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전환(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과 임금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도 목표액 81억원(2,700명×50만원×6개월) 중 상당 규모가 불용될 가능성이 높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형태 전환에 더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임금상승분의 50%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함.

물론, 취업규칙이 잘 갖추어져 있고 호봉제를 도입한 사업장 등에서 고용형태 변경 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형태 변경과 동시에 임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승분의 50%를 지원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를 변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2)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가 i) 6개월 이상 연속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ii)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 경우 월 60만원 한도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함.

첫째,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간접 고용 축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을 파견 업무에 추가해 농어업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파견 제한 완화 및 대상 확대, 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 등 파견근로자의 규모 및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둘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에 더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만 그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기존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i) 해당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ii)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나,

첫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일

반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최소한 각 1인 이상 두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고용 형태 전환을 사업주가 고려할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둘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고용창출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실적을 고려해야 함. 현재 사업주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해당 관리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⁷⁷⁾.

그러나, 위 지원책을 통해 채용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5명, 2014년 1명(9월말 기준) 등 4년간 13명에 불과함. 이는 사업주들이 법률에 따른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금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만으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77) 월 평균 지원금은 사업주가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가령, 사업주가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한도인 월 90만원이 지원되어 실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1개월 보수는 210만원이 됨.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1049-354)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4억 3,900만원으로 2014년 39억 1,500만원보다 35억 2,400만원(90.0%)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 획 (A)	'15계 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3,911	3,915	4,455	7,439	3,524	90.0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역에 신고된 자, 퇴직공제 제도 근로이력이 있는 자가 소정의 건설기능 훈련을 이수한 경우 훈련생에게 1일 16,000원, 훈련기관에 1명당 29,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함.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훈련인원(4,200명→8,000명)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건설기능인력의 훈련수요는 2014년 약 138만명에서 2018년 약 139만명으로 1만명 정도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내국인력(외국인력 제외)만으로는 2014년 약 8만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공급부족 규모가 약 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⁷⁸⁾됨.

< 표 >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분석 전망

(단위 : 명)

연도	건설투자전망	인력수요(A)	인력공급		수급차이
			계(B)	내국인공급(B1)	(B1-A)
2014	1,510,600	1,382,975	1,539,498	1,305,416	-77,559
2015	1,521,930	1,385,583	1,509,443	1,275,506	-110,077
2016	1,533,344	1,388,211	1,477,124	1,243,327	-144,884
2017	1,544,844	1,390,859	1,443,197	1,209,534	-181,325
2018	1,556,430	1,393,526	1,408,439	1,174,902	-218,624

자료 :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분석(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으로 인력공급이 부족한 건설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도탈락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 이 사업은 20일 주간과정(1일 6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편성하되, 훈련의 실효성, 건설일용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야간과정(1일 3시간, 40일) 등으로 탄력 있게 편성하고 있음에도 2013년의 경우 22.7%, 2014년의 경우 19.9%로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훈련생의 훈련 참여의지, 취업의사를 고려한 사전상담을 강화하는 등 훈련인원의 중도탈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78)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분석(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 표 >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실적

(단위 : 개, 명, %)

구 분	훈련기관	훈련과정	실시인원	수료인원	중도탈락자	탈락률
2013	16	38	4,670	3,608	1,062	22.7
2014. 8.현재	27	40	3,246	2,083	645	19.9

둘째, 현재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개별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업종 내 각 권역(지역)별 사업 단위간의 훈련내용이 상이하여 훈련참여자와 건설업체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취업률이 저조⁷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오랜 경력과 고급기능을 가진 기능공의 자연감원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생의 개별 능력과 업종별 훈련내용의 단계별 표준화를 고려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훈련과 취업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훈련과정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 이 사업은 건설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감안하여 타일, 미장, 용접, 철근 등 9개의 훈련직종을 선정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4년 8월 기준 직종별 훈련인원을 보면 타일과정 등 특정 직종에 집중⁸⁰⁾되고 있음.

79) 훈련종료 후 취업률은 2013년의 경우 36.8%, 2014년(8월말 기준)의 경우 29%임.

80) 2013년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 4,670명중 타일과정 훈련인원이 2,090명으로 44.8%를 차지하고, 2014년(8월말 기준)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 3,246명중 타일과정 훈련인원이 912명으로 28.1%를 차지함.

< 표 > 최근 2년간 직종별 건설일용근로자 훈련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건축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적	철근	타일
2013.	4,670	1,229	139	404	76	126	301	151	154	2,090
2014. 8.현재	3,246	824	219	177	62	290	451	197	114	912

이에 고용노동부는 타일 직종은 취업이 용이하고, 비교적 근로환경이 좋은 한편, 일급이 높아 타 직종에 비해 훈련생과 훈련기관에서 선호하여 훈련인원을 많이 선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훈련과정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넷째, 2015년에 훈련인원을 확대(4,200명→8,000명)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13년 건설산업연구원의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부족전망과 훈련대상자 확대 예측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당초 정부의 중기재정 소요전망(2014~2018년)에서 2015년도의 경우 2014년과 동일하게 예측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년대비 90%(35억 2,400만원)의 증가는 다소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논의가 필요함.

< 표 > 2014년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실적

(단위 : 2014. 8월말 기준, 명)

권역	연 번	훈련기관명	훈련 직종	훈련 구분	모집		수료	훈련 중	탈락
					8월	누 계			
계					357	3,246	2,083	518	645
서울 강원	1	서울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주간	9	102	78	11	13
			건축목공	야간	-	59	33	18	8
	2	대신기술능력개발원	타일	주간	18	131	84	22	25
	3	강원건설전문학원	타일	주간	31	142	88	29	25
인천 경기	4	그린직업전문학교	미장	주간	-	45	30	-	15
			조적	주간	-	49	23	-	26
	5	건설기술교육원	도장	주간	11	87	61	14	12
			배관	주간	19	129	99	19	11
			용접	야간	-	116	45	43	28
	6	성남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주간	-	99	78	-	21
	7	이탱크교육(주)	용접	주간	14	95	49	16	30
	8	안산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야간	-	39	19	-	20
대전 충청	9	청남아키텍기술학원	건축목공	주간	30	179	130	31	18
			건축목공	야간	9	46	19	13	14
	10	대한기술교육학원	배관	주간	24	87	52	25	10
	11	부여한옥평생교육원	건축목공	주간	-	22	20	-	2
	12	세종목조한옥학원	건축목공	주간	-	44	35	-	9
광주 전라	13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조적	주간	17	93	55	18	20
	14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철근	주간	6	114	94	-	20
			건축목공	야간	-	89	55	20	14
	15	희망타일도배필름학원	타일	주간	-	97	88	-	9
	16	플랜트건설직업전문학교	용접	야간	30	88	47	29	12
	17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	용접	야간	5	36	12	12	12
	18	대한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	45	36	-	9
	대구 경북	19	대구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30	163	107	32
미장				야간	13	66	33	24	9
20		영진직업전문학교	미장	주간	-	66	54	-	12
			타일	주간	-	79	48	-	31
21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조적	야간	10	55	29	18	8
22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	타일	야간	8	65	27	14	24
23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용접	주간	-	87	61	-	26
24		한국산림평생교육원	건축목공	주간	-	18	16	-	2
부산 경남	25	대산직업전문학교	타일	주간	8	94	63	8	23
			방수	주간	4	62	51	7	4
			용접	야간	8	29	4	15	10
	26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건축목공	주간	2	149	122	-	27
			도장	주간	4	94	82	-	12
			도장	야간	14	38	9	29	-
	27	부경대학교 건설기술인력양성사업단	배관	야간	19	74	22	29	23
			타일	야간	14	74	25	22	27

4) 고용동향조사(1052-350)

고용동향조사는 일반취업자, 청년, 고학력자(대졸자) 및 고령자 및 다양한 계층의 고용구조, 직업이동경로 등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임.

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도 29억 6,200만원에 비해 9,500만원 (3.5%)이 감소한 2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표 > 고용동향조사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고용동향조사	3,559	2,962	3,215	2,867	-95	-3.2

< 표 > 고용동향조사 내역사업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 고용동향조사	2,962	3,215	2,867	-95	-3.2
○ 청년패널조사	844	983	983	139	16.5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122	1,284	1,284	162	14.4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관)	996	734	600	-396	-39.8
○ 청년층 등 단기조사	-	214	0	0	0.0

2001년부터 계속된 고용동향조사 사업은 청년층(YP), 대학졸업자(GOMS), 고령자(KLoSA)⁸¹⁾ 등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정책 개발·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 패널의 구축 및 유지에도 점차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중단 패널조사를 통하여 청년층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대졸자의 취업현황과 노동시장 안착과정을 분석하며, 급속히 진입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중장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임.

2015년도 계획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은 전액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출연목적에 부합하게 계획액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지난 2013년도 결산 검토 시에, 한국고용정보원은 “비정규직이동경로조사(1058-350)”, “노동시장분석센터위탁연구(7077-270)” 등 사업에서 ① 협약사항(서면동의) 위반, ② 위탁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임의전용) 등을 지적받았음. 특히 그 당시 문제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위탁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어 동 사업에 편입되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81) 이 사업은 과거 “노동시장분석센터위탁연구(7077-270)”의 내역사업에서 “고용동향조사(1052-350)”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이후 13년도에 4억 5천만원 14년도에 9억 9,600만원으로 대폭 확대조정 되었음(본조사 실시 및 패널 1천명 추가).

둘째, 청년층 등 단기조사의 신설에 관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단기중점실태조사를 위하여 2억 1,400만원 상당의 “청년층 등 단기조사”라는 세사업을 준비했으나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2013년도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연이어 지적된 바 있듯이, 청년층(청소년 포함), 경력단절여성, 비정규직⁸²⁾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태, 고용동향은 지속적 패널조사 외에 단기·횡단 분석으로 시의적절한 실태조사(Spot Survey)가 요구되었던 바임. 기존 고용동향조사가 청년, 대학졸업자, 고령자를 누적조사해왔고 그간의 조사대상, 조사방향, 조사방법에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나, 향후 새로운 고용노동 현장의 근로자군(群)에 적합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사업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청년층 등 단기조사에 관한 계획액은 신설·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⁸³⁾. [참고자료 7 :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

< 표 > 청년층 등 단기조사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 청년층 등 단기조사	-	214	0	0	0.0

82) 더 넓게는 간접고용, 불법파견 등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

8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도 예산 검토 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음. 이는 일반적인 노동 통계와는 다른 단기집중실태조사(Spot survey)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표 > 청년층 등 단기조사 산출내역

□ 단기고용실태조사 214백만원

가. 조사비용 : $54,000\text{천원} \times 3\text{번} = 162,000\text{천원}$

나. 사업진행 : 50,700원

1) 보고서 및 행정비용: $500\text{천원} \times 3\text{번} = 1,500\text{천원}$

2) 연구보조원 2명 인건비 : 46,000천원

가)급여 $1,750,000\text{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월} = 42,000\text{천원}$

나)법정부담금 $42,000,000 \times 10\% = 4,200\text{천원}$

3) 회의 수당 : $200\text{천원} \times 5\text{명} \times 3\text{번} = 3,000\text{천원}$

5) 취약계층 취업지원(1055-351)

가) 예산안 편성내역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은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려는 사업임. 노숙인, 건설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14년보다 170억 9,600만원 감액된 256억 8,5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취약계층 취업지원	37,893	42,781	25,685	-17,096	-40.0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효율성이 저조한 유휴간호인력재취업 지원사업,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등이 폐지되고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2014년 예산 150억원)이 중장년취업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 표 > 2015년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13						2014('14.8월말)						2015 계획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합 계	39,620	39,620	39,620	37,893	42	1,685	42,781	42,823	31,589	0	940	25,685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사업	15,900	15,900	15,900	14,756	0	1,144	16,650	16,650	13,976	0	940	15,025	
-건설인력취업 지원사업	1,500	1,500	1,500	1,170	0	330	1,500	1,500	854	0	540	4,300	
-산업단지 취업지원 사업	300	300	300	312	0	△12	300	300	343	0	0	0	
-노숙인 취업지원 사업	450	450	450	419	0	31	450	450	405	0	0	450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525	525	525	538	0	△13	525	525	513	0	0	525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	4,125	4,125	4,125	4,111		14	4,125	4,125	3,141	0	0	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9,000	9,000	9,000	8,201	0	799	9,750	9,750	8,720	0	400	9,750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14,008	14,008	14,008	13,917	0	91	14,958	14,958	11,053	0	0	0	
■심리안정 지원프로그램	2,320	2,320	2,320	2,282	0	38	2,700	2,700	1,852	0	0	2,700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4,784	4,784	4,784	4,580	42	162	5,824	5,866	3,603	0	0	5,824	
■채용박람회 지원	1,428	1,428	1,428	1,427	0	1	1,928	1,928	882	0	0	1,928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지원	800	800	800	580	0	220	333	333	194	0	0	0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100	100	100	99	0	1	100	100	0	0	0	0	
■경 력 단 절 여 성 고용촉진 지원 평 위탁사업비 가비용	100	100	100	99	0	1	108	108	0	0	0	76	
■기타운영비 (산출근거)	180	180	180	158	0	22	180	180	29	0	0	132	

나)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 예산 과다 편성

건설인력 취업지원사업(세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한 43억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건설인력 취업지원(세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계 획 액	2014년 계 획 액(A)	2015년 계 획 안(B)	증 감	
				(B-A)	(B-A)/A
건설인력 취업지원	1,500	1,500	4,300	2,800	186.7

예산이 증액된 것은 취업지원기관을 29개소로 확대하고, 신규 기관에는 지원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 때문임. 고용노동부는 기존 취업지원기관이 건설노동조합에서 주로 운영하여 일용근로자보다는 기능공 중심으로 매칭하기 때문에 비숙련건설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취업지원기관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표 > 기존 건설인력취업지원사업과 신규 취업지원사업 비교

구 분	기존 취업지원사업	신규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건설노조 중심 운영(12개소) * 14년 운영기관 기준	사업주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등 중심 운영(17개소)
소요예산	9억원(75백만원×12개소) * 상담사 2명, 센터운영비 등	34억원(200백만원×17개소) * 구인개척자 2명, 상담사 2명, 센터운영비 등
지원대상	기능공 건설근로자(플랜트) 중심	비숙련 일용건설근로자 중심
지원내용	구인·구직 매칭	구인수요 발굴, 구직자 확보, 구인·구직 매칭, 기타 각종 고용지원사업 안내 등
기타 특징	기능공, 노조원 중심, 일정기간 취업가능 등 취업지원 용이성 등	비숙련공(잡부등), 비조합원, 일일고용 구인·구직 등 취업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14)

건설일용근로자는 정부 취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에도 소개료 부담 등을 지고 있으므로⁸⁴⁾, 이를 지원할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음. 다만, 기존 유사사업이 건설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되어 성과가 저조하였는 바, 동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실업자들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와 건설현장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일일취업센터 16개소를 개소하여 직접 운영하였음.

84) 비숙련 건설일용근로자는 유료직업소개소(6,500여개소)를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소개료로 일급의 10%내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동 취업센터는 성과가 저조하여 2014년 현재 3개소로 축소된 상황임. 성과가 저조한 것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소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노임을 당일 받을 수 있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선호하여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⁸⁵⁾.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센터도 동일한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방문 및 취업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설업계의 관행상 정부가 공공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건설일용근로자가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인력 취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85) 건설업체는 관행상 노임을 15일 단위로 지불하나,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건설근로자에게 미리 일당을 지급하고 차후에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근로자 임금을 받고 있음. 이를 ‘건설일용직 임금 대신 지불’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대불’이라고 함. 대불제도는 20년 동안 건설업자, 건설일용직, 직업소개소의 3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6) 고객상담센터 지원(1055-352)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에 소속기관으로 고객상담센터를 두고 있음.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1350)에 의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무를 담당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 제외).

그러나, 고객상담센터만으로는 상담 수요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 충남 천안, 경기 안양, 광주광역시에 현재 3개소의 고용콜센터를 두고 있음.

< 표 > 고용콜센터 현황

구 분	개소일 (운영기관)	근로자	주요 업무
천안콜센터	2009. 7. 1 (KT cs)	▪ 운영진:16명(8시간) ▪ 상담원:119명(8시간)	고용분야 노동관계법(1350 인입) 전화 질의에 대한 회신
안양콜센터	2013. 2. 1 (효성 ITX)	▪ 운영진:10명(8시간) ▪ 상담원:96명(4.5시간)	고용분야 노동관계법(42개 고용센터 대표전화 인입) 전화 질의에 대한 회신
광주콜센터	2014. 3. 3 (KT cs)	▪ 운영진:9명(8시간) ▪ 상담원:80명(4.5시간)	고용분야 노동관계법(28개 고용센터 대표전화 인입) 전화 질의에 대한 회신

고객상담센터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21억 6,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47억 3,000만원(63.7%)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고객상담센터 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계 획	2014계 획 (A)	2015계 획 안 (B)	증 감 (B-A)	증감률
□ 고객상담센터 지원	5,719	7,430	12,160	4,730	63.7
○ 시설장비유지비	218	313	614	301	96.2
○ 위탁사업비	3,825	5,800	9,664	3,864	66.6
○ 연구용역비	0	25	0	-25	순감
○ 자산취득비	696	542	883	341	62.9
○ 무형자산	980	750	999	249	33.2

2015년도 지출계획안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걸려오는 직통전화를 콜센터에서 분담하기 위해 안양콜센터 상담원 100명을 증원하려는 데 따른 것임. 2015년에 상담원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2015년에 3개 콜센터의 상담원은 모두 395명이 되는데, 2012년과 비교할 때 불과 3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임.

< 표 > 고용콜센터 상담원 증가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예정)
천안콜센터(8시간)	65	65	119	119
안양콜센터(4.5시간)	-	96	96	196
광주콜센터(4.5시간)	-	-	80	80
계	65	161	295	395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피보험자 관리, 실업인정,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담량이 많아 다수의 고용센터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센터 기능 수행을 위해 이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음.

다만, 고용센터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고용콜센터 상담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7)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1083-350)

가)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이 사업은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임. 2015년도 계획안은 2014년보다 8억 700만원 증액된 14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액(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13,301	13,370	14,177	807	6.0

전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도급비, 사업비 등을 증액한 데 기인함.

4대 사회보험⁸⁶⁾은 보험부과대상자가 유사함에도 각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 징수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정부는 단일 기관에서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징수를 수행하고 있음.⁸⁷⁾

86)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 표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연혁

-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 출범('08.7.17)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준비위원회」 구성·운영('09.6.12) : 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노·사·정 합의서 서명('09.6.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 실무추진단」 출범('09.6.1)
-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노사정실무협의회 : 정부, 공단, 노조 등 관계자
 - 정보화실무협의회 : 복지부, 노동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자
- 각 공단별 징수통합 실무준비조직 구성·운영
- 전환인력 건강보험공단 징수인력 배치('11.1.1)
 - 건강(1,512명), 연금(712명), 근복공단(317명)
-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작('11.1.1)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은 각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당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배치된 징수 인력의 실인건비에 따라 분담하며, 사업비와 경상운영비는 담당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음.

-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 표 > 기금별 위탁사업비 분담기준

(단위: 명, %)

	인건비	사업비 , 경상운영비	
	분담비율 (실 인건비 기준)	전환인력	분담비율 (전환인력 비율기준)
고용보험	4.5	149	5.9
산업재해보상보험	5.0	168	6.6
국민연금	26.0	712	28
국민건강보험	64.5	1,512	59.5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연간 징수사업의 인건비 예산의 4.5%,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예산의 5.9%를 분담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최근 편성내역을 보면 합의한 비율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상운영비를 비교하면, 고용보험기금은 5.9%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12.9%, 2012년 7.3%, 2013년 6.7%, 2014년 6.3%를 분담하는 등 분담비율보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표 > 2011~2014년 4대 기금의 경상운영비 예산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예산(B)	비율(B/A)	예산(C)	비율(C/A)	예산(D)	비율(D/A)	예산(E)	비율(E/A)
고용보험	322	12.9	158	7.3	244	6.7	272	6.3
산업재해보상보험	352	14.1	167	7.7	264	7.3	306	7.1
국민연금	729	29.1	729	33.8	1,140	31.5	1,152	26.6
국민건강보험	1,101	44.0	1,101	51.1	1,973	54.5	2,594	60.0
합 계(A)	2,504	100.0	2,155	100.0	3,621	100.0	4,324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15년 예산안에서도 경상운영비의 6.6%를 분담하기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보다 많은 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표 > 2015년 4대 기금의 징수위탁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	
	예산안	합의된 비율	예산안	합의된 비율	예산안	합의된 비율
고용보험	8,352	4.5	5,553	5.9	272	5.9
산업재해보상보험	9,290	5.0	5,733	6.6	167	6.6
국민연금	50,717	26.0	24,803	28	1,187	28
국민건강보험		64.5		59.5		59.5

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합의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은 기금별로 예산 편성주체, 편성시점이 다른데 기인함.

첫째, 편성주체의 차이임.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에서 계획안을 편성하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 기금계획운용안을 편성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위탁사업비 총액이 결정되고 각 기금이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금의 사정에 따라 징수위탁비를 각각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표 > 각 기금별 예산 편성 및 심의 주체

	편성주체	심의 확정주체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둘째, 예산편성시점의 차이임.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⁸⁸⁾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편성되어 국

88)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에 제출됨.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므로 연례적으로 11월에 편성되어 보건복지부에 제출됨.

이로 인하여 징수위탁비 총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11월에 이르러서야 확정이 되며, 각 기금은 총액에 대한 고려 없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기금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경우, 일부 기금이 합의된 비율보다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가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전 위탁사업비 총액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각 기금이 합의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2015년 예산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직업능력개발(1100 프로그램)

2015년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예산안은 총 1조 6,317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1억 2,100만원(11.8%)이 증가하였음.

< 표 >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 률
□ 직업능력개발	1,270,325	1,459,653	1,631,774	172,121	11.8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33,652	399,554	470,635	71,081	17.8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307,041	285,719	327,299	41,580	14.6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54,178	211,487	185,657	-25,830	-12.2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75,897	239,670	259,130	19,460	8.1
• 기타 능력개발지원	7,703	8,184	15,322	7,138	87.2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63,691	130,611	160,917	30,306	23.2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106,388	113,748	119,448	5,700	5.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사업지원	33,769	33,537	37,746	4,209	12.6
• 능력개발옹자지원(옹자)	87,637	35,643	55,000	19,357	54.3
•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369	1,500	620	-880	-58.7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710억 8,100만원(17.8%)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415억 8,000만원(14.6%)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303억 600만원(23.2%)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94억 6,000만원(8.1%)
- 능력개발용자지원(용자) 193억 5,700만원(54.3%) 증액됨.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감액내역을 보면,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258억 3,000만원(△12.2%)
-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8억 8,000만원(△8.7%)이 감액됨.

1) 일·학습병행제 추진 등(1150-356)

가) 일·학습병행제 개요

일·학습병행제란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업이 학습근로자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제도를 의미함.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교육이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준비생과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⁸⁹⁾하고 있는 바, 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임.

2014년 10월 기준 94개 기업에서 517명을 채용하여 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3,30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일·학습 병행 운영,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등에 관련 예산 총 2,29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음.

89) 1인당 신입직원 재교육비용이 6,088만원에 이름.(한국경영자총연합회, '08)

< 표 > 2015년도 일학습병행제 관련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계 획 액	2014년 계 획 액 (A)	2015년 계 획 안(B)	증감 (B-A)	
					(B-A)/A
일 학습병행 운영 · 지원	-	43,374	83,362	39,988	92.2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일 학습병행 훈련)	-	23,499	103,408	79,909	340.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일 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	20,000	29,000	9,000	45.0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 대부	-	-	13,656	13,656	순증
합 계	-	86,873	229,426	142,553	

주: 일학습병행제 관련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함.

일 · 학습병행운영사업에서는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며,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에서는 학습근로자의 월정수당 및 훈련비용을 지급하게 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에서는 일 · 학습병행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 · 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29개소를 설립 · 운영하며,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대부사업에서는 기업의 직업훈련 인프라 투자 비용을 융자할 계획임.

< 표 > 일 · 학습 병행지원 사업내용

	개 요	지원내용
일 · 학습병행 운영 · 지원	현장중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도제식 일 · 학습병행 훈련 지원 훈련프로그램개발, 현장훈련인프라구축, 평가제도 등 사업운영, 현장훈련 모델확산 등	2014년 1,300개 기업 →2015년 3,300기업 (2000개 신규, 1300개 기존)
사업주직업 훈련 지원금	일 · 학습병행기업 훈련비용 지원	학습근로자 2014년 3,000명 →2015년 13,200명 1인당 연 783만원 지원: 인건비 월 40만원(연 400만원), 훈련비 연 383만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훈련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지원을 위한 일 · 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	2014년 20개 센터 →2015 29개 센터 센터 당 10억원 지원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대부	일 학습병행훈련 실시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	2015년 24개 기업 신규 지원 기업 당 5.69억원 지원

자료: 예산정책처(2014)

나) 일·학습병행제 보완 필요

일·학습병행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첫째, 일 · 학습병행제의 근거법률인 「산업현장 일 ·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아 법적 의무 부과 또는 권리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부가 입법예고⁹⁰⁾중인 「산업현장 일 · 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일 · 학습병행체계의 추진체계 및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각종 인정 · 지정기준, 학습근로자와 사업주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률임.

90) 2014.9.30.에서 2014.11.10.까지 입법예고중임.

< 표 >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일학습병행제의 추진체계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인정, 지정 기준 마련
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간 학습근로계약 체결, 학습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고용 지원 등

라. 임금, 학습근로시간, 휴식 등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규정,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취소

자료: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 관한 사항은 일학습병행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임. 또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학습기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더불어 법률 제정 전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은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두고 있음.

현재 법안의 통과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급효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법안 통과 전 학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일반근로자로 전환 등을 적용받기 어려움. 따라서 법안의 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제도로 인하여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비용 지원이 대기

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일·학습병행제의 도입대상 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 중 기술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의 기업임. 예외적으로 50인 미만 기업 중 명장 소
유 기업 등 기술교육이 가능한 기업은 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50인 이상의 기업이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근로자수로 보면 70% 이상이 50인 이상
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표 > 2014년 일·학습병행제 참여희망기업 현황

기업규모별 사업장 수 (전체 1,734개)	중소기업	300인 미만		1,650개 (95.2%)	
			50인 미만		770개 (44.4%)
	대·중견기업	300인 이상		84개 (4.8%)	
			1,000인 이상		11개 (0.6%)
기업규모별 학습근로자수 (채용계획: 9,569명)	중소기업	300인 미만		8,472명 (88.5%)	
			50인 미만		2,820명 (29.5%)
	대·중견기업	300인 이상		1,097명 (11.4%)	
			1,000인 이상		260명 (2.7%)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전수가능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
며, 교육을 위한 인원 확보도 쉬우므로 일·학습병행제에 대·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

다만, 현재 재직자 훈련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⁹¹⁾, 동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직업훈련 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비율

(단위 :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300인 이하	300인 이상	전체
고용보험가 입사업장수 (A)	1,504,380	4,289	1,508,669	1,606,026	4,687	1,610,713	1,743,462	4,466	1,747,928
사업주능력 개발지원금 환급사업장 수 (B)*	115,706	5,039	120,745	116,517	5,705	122,222	113,059	5,391	118,450
환급사업장 비율(B/A)	7.7	117.5	8.0	7.3	121.7	7.6	6.5	120.7	6.8

주: 훈련방법이 다른 경우 환급사업장 수 중복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2014. 5)

셋째, 현재까지 일·학습병행자격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자격제도 도입 전에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는 것은 차후 자격부여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정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2014년 10월 현재 전기, 기계 등 7개 분야 자격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91) 2013년도 결산심사시 국회는 고용노동부에 300인 미만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바, “사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홍보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음.

자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계획임. 일·학습병행기업은 동 자격제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근로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동 자격을 부여받음.

학습근로자의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는 장치로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일응 긍정할 수 있으나, 7개 분야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209개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자격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됨. 고용노동부는 7개 분야 자격증 확정 후 다른 분야의 학습근로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 표 > 일학습병행기업 분류

분 야	기업 수
계	1797
건설	36
기계(금형포함)	878
문화	18
전기·전자	228
정보통신	340
화학	86
재료	2
기타	209(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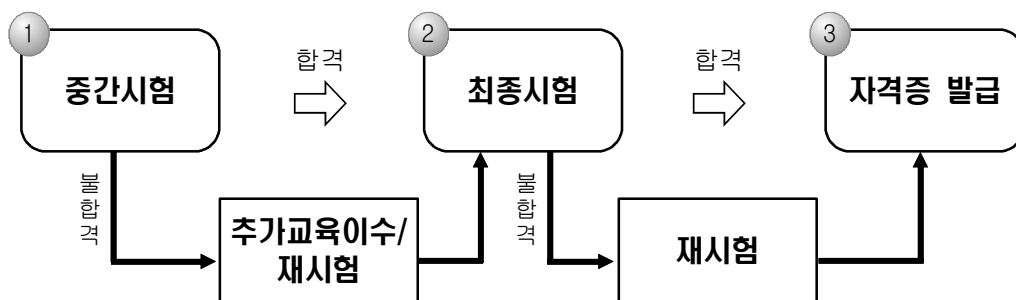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자격증 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격을 단시간에 개발하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일부 기업들이 자격제도 없이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사후에 자격 부여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일부 수정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자격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분야 기업에 대하여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일·학습병행자격을 과정평가형으로 부여하는데, 과정평가형 제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일정요건⁹²⁾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학습과 평가가 교육·훈련 중에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제도를 말함.

< 표 > 과정평가형 자격 절차



92) 교수진 등(인적요건), 실습 시설 및 장비 등(물적요건),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등

다만, 동 제도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하여 자격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검정형 자격시험에 익숙해진 시장에서의 통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2015년 15개 종목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를 보완하며 종목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시장의 반응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6,000여명의 근로자에게 과정평가형제도를 통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을 도입하는 것은 시험 탈락자 문제, 시험 신뢰도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자격제도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제도 중 탈락 또는 포기할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학습병행제는 12~48개월에 걸쳐서 훈련 및 학습이 이루어지며, 동 제도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가칭)학습근로자⁹³⁾로서 근무함. 학습근로자가 훈련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신기술자격인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받게 됨. 일학습병행자격은 검정형 자격제도와 달리 인증된 과정을 수행하고 일정한 형태의 평가를 거쳐서 부여하는 일종의 과정평가형 자격임.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므로, 학습근로자

93) 정부는 학습근로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형태를 도입할 계획으로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또는 회사 폐업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보임. 인턴의 경우 중도 포기는 신분상의 변동만을 의미하나, 학습근로자는 중도 포기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할 경우 자격 취득 가능성도 박탈받게 됨. 이로 인하여 학습근로자는 중도이직하기 어려우며, 회사가 폐업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인증받은 능력단위는 동종 직종의 회사로 이직할지라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일·학습병행기업과 근로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은 소수의 학습근로자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현실에서 타 회사의 학습근로자가 입사하여 원하는 과정을 교육받고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부는 회사 폐업, 중도이탈 등으로 인하여 학습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1145-350)

가) 예산안 편성 내역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15년 계획안에는 전년대비 710억 8,100만원 증가한 4,70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333,652	399,554	470,635	71,081	17.8

예산 증액은 2015년부터 한국형 일·학습병행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13,200명에 대한 훈련예산 1,03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표 > 2015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비 470,635백만원
 - 1) 사업주 훈련지원금: 464,606백만원
 - ① 일반훈련 325,498[=3,300천명(지원인원)×98.6천원(1인당 훈련비)]
 - ② 일학습병행 훈련 103,408(=13,200명×7,833천원)
 - ③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35,700(=51,000명×700천원)
 - 2) 운영비(위탁사업비) : 6,029백만원

나) 일·학습병행 훈련 예산 과다 편성

정부는 사업주에게 학습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34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14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은 1,725개이며, 동 기업에서는 9,413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2015년에는 2,000개의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9월 기준 채용계획인원 대비 82.2%를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4년 선정기업에서는 7,737명($9,413명 \times 82.2\% = 7,737명$), 2015년 선정기업은 8,878명($2,000개 \times 5.4명 \times 82.2\% = 8,878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 표 > 훈련인원 산출근거

* 2015년 훈련인원 13,200명 산정 근거 (① + ②)

① 2014년 선정기업 채용인원 : $9,413\text{명}^* \times 82.2\%^{**} = 7,737\text{명}$

* 2014.9.17. 현재 1,725개 기업의 채용계획인원 9,413명 적용(10월 이후 추가선정기업(약 300개소예상)은 산식에서 제외)

** 2014년 9월 훈련실시 중인 94개 기업의 채용계획인원은 628명이나, 훈련인원은 516명인 점을 감안하여 채용계획인원 대비 실제 훈련인원은 82.2%로 산정

- 2014년 9월 이전 선정기업(1,725개)의 경우 2015년도부터 훈련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2015년 선정기업 채용인원 : $2,000\text{개} \times 5.4\text{명}^* \times 82.2\% \times 70\%^{**} = 6,214\text{명}$

* 선정기업 업체당 평균 약 5.4명(9,413명/1,725개소)의 근로자 채용적용

** 2015년 선정기업의 경우 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실시 과정까지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도포기(4.7%) 등을 고려하여 훈련실시 기간은 약 70%(8.4개월)로 산정

2015년 선정 기업은 훈련프로그램 개발시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70%(8.4개월)만을 반영하기로 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음. 그런데, 동 계산식에는 중도이탈률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2015년 신규 훈련근로자 훈련 기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반영한 예산안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첫째, 동 사업의 단가 편성기준을 보면, 중도이탈률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도이탈률을 감안한 예산조정이 필요함.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동 사업에서는 중도이탈률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계획인원 대비 훈련인원 비율, 훈련실시기간 등의 변수만을 도입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뿐 중도이탈률은 계산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간 이후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예정
이므로 중도이탈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중도이탈률 변수는 예산안
산정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신입사원들의 이직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조직적응실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학습병행제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중
도이탈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더욱이 현재 고용된 학습근로
자의 평균임금이 1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이
유의 이직도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표 > 신입 사원의 이직사유 조사

(단위: %)

구 분	규 모		산 업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	46.4 (43.8)	48.2 (42.9)	47.9 (44.1)	47.1 (40.4)	47.6 (43.1)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16.1 (9.4)	27.9 (29.2)	23.8 (25.5)	25.5 (17.5)	24.2 (23.4)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17.9 (6.3)	17.0 (17.5)	17.5 (15.5)	16.7 (10.5)	17.3 (14.2)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 준비	7.1 (25.0)	3.2 (7.1)	4.7 (9.3)	3.9 (21.1)	4.5 (12.4)
진학(유학)	7.1 (15.6)	1.6 (2.6)	3.1 (5.0)	3.9 (10.5)	3.3 (6.4)
기 타	5.4 (0.0)	2.0 (0.6)	3.2 (0.6)	2.9 (0.0)	3.1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안은 2012년 조사 결과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2014.6.

< 표 > 학습근로자 임금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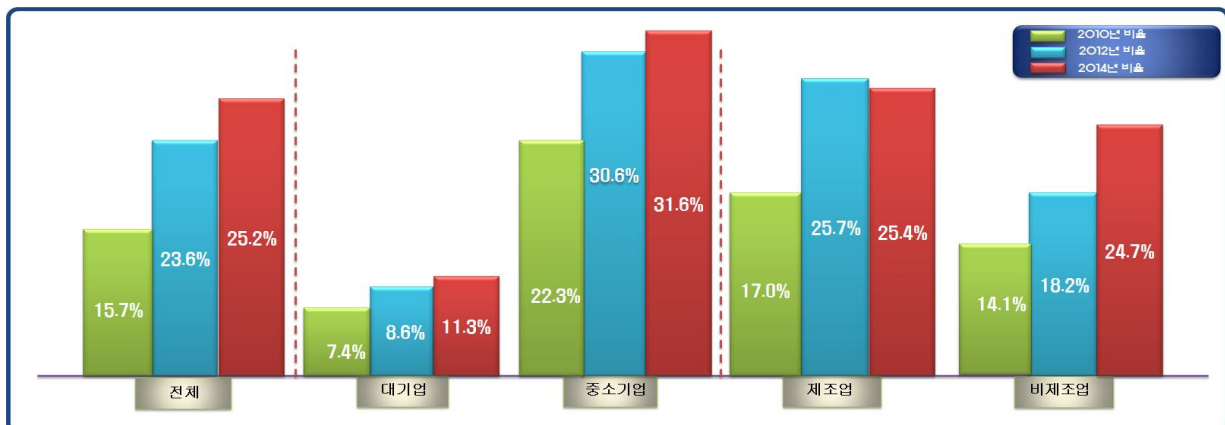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합 계
인원수	36	99	98	18	251
비중	14.3	39.4	39.0	7.2	100.0
	평균 147만원				

주: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 기업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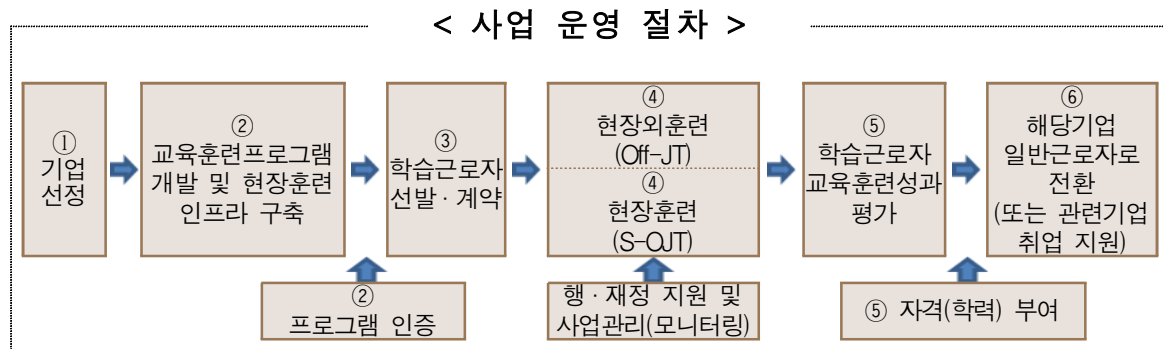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중도이탈률이 30%이며,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5.2%에 이르는 것⁹⁴⁾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도이탈자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중도이탈률을 현실적으로 가정하고 이를 감안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함.

둘째,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모집에서 선정된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교육함. 2014년 94개 기

94)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6.



업에 대한 일·학습병행제 실시 결과 훈련 실시까지 평균 4개월이 소요되었음.



2015년 2,000개소의 기업을 연중 모집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훈련 프로그램개발기관과 모집기간을 고려할 때, 평균 훈련기간은 예산편성 시 가정한 8.4개월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평균 훈련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1148-350)

가) 예산안 편성내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수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공동훈련기관을 보조하는 사업임. 2015년에는 전년대비 204억 8,800만원 증액된 2,295억 9,4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 획 (A)	2015년 계 획 안(B)	증감 (B-A)	
					(B-A)/A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146,564	209,106	229,594	20,488	9.8

예산 증액은 일·학습병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 공동 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290억원, 대학의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현장실습센터 구축비 1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기 인함.

< 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 : 106,122백만원
 - 훈련인프라 비용(97,912백만원) : 운영기관 58,912백만원 + 일학습센터 29,000백만원 + 현장실습센터 10,000백만원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29,000백만원) : (1,000백만원* × 29개 기관**)
 - 장기 현장실습센터(10,000백만원) : 1,000백만원 × 10개 기관
- 전략분야 인력양성 : 69,972백만원(80,190명* × 872,600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舊 지역공동훈련) : 50,500백만원
- 위탁사업비 : 3,000백만원

나) 장기현장실습제도의 타 부처 사업과 중복

대학-기업간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를 실시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한 학생은 사전교육을 수강한 후 3~4학기를 현장에서 OJT(On the Job Training)을 받게 됨.⁹⁵⁾ 현장학습 중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멘토에게 교육을 받음.

95)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됨.

< 표 > 장기현장실습 운영 단계

사전준비	현장실습 실시	사후관리
• 기업과의 matching • 사전교육 수강 • 전공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 전담멘토 지정 • 업무계획수립 및 OJT • 현장실습 실시 • 보고서 (월간, 종합결과) 제출 • 교수의 기업 방문	• 평가 • IPP 결과 보고회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인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취업률이 향상되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게 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⁹⁶⁾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는 IPP제도를 전국 대학에 확산하고자 장기 현장실습센터 10개소(10개소*10억원=100억원)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96) 비 IPP학생에 비하여 취업률은 5%p 높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의 취업률은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 IPP의 기대 효과



장기현장실습센터는 현장실습 표준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각 대학에 전파,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대학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표 > 장기현장실습의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사한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30억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인 바, 양 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과대학의 교육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과대학교육을 혁신하기로 하고 ‘공과대학 혁신 방안’(2014.4.24.)을 마련하였음. 동 방안에서 공과대학 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3~4학년생이 전공분야에 인턴으로 참여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현장학습을 받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를 비교하면, 양자는 수행대상이 공과대학 3~4학년생이라는 점, 대상 기업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라는 점, 현장실습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에서는 IPP 허브센터를 지원(10억원)하며, 기업에는 훈련비 및 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수당(월 4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에서는 학생에게 월 120만원(수당+상해보험)을 지원함.

< 표 >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와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대상	공과대학 3~4학년생	공과대학 3~4학년생
사업내용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하여 대학 재학생이 기업현장에서 OJT 방식으로 실무를 습득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전공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기현장실습 지원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신용등급 B등급 이상 이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다만,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도 현장실습에 적합하다 판단되면 포함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중견기업
학점인정여부	인정	인정
지원내용	○ (대학)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로 지정 - 시설·장비, 운영비 등 최대 20억원 지원 ○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원 - 훈련비(S-OJT, off-JT) : 소요비용 -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지원 (기업당 연간 1,100만원 한도) - 학습근로자 지원 (1인당 월 40만원 한도) -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100만원)	○ (관리기관) 1인당 월 120만원(수당+상해보험) * 학생 1인당 6개월간 720만원 지원 ○ (대학) 지원 없음 ○ (기업) 지원 없음
재원	고용보험기금(대학 100억원, 훈련실비 및 인프라구축비용 등 별도 지원)	일반회계(30억원)

양자는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산업체에서 직무에 부합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바, 지원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보임. 양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중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⁹⁷⁾

97)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제2호 재정지원효율화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중복을 조정할 권한이 있음.

4) 자영업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지원(1191-350)

가) 예산안 편성내역

자영업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8억 8,000만원 감액된 6억 2,000만원이 편성됨.

< 표 > 2015년도 자영업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자영업자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지원	369	1,500	620	-880	-58.7

나) 가입인원 감소를 감안한 감액 필요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2년에는 계획액 36억 3,100만원 중 4억 3,100만원(11.9%)를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계획액 25억 8,100만원 중 3억 6,900만원(14.3%)만이 집행되었음. 2014년 8월 기준 집행률도 13.1%에 불과하여 상당부분 불용이 불가피할 것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자영업자는 전속적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별도의 시간을 투입하여 훈련을 받기 어렵기 때문임.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특화과정을 신설하였으나, 특화과정 참여도 저조한 실정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수는 2012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현재 17,135명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동 사업 훈련인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적인 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임.

< 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단위: 명)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8월
가입유지자	2,260	7,369	21,126	20,936	19,774	18,451	18,031	17,882	17,507	17,176	17,135
신규가입자	4,042	6,875	12,572	1,347	1,399	1,391	1,466	1,564	1,024	1,246	889
소멸자	153	489	1,680	1,782	3,179	3,003	1,711	1,654	1,634	1,479	1,004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1,260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4억 9,500만원(14.3%)이 증액됨.

< 표 > 고용평등실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계 획(A)	'15계 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 고용평등실현	985,559	1,126,054	140,495	14.3
여성고용안정지원	158,936	179,454	20,518	13.0
모성보호육아지원	698,211	804,668	106,457	15.2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27,602	141,932	14,330	11.2
고용환경개선융자	810	-	-810	순감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모성보호육아지원 1,064억 5,700만원(15.2%)
- 여성고용안정지원 205억 1,800만원(13.0%)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143억 3,000만원(11.2%) 증액됨.

고용평등실현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고용환경개선융자 8억 1,000만원(고용창출지원에 통합) 감액됨.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1345-35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539억 5,300만원으로 2014년 550억 7,500만원 보다 11억 2,200만원(△2.0%)이 감액 편성되었음.

< 표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55,075	48,566	53,953	△1,122	△2.0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1,971	3,902	3,902	1,931	98.0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23,999	15,227	21,434	△2,565	△10.7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28,113	28,445	27,625	△488	△1.7
●대체인력뱅크 운영	992	992	992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중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은 출산전후휴가, 임신, 육아휴직⁹⁸⁾ 전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들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39억 200만원으로 2014년 19억 7,100만원보다 19억 3,100만원(98.0%)이 증액 편성됨.

98)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재고용 지원 요건을 기존 임신, 출산 이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설계하여 2014년 10월부터 시행함.

이 사업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유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는 6개월간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함.

그러나 이 사업은 2010년 69.9%, 2011년 60.0%, 2012년 31.2%, 2013년 44.9%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금년 8월 말 기준 계획액 19억 7,100만원 중 5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0.2%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계획액	1,764	1,914	2,713	1,971	1,971
집행액	1,233	1,148	847	885	595
집행률	69.9	60.0	31.2	44.9	30.2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2015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대폭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계획에 맞추어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재고용 지원 요건을 기존 임신, 출산 이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설계하여 대상인원 증가(435명→626명) 및 지원단가 상향(처음 6개월 30만원/이후 6개월

60만원→처음 6개월 40만원/이후 6개월 80만원)에 따른 것임.

그런데 금년 10월 발표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보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상향되지 않았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단가를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임신)하거나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 사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임신)·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연례적 집행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고용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고용친화적으로 설계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출산육아고용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연도	계 획 액	지 원 사 업 장	지 원 인 원			지 원 금 액		
			계	유 기 계 약	무 기 계 약	계	유 기 계 약	무 기 계 약
‘06년	1,320	8	9	-	9	13	-	13
‘07년	1,320	58	66	18	48	174	33	141
‘08년	300	99	143	55	88	383	118	265
‘09년	483	149	234	125	109	636	273	363
‘10년	1,764	325	421	130	291	1,233	260	973
‘11년	1,914	344	435	126	309	1,148	245	903
‘12년	2,712	232	296	105	191	847	228	620
‘13년	1,971	167	286	155	131	885	349	535
‘13.9월	1,971	135	203	102	101	617	224	393
‘14.9월	1,971	135	193	79	114	672	185	487

2) 직장어린이집지원(1345-351)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09억 1,100만원으로 2014년 789억 8,400만원 보다 119억 2,700만원(1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직장어린이집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A)	'15계획(안)		증 감(B-A)	%
			요구	조정(B)		
직장어린이집 지원	64,111	78,984	78,919	90,911	11,927	15.1

이 사업은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물량확대(90개소→110개소) 등에 따른 것임.

< 표 > 직장어린이집지원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2014계 획(A)	2015계 획안(B)	증 감 (B-A)
78,984	90,911	11,927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9,074 o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7,193 · 지출(27,604)-수입(20,411) o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1,881 · 서울 678, 부산 403, 대전 800	☐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 8,978 o 공공직장어린이집운영: 7,193 · 지출(29,237)-수입(21,269) o 직장보육지원센터운영: 1,785 · 서울 708, 부산 433, 대전 619	△ 96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3,676 o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 23,676 -시설전환: <u>90개소</u> ×227,900천원=20,511 * 산단형 공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 장어린이집 포함 -교재교구비: <u>100개소</u> ×31,650천원=3,165	☐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8,709 o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 28,709 -시설전환: <u>110개소</u> ×227,900천원=25,069 * 산단형 공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 장어린이집 포함 -교재교구비: <u>115개소</u> ×31,650천원=3,640	5,033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44,725 o(대 기업) <u>343개소</u> ×13.5명×12월×80만원 ×70%=31,117 o(중소기업) <u>100개소</u> ×13.5명×12월×120만원×70%+136 백만원 =13,608	☐ 직장보육교사등인건비 51,574 o(대기업) <u>393개소</u> ×13.5명×12월×80만원 ×70%=35,653 o(중소기업) <u>117개소</u> ×13.5명×12월×120만원 ×70% =15,921	6,849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509 o <u>72개소</u> ×2,183천원(평균지원액)×12월 × <u>80%</u> =1,509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650 o <u>90개소</u> ×2,183천원(평균지원액)×12월 × <u>70%</u> =1,650	141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해소 노력 필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및 요건

(2014. 10월 현재)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 한도	지원요건
설치 비	무상 지원 (’00~)	시설 전환비	단독	- 소요금액의 60~90% 지원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90% ▪ 컨소시엄형(매입비 40%, 전환비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80% ▪ 영아·장애아 시설 80% ▪ 기타 사업장 60%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공동	
			산단형	
			컨소시엄	
		교재교구비		5천만원
	융자 (’00~)	시설건립, 매입, 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 비	인건비 지원 (’95~)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중소기업 120만원 '14.1월부터)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120~520만원 (’12.1월부터)	- 19인 이하: 120만원 - 20인~39인 이하: 200만원 - 40인~59인 이하: 280만원 - 60인~79인 이하: 360만원 - 80인~99인 이하: 440만원 - 100인 이상: 520만원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령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사업장 인근설치, 정원의 1/3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4.1월~ 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로 나타남.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를 제외한 기업(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미이행 사업장이 162개소(22.7%)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보육수당	위탁	
합 계	1,074 100.0%	877 81.7%	534 49.7%	242 22.5%	101 9.4%	197 18.3%
국가기관	110 10.2%	100 90.9%	83 75.5%	7 6.4%	10 9.1%	10* 9.1%
지 자 체	155 14.4%	152 98.1%	78 50.3%	70 45.2%	4 2.6%	3** 1.9%
학 교	95 8.9%	73 76.8%	33 34.7%	33 34.7%	7 7.4%	22 23.2%
기 업 (공사 등 포함)	714 66.5%	552 77.3%	340 47.6%	132 18.5%	80 11.2%	162 22.7%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 공표제외 대상 10개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표제외 대상 2개소)

2013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010년 255개소에서 197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이행률이 18.3%에 달하고 있는 점, 2015년부터 보육수당을 의무이행 대체수단으

로 인정하지 않음⁹⁹⁾으로 인해 새롭게 의무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사업장의 수가 242개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만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의무 불이행 사업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의무사업장 (A=B+C)	이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13.12.31	1,074	877(81.7%)	534	242	101	197(18.3%)
'12.9.30	919	683(74.3%)	359	253	71	236(25.7%)
'11.6.30	832	604(72.6%)	326	231	47	228(27.4%)
'10년	833	578(69.4%)	312	208	58	255(30.6%)

99)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시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 실시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수당: 정부보육료 단가의 100분의 50이상, 위탁보육: 보육비용의 100분의 50이상

** 15.1.1.부터 보육수당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고 필요

대규모기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인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임.

부지·건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 등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크게 작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업보다 높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비교

구 분	공 통	대기업	중소기업
설치비 (무상지원)	-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한도로 시설전환비 지원	- 지원비율 60%	- 지원비율 80%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시 설전환비 80%, 시설매입비 40% 지원 (6억원 한도) - 산업단지형 시설전환(신 축)비 90%, 시설매입비 40% 지원 (15억원 한도)
설치비 (융자)	단독7억원, 공동9억원 한 도로 융자 (무상·융자 병 행 시 9억원한도, 산단형 은 22억원 한도)	이율 2%	이율 1%
인건비	-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80만원	- 1인당 월 120만원
운영비			- 소모성 교재·교구비 월 120~520만원

그러나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상지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무상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8월
설치형태	계	15	17	14	31	44	62	80	42
단 독	우선지원대상기업	2	2	6	3	7	4	2	2
	대규모기업	8	11	6	22	23	40	50	27
공 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	1	1	3	9	10	16	6
	대규모기업	3	3	1	3	5	8	12	7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전환비만 포함되고, 신축비, 매입비 등은 제외되어, 정부지원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임.

아울러 중소기업은 보육수요 및 재정부담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설치비를 건물매입, 신축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1345-352)

시간선택제¹⁰⁰⁾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근로자가 일과 병행하여 필요(자녀보육, 학습등) 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27억 3,200만원보다 98억 2,100만원(43.2%)이 증액된 325억 5,300만원이 편성됨.

< 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4,919	22,732	26,308	32,553	9,821	43.2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 미흡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인데, 이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 여성과 경험이 많은 퇴직근로자 등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유인할

100)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고용안정)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함.(시간제 근로는 사업상의 개념이고, 법률용어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함)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장시간 근로해소와 유연근로의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임.

2013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2012-2017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3만개로 전체의 39%를 차지하도록 제시하였고, 공공부문에서도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총 1만 6,5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먼저 공공부문의 경우를 보면 2014년 10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년 목표인원 1,060명 중 국가에서 200명을 이미 채용하였고, 175명은 채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금년에 684명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인 반면, 공공기관은 금년 목표인원 1,000명 중 112명만 채용한 상태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2014년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2014년 8월말 기준)

구 분		'14년 목표	'14년 실적
공공 부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60명	- 중앙정부는 200명을 기채용하였고 하반기 에 175명 선발 예정(9.30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에 684명을 채용목 표로 절차 진행중(528명 채용 완료)
	국·공립학교 교사	-	'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공공기관	1,000명	112명('14.상반기)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창출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창출지원형은 201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집행률이 2010년 20.6%,
2011년 26.9%, 2012년 50.4%, 2013년 46.6%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
하고, 금년 8월 기준 집행액도 당초 계획액의 25.3%인 49억 4,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최근 5년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0	4,110	899	-	899	845	20.6	20.6	-	54
2011	6,760	6,760	-	6,760	1,817	26.9	26.9	-	4,943
2012	6,760	6,760	-	6,760	3,409	50.4	50.4	-	3,351
2013	10,563	10,563	-	10,563	4,919	46.6	46.6	-	5,644
2014. 8월	19,532	19,532	-	19,532	4,940	25.3	25.3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는 지원주기와 지급방식이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업승인 이후 예산 집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엄격한 심사기준¹⁰¹⁾ 및 지원 요건과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사업주의 낮은 제도 이용률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표 >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연도별 승인·목표 및 지원 인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예산액	승인인원	목표인원 (A)	지원인원 (B)	과다 추계 (A-B)	지원액
2011년	6,760	2,666명	3,333명	139명	3,194명	1,817
2012년	6,760	4,184명	1,751명	866명	885명	3,409
2013년	10,563	5,738명	3,571명	1,294명	2,277명	4,919
2014년 8월현재	19,532	5,030	5,030	2,517	2,513	4,940
2015년	22,329	5,200	5,200			

이러한 신규창출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금년 195억 3,200만원 보다 27억 9,700만원 증액된 22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도에는 승인인원의 증가, 최저임금 120~130% 구간 신설에 따른 신규소요 반영으로 인한 예산 증액의 요인도 있으나, 연도별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고려해볼 때 2015년도 목표인원 5,200명과 이에 따른 예산액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만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101)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차별금지 등

아울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부문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모델의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모델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노사정 협력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 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신규) : 제도개선 필요

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등)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43억 8,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표 > 전환형 시간선택제지원 산출내역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4,389백만원(신규)

- 3,000명×80천 원*×6월=1,440백만원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50% 지원

- 2,100명 × 200천 원* × 6월 = 2,520백만원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지원(중견·중소기업)

- 3,000명×5.3%(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률)×450천 원*×6월 = 429백만원

*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50%(월 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전환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중소·중견기업)하는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내용 및 요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원 내 용		2015 계 획 안
전 환 지 원 형 (전일제 ↔ 시간제,신규)	▪ 전환장려금	종전 시간당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50%(월 50만원 한도)	4,389
	▪ 간접노무비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중소기업 : 월60만원, 대기업 : 월30만원 한도)	

기존 신규창출지원 중심의 시간선택제 사업은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110% 미만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이 비상용(임시·일용) 일자리기 때문에 신규창출형 외에 전환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2015년에 전환형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2015년 전환형지원 사업의 지원요건을 보면 근로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사업주에게 부담분 50%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은 임금 외

에 수당, 복리후생, 인사관리 등 새로운 인사노무체계 변경이 필요하고,

기업은 전환형이 신규제도이고 생소하기 때문에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 관리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전환형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업주에 부담분(50%)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이 이득을 보는 제도가 아닌 이상 신규 제도를 활용할 기업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다)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 : 사업성과 저조 예상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지원 사업은 기간·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 시간제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무기계약(상용형)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 23억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표 >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산출내역

○ 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2,385백만원(신규)

* 기간·시간제 근로자를 무기·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시 임금 상승액의 50% 지원(공모)

- 1,500명 × 265천원* × 6월 = 2,385백만원

* 상용형·시간제 근로자와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차액의 1/2

(경찰부가조사)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최소 6개월 근속)를 무기계약 시간제로 전환시 증액임금의 50%를 중견·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표 > 기간시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형 지원내용 및 요건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내용	2015년 계 획 안
무기계약직 전환형 (신규)	▪ 전환장려금	기존 기간제인 시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50% (월 60만원 한도)	2,385

그러나 기간·시간제를 무기계약·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까지 인상하는 사례가 드물고, 임금인상이 된다하더라도 인상분이 미미하여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사업성고가 저조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통계청의 2014년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미만(단시간 근로) 취업자 수는 85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0만 2,000명이 증가했음. 단시간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것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단시간 계약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이 포함됨.

< 표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시간, %,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3.8		2014.7				2014.8			
		구성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구성비	증 감	증감률
< 전 체 >	25,291	100.0	25,979	100.0	505	2.0	25,885	100.0	594	2.3
○ 36시간미만	8,178	32.3	3,578	13.8	-47	-1.3	8,580	33.1	402	4.9
1~17시간	1,391	5.5	1,135	4.4	10	0.9	1,311	5.1	-81	-5.8
18~35시간	6,787	26.8	2,443	9.4	-57	-2.3	7,269	28.1	483	7.1
○ 36시간이상	16,299	64.4	22,067	84.9	616	2.9	16,435	63.5	136	0.8
36~53시간	11,487	45.4	16,103	62.0	505	3.2	11,621	44.9	134	1.2
54시간이상	4,812	19.0	5,965	23.0	112	1.9	4,814	18.6	2	0.0
○ 일 시 휴 직	814	3.2	334	1.3	-64	-16.0	870	3.4	56	6.8

자료 : 통계청 2014년 8월 고용동향

단시간 근로자 858만명은 전체 취업자(2,588만 5,000명)의 33.1%를 차지하는데,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643만 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3만 6,000명이 증가했고, 단시간 근로자는 금년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증가보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통계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보다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전환 가능성, 차별금지 등 근로조건의 동일대우원칙이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먼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전일제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감소 이외에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정규직 시간제로의 전환이 기존 업무상의 지위나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시간제근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원하는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역전환 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함.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013년에 (가칭) 「시간제법률」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시간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연도별 변경 내용

변동 사항		‘10년	‘11년	‘12년	‘12.9.1	‘13.1.1	‘14.1.1	‘14.4.15
지원 수준		임금의 50% (한도 40만원)				임금의 50% (한도 60만원)	임금의 50% (한도 80만원, 대규모기업은 60만원)	
사업명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컨설팅	고용창출지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		
우대		-	-	고용창출 100대기업 심사시 가점 부여 (5점, 3년간)				
사업 계획 변경		1회	1회 (기존 승인인원 대비 증감규모 30% 제한)	1회 (기존 승인인원의 실적과 예산상황 등 고려 승인)	제한 없음 (직무변경 불가) ※ ‘13.8.6부터 직무변경 가능		제한없음	
지원요건	고용유지	-	6개월 고용유지	3개월 고용유지	최초 3개월 고용유지			최초 1개월 고용유지
	제외자	-	동일사업장 퇴사자	동일 사업장 퇴사자(1년 이내)			동일 사업장 퇴사자(6개월 이내),	
	감원방지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1년 3개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 ※ 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1년 3개월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년(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감원인원수의 2배수만큼 지원제한) ※ ‘14.4.17부터 시간제 감원시 감원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원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 월 5회 초과시 해당월 지원제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10% 초과시 해당월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초과시 해당월 지원제한	
	운영	고용센터	수탁기관				고용센터 ※ 컨설팅은 위탁	
지원금지급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6개월 단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3개월 단위 신청 ※ 3개월 이후 실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1개월 단위 신청	
	감액	-	신규고용규모 3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	-				
	중복지원	고용보험지원·장려금 하나만 신청	동일기간내 고용창출사업 2개이상 중복지원 못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대상에 대해 지원시 지원제한					

4) 모성보호육아지원(1346-35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046억 6,800만원으로 2014년 6,982억 1,100만원 보다 1,064억 5,700만원(15.2%)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모성보호육아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13결산	'14계 획 (A)	'15계 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모성보호 육아지원	656,920	698,211	728,329	804,668	106,457	15.2

가)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필요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 고갈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계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의무적립금 규모를 해당연도 지출액의 1.5~2배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²⁾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추이를 보면 적립금 규모는 2015년 정부 계획안 기준 사업비의 0.8배 수준으로 법률상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표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17,979	17,508	21,145	22,454	25,412	26,063	28,628	29,937	29,786	35,738	43,709	49,220	57,832	62,893
지출 (A)	9,130	11,375	15,844	19,054	22,842	27,132	32,290	45,294	41,585	41,876	43,860	46,057	47,670	51,463
당기 수지	8,849	6,133	5,301	3,400	2,570	-1,069	-3,662	-15,357	-11,799	-6,138	-151	3,163	10,162	11,430
적립 금(B)	37,994	44,127	49,428	52,828	55,398	54,329	50,667	35,310	23,511	17,373	17,222	20,385	30,547	41,977
적립 배율 (B/A)	4.2	3.9	3.1	2.8	2.4	2.0	1.6	0.8	0.6	0.4	0.4	0.4	0.6	0.8

주: 2014년은 계획액, 2015년은 정부 계획안 기준임

102)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填)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전출금) 규모를 전년 대비 350억원 증액된 700억원으로 편성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하나,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과 관련한 지출 비중이 2009년 7.0%(3,182억원)에서 2015년 15.6%(8,047억원)로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임.

< 표 > 연도별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규모

(단위: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안)
100	100	100	100	100	150	250	350	700

더구나 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향(통상임금의 40%→60%) ③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등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행 추세라면 장래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봄.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성과저조 예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60%)을 지급함.¹⁰³⁾

201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65억 7,800만원으로 2014년 33억 6,600만원 보다 32억 1,200만원(95.4%)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
			요구	조정(B)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1,567	3,366	7,953	6,578	3,212	95.4

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연속성 및 경력개발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획액 21억 900만원 중 5억 4,200만원이 자체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2014년 8월 기준 집행실적도 당초 계획액 33억 6,600만원의 42.1%인 14억 1,8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14. 8월말 기준)

연 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 획 액	계 획 변경	계 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년	3,937	-	3,937	18	-	3,919
2012년	7,874	△6,168	1,706	733	-	973
2013년	2,109	△542	1,567	1,567	-	0
2014년	3,366	-	3,366	1,418	-	-
2015년(안)	6,578	-	-	-	-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지만 금년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향(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통상임금의 60%, 150만원 한도)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함.

그러나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¹⁰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91.6%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없다고 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 사업체는 8.4%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②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③ 단축 근로하는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104)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 자료(2013)

5) 임금피크제 지원(1347-351)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60세 정년제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년 친화적 임금·직무제도를 정착(60세+장년서포터즈 등)하기 위한 것임.

< 표 >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구 분		2014년	2015년	비 고
임금 피크 제 지원 금	정년 연장형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감액 시 근로자 지원	좌동	계속
	재 고 용 형	▪ 정년 도래자 재고용하면서 임금 감액 시 근로자 지원	좌동	계속
	근로시간 단축형	-	▪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 단축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신규
	정년 보장형	-	-	폐지('11년) 소급분 지급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지원사업		-	▪ 사업장의 직무·직급 등 인사 관리체계 개편 등에 재정 지원	신규
60세+ 정년 서포터즈		-	▪ 전문가그룹·업종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임금체계개편 우수모델 개발 및 토론회·홍보 등 모델 확산 활동 비용 지원	신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90억 6,600만원보다 39억 3,300만원(13.5%)이 증액된 329억 9,900만원이 편성됨.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신규), 60세+장년서포터즈(신규)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사업과 60세+장년서포터즈 사업은 2015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 표 > 임금피크제 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14계 획 (A)	'15계 획 안		증 감 (B-A)	%
		요 구	조 정(B)		
□ 임금피크제 지원	29,066	33,700	32,999	3,933	13.5
○정년연장형	27,007 (6,820명×33만원×12월)	26,413 (6,670명×33만원×12월)	26,413 (6,670명×33만원×12월)	△594	△2.2
○재고용형	1,346 (340명×33만원×12월)	2,693 (680명×33만원×12월)	2,693 (680명×33만원×12월)	1,347	100.0
○근로시간단축형	-	1,188 (300명×33만원×12월)	1,188 (300명×33만원×12월)	1,188	순증
○정년보장형	713 (180명×33만원×12월)	705 (178명×33만원×12월)	705 (178명×33만원×12월)	△8	△1.1
○장년친화적 직장만들기	-	1,500 (50개소×3천만원)	1,500 (50개소×3천만원)	1,500	순증
○60세+장년 서포터즈	-	1,200 (4개컨소사업×3억)	500 (2개컨소사업×2.5억)	500	순증

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 사업성과 저조 예상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연장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정년보장형이 있음.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5년 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90억 6,600만원보다 19억 3,300만원(16.7%) 증액된 309억 9,900만원이 편성됨.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정년제가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증액됨.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3년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 114억 4,800만원 중 99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이 87.2%로 저조하고, 2013년 대비 대폭 증액된 2014년 8월 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집행액도 계획액 290억 6,600만원의 35.7%인 103억 7,9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표 >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계 획 액 (A)	전 년 도 이 월 액	전 용	기 타	계 획 현 액 (B)	집 행 액 (C)	집 행 률 (C/A)	집 행 률 (C/B)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2010	9,496	0	0	△600	8,896	7,861	82.8	88.4	0	1,035
2011	12,450	0	0	0	12,450	8,624	69.3	69.3	0	3,826
2012	10,296	0	0	0	10,296	9,763	94.8	94.8	0	533
2013	11,448	0	0	0	11,448	9,985	87.2	87.2	0	1,463
2014	29,066	0	0	0	29,066	10,379	35.7	35.7	-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증 23.8%), 하반기에 주요도시 순회 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집중 개최할 예정이므로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5년에도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집행실적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바, 2015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나)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집행저조 예상

임금피크제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

2015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자는 300명으로 계획하여 11억 8,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달리 해당 근로자 외에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였고, 금년 10월 현재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함.

그러나 2015년에 신규로 반영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국회에서 2014년 예산안 심사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획액 1억 1,800만원 전액 감액되었음에도 2015년에 사업내용을 재설계 하여 다시 편성된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부터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지만 2013년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음.

< 표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년 도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목 표		집 행	
	인 원	계 획액	인 원	집행액
2011	126	265	0	0
2012	91	191	0	0
2013	130	257	0	0
2014	-	-	-	-
2015(안)	300	1,188		

※ 2014년 예산안 심사 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14년 계획액 1억 1,800만원 전액 감액됨.

또한, 근로자의 경우 50세-60세 연령층은 자녀의 대학교육 및 결혼 등으로 지출수요가 커서 소득감소가 수반되는 근로시간단축형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아울러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노무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직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기업이 많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업무를 새로이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단축형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2015년 계획안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표 >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및 지원내용(2015년)

구 분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지 원 요 건	감액 시점	• 55세 이후	• 정년퇴직 이후	• 55세 이후 (정년연장형과 연계) • 정년이후 (재고용형과 연계)
	임금 감액률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이상 (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기본 조건	• 18개월 이상 근무		
		• 56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 정년 55세 이상 • 정년퇴직 후 재고용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지 원 내 용	지급 수준	• 피크임금 대비 1년차는 90%, 2년차는 85%, 3~5년차는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80%(300인 미만 사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최대 지급 기간	• 5년	• 5년	• 5년
	최대 지원 금액	•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840만원 • 56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은 1인당 연간 720만원	• 1인당 연간 600만원	• 1인당 연간 500만원

6) 중장년층 취업지원(1347-352)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238억 3,300만원보다 100억 4,500만원(42.1%) 증액된 338억 7,800만원이 편성됨.

< 표 > 중장년층 취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중장년층 취업지원	23,833	33,878	10,045	42.1
- 고령자취업지원	4,125	4,250	125	3.0
- 중장년 전직지원	19,458	29,388	9,930	51.0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4,958	17,638	2,680	17.9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4,500	8,700	4,200	93.3
▪ 전직지원금	-	2,000	2,000	신규
▪ 생애설계서비스	-	1,000	1,000	신규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100	100	-	-
- 장년고용연구지원	150	190	40	26.7

이 사업은 고령자취업지원, 중장년 전직지원,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장년고용연구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중장년 전직지원사업이 대폭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증설(28개→33개),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지원대상 확대(1,000명→2,000명) 및 전직지원금과 생애설계서비스 지원이 신규로 각각 20억원, 10억원 반영되었음.

< 표 >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취약계층(저학력·저숙련 고령자) 의 취업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좌동 (프로그램 87개→112개, 25개 증)	계속
중장년 전직 지원	중장년일자 리희망센 터	40세이상 중장년의 재취업 및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좌동 (28개소→33개소, 5개 증설)	계속
	중장년취 업아카데 미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 및 인생2 막 준비를 위한 경력재설계 및 채 용 연계형 직업훈련지원	좌동 (1,000명 → 2,000명, 1,000명 증)	계속
	전직지 원금	-	퇴직예정자(정년 등), 5년내 정년도래 자 등 대상으로 사업주가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시 비용 지원	신규
	생애설계 서비스	-	장년층 진입시점에서 제2인생설 계 등 종합정보 제공, 희망자에 대해 생애설계서비스 제공	신규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장년취업담당자 역량과전문성 강화 를 위한 직무교육	좌동	계속
장년고용연구지원 사업		인구고령화 및 베이비붐세대 관련 연구 성과물 분석 및 종합연구 수 행	좌동	계속

가) 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 불확실

2015년에 신규로 반영된 전직지원금 사업은 퇴직예정자(정년 등), 5년
내 정년도래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으로 근로자에게 전직서비스
제공시 해당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함.

고용노동부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및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표 > 중장년 전직지원사업 개요

구 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전직지원금
사업시작 연도	2006년	2014년	신규
2015 예산안	176억원	87억원	20억원
재정지원 내용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위탁기관)의 인건비 등을 1개소당 3억~10억원 지원 2015년 33개소 서비스 지원 인원(2013년) 85,100명	민간운영기관에 1인당 컨설팅 및 훈련비 420만원 지원 2015년 2,000명 지원	1인당 100만원 한도, 2,000명 지원
사업목적	중장년의 재취업 · 창업 지원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	근로자의 전직을 돕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촉진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만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구조조정, 정년 등에 따른 퇴직예정자, 5년내 정년 도래자 등
주요 서비스	재취업알선, 취업 및 창업교육, 대기업 퇴직인력 DB구축,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무료 잡매칭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업단위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지원 컨설팅 제공	생애재설계 컨설팅, 기본역량강화교육, 기업맞춤형 훈련(채용약정), 취업지원	사업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전직서비스 제공시 해당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운영기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지역경총 등)	중장년 취업지원센터(노사발전재단), 대학 등	기업 자체 수행 또는 전직지원 전문기관 위탁

기존 전직지원사업은 전직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무료로 전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나, 신규 편성된 전직지원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과거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적용조건이 까

다로워 활용실적이 높지 않았고,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중장년층전직지원사업(민간전직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폐지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됨.

또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이유로 퇴직 휴가, 공로연수 등 소극적인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점¹⁰⁵⁾,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지원금 사업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보임.

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법적근거 마련 필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40세이상 중장년층의 취업 상담 및 알선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확대할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201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 이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퇴직 이후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현재 28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는 전직지원 수요 지원 부족을 이유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개소를 증설하여 33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105) 「고령자 고용인식 조사」(송창용, 2012.5 174p)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표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산출내역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17,638백만원 > - 인건비: 7,623백만원 = 33백만원 × 7명 × 33개소 - 사업비: 5,478백만원 = 166백만원 × 33개소 - 운영비: 4,587백만원 = 139백만원 × 33개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정 및 지정취소, 고용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관련 조항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¹⁰⁶⁾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적근거로 제시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견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 규칙에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는 일정 직위 이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점¹⁰⁷⁾을 감안하면 40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전체를

106)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의 법적근거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지정,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7) 시행규칙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가. 산재보험사업(4000 프로그램)

2015년도 산재보험사업 지출계획안은 4조 2,652억 6,6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1,800억 9,2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산재보험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계획		2015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당초	수정(A)			
합 계	4,085,174	4,085,174	4,265,266	180,092	4.4
○ 산재 보험급여	3,930,488	3,930,488	4,084,450	153,962	3.9
○ 산재 근로자 합병증등 예방관리	44,120	44,120	44,120	0	0.0
○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1,323	1,323	1,257	-66	-5.0
○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지원	1,874	1,874	2,653	779	41.6
○ 사회심리재활지원	2,836	2,836	2,694	-142	-5.0
○ 산재 근로자 복지사업지원	5,888	5,888	5,594	-294	-5.0
○ 케어센터지원	2,760	2,760	2,960	200	7.2
○ 맞춤형서비스지원	3,816	3,816	7,132	3,316	86.9
○ 산재 보험급여 관리	1,039	1,039	987	-52	-5.0
○ 산재 의료기관평가	407	407	387	-20	-4.9
○ 재해 조사역량강화	0	0	913	913	순증
○ 산재 병원지원	12,233	12,233	11,233	-1,000	-8.2
○ 산재 병원 시설장비지원	6,472	6,472	21,101	14,629	226.0

구 분	2014 계획		2015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당초	수정(A)			
○ 연구기관지원	8,506	8,506	7,158	-1,348	-15.8
○ 산재보험시설 건립	4,078	4,078	14,438	10,360	254.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16,448	16,448	15,093	-1,355	-8.2
○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5,038	15,038	15,190	152	1.0
○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2,154	2,154	2,154	0	0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운영	0	0	4,199	4,199	순증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2,083	22,083	21,553	-530	-2.4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3,611	3,611	0	-3,611	-100.0

산재보험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산재보험급여 1,539억 6,200만원(3.9%)
- 산재병원 시설장비지원 146억 2,900만원(226%)
- 산재보험 시설건립 103억 6,000만원(254%) 증액됨.

산재보험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융자) 36억 1,100만원(△100%, 전액삭감)
-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13억 5,500만원(△8.2%)
- 산재병원지원 10억원(수지 개선)(△8.2%) 감액됨.

1) 산재보험급여관리(4053-351)

가)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산재보험급여관리사업은 산재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을 통한 산재보험급여 누수 방지로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 시작되어 점차 업무전문성이 강화되고 매년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등 상당한 업무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임.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보다 5,200만원 감액된 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사업은 대체로 동결되었고 다만 신고포상금 부분이 5,200만원(17.3%) 감액되었음.

< 표 > 2015년도 산재보험급여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산재보험급여관리	986	1,039	987	-52	-5.0

< 표 > 연도별 조사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접수			진행	종결			적발금액		
	계	이월	신규		계	적발	내부종결	계	징수결정액	예방금액
'10	319	103	216	155	164	94	70	11,573	3,449	8,124
'11	495	155	340	224	271	175	96	25,562	8,937	16,625
'12	579	224	355	256	323	200	123	29,356	10,469	18,887
'13	3,024	256	2,768	243	2,781	907*	1,874	40,634	13,499	27,135
'14. 8	602	243	359	313	289	146	143	29,145	10,574	18,571

* '13년 상시 점검(요양 중 취업) 2,252건(적발 674건, 내부종결 1,578건, 1,108백만원) 포함

나) 산재보험급여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산재보험급여관리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관련 범죄를 방지하고 산재보험 누수와 탈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특히 매년 국정감사¹⁰⁸⁾에서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율 제고”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임.

108) 201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의원은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이기권장관은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산재보험급여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센터 설치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

< 표 > 산재보험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¹⁰⁹⁾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허위·부정		신고의무불이행		착오청구		단순업무착오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년	932	15,103	897	12,788	104	1,624	1,905	29,010	3,838	58,525
‘13년	1,621	5,686	1,559	5,729	184	850	2,884	10,560	6,248	22,825
‘14년 7월	322	10,275	48	640	680	1,422	574	2,692	1,624	15,029
총계	2,875	31,064	2,504	19,157	968	3,896	5,363	42,262	11,710	96,379

※ 각 해당연도별 부당이득 징수결정한 건수 및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2년 건수 및 금액 급증은 2012년 3월 최고보상기준위헌결정 관련 부당이득 징수결정(747건, 360억원) 포함

급여관리사업의 강화는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자체적인 제도개편을 하였음. i) 전담부서인 보험조사부를 확대 개편 운영하고, ii) 보험급여별 취약분야 위험지표(40종)를 적용하여 체계화한 ‘부정수급조사업무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iii) 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및 인터넷)를 설치 운영하고¹¹⁰⁾ iv) 부정수급 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하며(연1회=>연2회) v)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 운영하여 데이터 및 통계기법을 활성화하고 있음¹¹¹⁾.

109) 신규 발생액 기준

110) 현재의 인터넷 신고방식도 다소 개선이 필요함. 첫째, 실명 신고 외에 익명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야 하는 현 시스템 외에 독립된 신고채널(링크 또는 계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재사항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부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동 사업 업무수행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내실을 키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조직확대 및 인력확충의 필요성임. 2015년도에 동 사업 업무담당자는 1부 22명(3명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가는 제보건수와 적발건수 등을 고려할 때 증원된 인력이 수요에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함. 특히 근로복지공단 본부 외에도 광역단위의 지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사건이 몰리는 수도권은 별도 조직의 설치 또한 요망됨¹¹²⁾.

둘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보험브로커조직 등과 연루되는 등 부정수급이 첨단화·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뿐만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① 산재보험범죄 아카데미 교육 ② 산재보험 보험범죄 방지 연구회 ③ 이외에 초빙 전문교육, 워크숍, 의학전문교육, 자체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임. 그러나, 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는 교육, 워크숍, 연구 등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충실히 전담하면서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111)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당이득금 회수의 효율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본부(6개소) 송무부에서 이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112) 최근 3년간 조사한 신고사건, 기획사건 1,014건 중 65%인 663건인 서울, 경인, 대전지역에 집중됨.

사내에서 업무담당자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¹¹³⁾ 각 회사 등에서도 전문성 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함¹¹⁴⁾. 특히 보험조사 직원의 교체·이동이 있는 경우 업무 전에 충분한 직무훈련(OJT)을 받도록 하거나 선임·후임간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험조사의 방식이 사후 적발 및 추징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회수율 제고”가 지적되어 왔으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보험(고용보험 등)에 비해 그 액수가 크고 수급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는 급여 또한 관리되어야 마땅함¹¹⁵⁾. 만약 사전방지에 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회수율을 상당히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즉,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예방의 관점에서 동사업의 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향후 사전방지 및 사후회수의 각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배·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넷째, 보험조사(적발) 외에 징수(회수)나 연구·홍보·정책개발을 전

113) 비교례로서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라든가 “잡코디네이터 양성프로그램” 등을 참조할 수 있음.

114) 이 외에, 정기적인 인사주기(2~3년)보다는 다소의 기간을 더 늘려 해당보직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더 쌓을 시간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고, 일시에 상당수의 담당자가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115) 현재 근로복지공단(보험조사부 및 보상부)에서 행하고 있는 사후 적발 및 추징 업무가 아니라, 사전에 보험사고(부정수급)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체계(System)의 마련이 필요함.

담할 수 있는 부서의 별도 설치가 요구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현재 보험급여관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사(적발)와 징수(회수) 업무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원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¹¹⁶⁾, 이외에 연구,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을 할 수 있는 세사업도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¹¹⁷⁾. 따라서 보험조사의 업무 외에 징수(회수)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거나 조사¹¹⁸⁾·연구·개발·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¹¹⁹⁾.

2) 재해 조사 역량강화(4053-353, 신규)

가)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재해조사 역량강화 사업은 공단 재해조사에 대한 조사·판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재해조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재해조사장비 지원 및 선진 외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는 것임. 재해조사는 재해근로자의 보상을 행하기 위한 전제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업무로서 그 활동강화는 중요성을 가지므로, 동 사업을 통해

116) 공단본부의 보상부에서 이러한 회수업무를 담당하므로, 적발과 회수가 이원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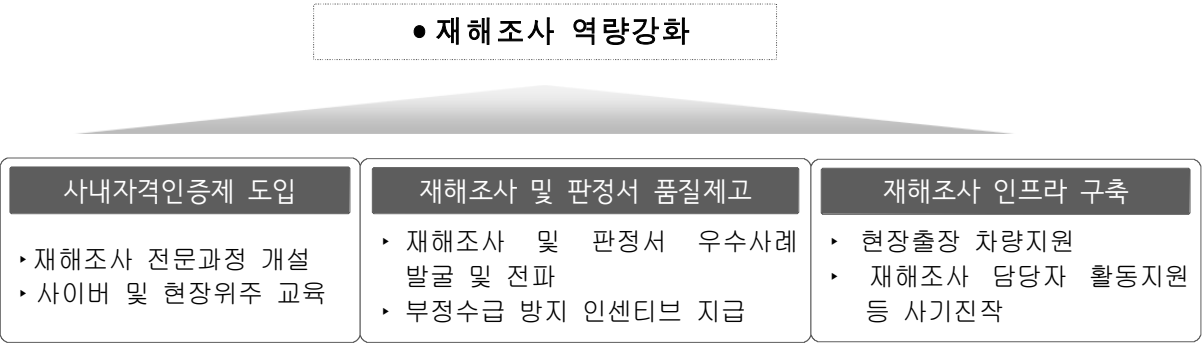
117) 이처럼 보험조사부의 역할과 활동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권한은 여전히 조사, 적발 등에 머물러 있으므로, 적극적인 환수조치나 연구·홍보·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118) 개별적인 사건 조사가 아닌 실태조사, 유형분석 등을 의미함.

119)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보험조사팀(임시조직)”에서 “부정수급조사부(정규조직)”으로 확대하였을 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한 바도 없었고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등의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0여명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 표 > 재해 조사 역량강화 사업의 체계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신규로 9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 2015년도 재해 조사 역량강화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재해조사 역량강화	-	-	1,243	913	913	순증

< 표 > 2015년도 재해조사 역량강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조정(B)	
□ 재해조사 역량강화	-	1,243	913	913
○ 재해조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사내자격인증제 도입)	-	126	126	126
○ 재해조사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지원	-	103	103	103
○ 재해조사 지원 인프라 구축	-	864	684	684
○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향 연구	-	150	0	0

나) 재해조사 역량의 강화 필요성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에 대한 조사·판정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도개선 지적이 있었고¹²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12. 6. 19)¹²¹⁾도 있었음. 특히 지난 여러 차례 국회 환경노동위원

120) 2011년 11월 1일 및 2012년 7월 13일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지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음(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나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입증하고 공단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음).

121)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
|--|

회 국정감사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반도체공장 근로자 산재승인 요건 완화¹²²⁾,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공정성 제고, 직업성 암·만성과로·근골격계질병·뇌심혈관계질병 등 신종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확대, 감정노동·야간노동·성희롱 등 관련 산재인정 대책마련 등이 수시로 지적되었음[참고자료 8 :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2012.5.17.)].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재미보고(산재은폐)의 근절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2014년 5월 26일 자)’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여, “산재미보고 사업주 신고 유인제 도입, 사업주보고 의원 위반시 과태료부과금 인상, 미보고신고접수창구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참고자료 9 :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2014.5.26.)].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인권위 권고에는 수용을 유보하였으나, 재해조사 담당자(질병판정위원회 포함)의 역량·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위 지적사항들을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확대하여¹²³⁾ 발암물질 14종 등 유해인자 35종을 추가하고 직업성 암 12종을 추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 개정과 재해조사시트를 개선한 바도 있음.

12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요청이 거듭된 바임.

123)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13.7.1 시행) 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 인정의 확대,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해 조사업무는 특별한 인적·물적 투자가 부족했고 재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나 일련성¹²⁴⁾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¹²⁵⁾. 따라서 산재보험의 인정확대 및 전문성강화 등 제도개편에 발맞추어 인적·물적 체계(System)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재해조사역량강화 사업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조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에 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다) 사전 준비 철저 및 세사업 확대 필요성

동 사업은 세사업으로 ① 재해조사전문교육과정 개설(사내자격인증제) ② 재해조사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지원¹²⁶⁾ ③ 재해조사지원 인프라 구축 ④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를 계획함¹²⁷⁾.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그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124)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서도 그 업무의 연계성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업무의 인계인수를 넘어서 직무내교육(OJT), 직무외교육(Off-JT) 등을 필요로 함.

125) 이외에도 재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하여 단편적인 교육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업무수행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재해조사업무가 단순하고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현상이 고착화된 바도 있음.

126)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해조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정성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2014.10.

127) 다만 선진외국사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1억 5,000만원)는 삭감조정되었음.

첫째, 사업의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임. 동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각 세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획이 불명확함. 특히 ① 사내자격인증제¹²⁸⁾가 전문성강화에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② 우수사례 발굴·지원이 단순한 포상이나 발간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사례축적(DB구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또한 ③ 인프라구축의 경우 준비 소홀로 이미 요구액(8억 6,400만원)보다 2억 원 상당이 감액되었으므로 정확한 용처나 지출계획을 준비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 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참고자료 12:사내자격인증과 관련한 타 기관 사례]

128) 그 운용방식도 준비가 필요함. 단순히 잡코디네이터 등의 전례를 답습할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활발하게 운용 중인 건강보험정보분석사(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정보시스템분석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후설계컨설턴트(국민연금공단) 등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표 > 재해조사 역량강화 기대효과(그림)



둘째, 당초 계획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선진외국사
례조사 및 국제동향연구’와 관련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의 경우 산업재해보험이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독일의 예를 보면 직업병(질
병)의 결정·판정을 의사, 실무담당자, 평가자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일본의 경우에도 재해의 조사·인정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세사업은 단

순히 출장이나 자료수집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선진기법과 우수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외국사례조사나 국제동향연구라는 세사업을 더욱 폭넓게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례들¹²⁹⁾을 수시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향후 동세사업이 추진된다면 관례적인 해외시찰, 무차별적인 외부연구용역보다는, 업무담당자(실무진)가 직접 참여한 조사결과보고서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한 현안발굴조사서 등이 대거 축적될 수 있도록 연구·조사사업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3)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4058-350)

가) 지출계획안 편성내역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¹³⁰⁾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징수(고지·수납·채납관리 등)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임.

129) 반도체 공장 직업병사례, 분진작업장 문제, 건설근로자 산재사망률 관련 문제, 서비스근로자 정신질환 문제 등 폭넓은 사례군이 있음.

130) 2008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이 출범하였고 그 후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의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음.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51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150억 3,800만원에 비해 1억 5,200만원 증액되었음.

< 표 > 2015년도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	14,947	15,038	16,653	15,190	152	1.0

< 표 > 계획안 산출근거 상세

◆ **통합징수비용 분담비율**

-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분담비율(59.5% : 28% : 12.5%)

※ '11년 확정된 전환인력비율로 적용

(건강보험 : 1,512명, 연금공단 : 712명, 근로복지공단 : 317명)

▶ 인건비 : 각 공단 전환인력 실제 인건비(분담비율)를 기준으로 산출

▶ 사업비 : 각 공단 전환인력 수(분담비율)를 기준으로 산출

※ 고객상담원현황(90명) : 건보 35명, 연금 41명, 근로 14명

▶ 경상경비 : 각 공단 전환인력 수(분담비율) 기준으로 산출

◆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분담비율**

- 산재보험 : 6.6%, 고용보험 : 5.9%

< 표 > 지난 4년간 집행실적내역

(단위 : 백만원, %)

년도	계 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계 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0	시행 전								
2011	13,786	-	-	-	13,786	13,786	100	100	-
2012	13,786	-	-	689	14,475	14,475	100	100	-
2013	14,732	-	-	344	15,076	14,947	99.2	99.2	129

동사업은 ①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② 대국민 중심의 친화적 징수 및 수납 제도를 운영하며, ③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 및 경쟁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임¹³¹⁾.

나) 징수율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망

산재보험은 4대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며 고도의 공익 기금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함. 그동안 급여관리에 있어 그 지출 쪽에 부정수급방지 등이 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수입에 있어서도 누락, 탈루, 결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게 된 이유는 ① 일괄수납 등으로 인한 국민편의성 확대, ② 징수전문성을 가진

¹³¹⁾ 수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탁받은 징수업무에 있어서, 나날이 국민편의성과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여 업무효율성 담보, ③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한 일괄사업체계 구축으로 인한 경비절감, ④ 새로운 징수체계의 개발·구축으로 인한 안정적 수입확보 등으로 파악됨.

그런데 사업시행 이후 산재보험의 징수율은 다소 악화되는 상태에 직면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표 >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율(수납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수납률 (c=b/a)	납기미도래액(d)	조정수납률 (e=b/(a-d))
'10	51,757	47,053	1,057	90.9		
'11	56,967	48,728	62	85.5	2,934	90.2
'12	65,897	55,851	78	84.8	3,167	89.0
'13	66,752	55,105	306	82.6	3,178	86.7
'14.8월	55,661	43,472	162	76.3	3,633	81.6

* 조정수납률: '11년 부과고지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월분 보험료는 징수결정만 되고 수납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기미도래액을 징수결정액에서 제외하고 산정 ※ 보험료: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포함

이처럼 징수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기준 변경¹³²⁾ 결손처분액 감소¹³³⁾”를 들고 있음.

132) 이에 대한 추가설명은 다음과 같음.

'10년과 '11년 산재보험료는 90.9%에서 85.5%로 큰 폭으로 하락하나, 11년 4대 보험징수통합에 따른 징수기준 변경(자진납부, 년납→부과고지, 월납)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되어, '11년 12월말 보험료는 징수결정만 되고 수납이 되지 않아 수납률이 저조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수결정액에서 납기미도래액을 제외하고 수납액을 비교한 조정수납률은 90.2%임.

133) 이에 대한 추가설명은 다음과 같음.

'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위탁 업무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징수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파악이 미흡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10년 대비 '11년 결손처분액이 94% 감소)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징수율 하락을 초래. * 결손처분액은 1,057억원('10년)→62억('11년)→78억('12년)→306억원

201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첫째, 징수율의 안정적 상향조정이 필요함. 현재 산재보험 징수율은 90%상당을 상회하다가 최근 80%상당으로 하향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정일과 납기일에 시차가 발생하고 월별 징수보고 등이 특정일(매월 말일)에 고정되어 있어 약간의 통계차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점차 결손액이 누적되면서 회수율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미납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앞으로 징수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¹³⁴⁾.

둘째, 징수 위탁업무의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성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금(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등) 부분은 매년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특정 사업을 위해 출연한 목적출연금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134)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율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체납보험료 징수율 제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사업장 관리 강화로 징수실적 제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 기간별·업종별·유형별 타깃 징수추진, 체납요양기관의 진료비 압류강화○ 간접징수를 통한 효율적 징수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자료 금융기관 제공 및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확대 등 간접적인 체납사업주 불이익을 통한 징수촉진○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체납사업장 재산정보 확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조달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활용, 체납사업장 재산 확보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2) 결손처분 적극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처분 대상 사업장 적극 발굴 및 결손처분 추진 |
|---|

그 결과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임. 이러한 성과는 ‘징수율’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고용노동부는 수탁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시의적절하게 제도개선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된 징수율 저조의 원인을 분석·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¹³⁵⁾.

135)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요금인상, 수납수수료의 증가 및 인건비 부족을 건의하여 점차 출연금이 커지고 있으나, 징수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단순히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거나 SMS, 이메일 등의 독촉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임.

나.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015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계획안은 4,373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1,086억 1,7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계획 (B)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합 계	328,713	437,330	108,617	33.0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1,400	81,500	-9,900	-10.8
○ 업종별재해예방	43,184	46,362	3,178	7.4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7,497	6,997	-500	-6.7
○ 유해작업환경개선	19,680	15,710	-3,970	-20.2
○ 근로자건강보호	14,887	17,587	2,700	18.1
○ 안전보건문화정착	24,949	30,338	2,589	21.6
○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8,400	10,337	1,937	23.1
○ 산재예방시설건립	500	2,871	2,371	474.2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건축	14,608	22,315	7,707	52.8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3,448	3,313	-135	-3.9
○ 산재예방시설용자	100,160	200,000	99,840	99.7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산재예방시설 용자 998억 4,000만원(99.7%)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건축 77억 700만원(52.8%)
- 업종별재해예방 31억 7,800만원(7.4%)

- 근로자건강보호 27억원(18.1%)
- 안전보건문화정착 25억 8,900만원(21.6%)
- 산재예방시설건립 23억 7,100만원(474.2%)
-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19억 3,700만원(23.1%) 증액됨.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9억원(△10.8%)
- 유해작업환경개선 39억 7,000만원(△20.2%)
- 안전인증및안전검사 5억원(△6.7%)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운영 1억 3,500만원(△3.9%) 감액됨.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¹³⁶⁾, 산업단지에 안전보건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등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또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표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보조(지원)대상	보조대상품 및 조건
제조·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안전설비개선,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10명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 10명 이상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50% 지원
건설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	건설현장당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시스템 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설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70%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보조대상품: 자료실 및 상담실,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시설, 기타 공동이용시설 -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소요금액의 50%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815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99억원 감소하였음.

136) "클린사업장"이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체제(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재해운동 등을 포함한다) 전부를 개선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함.

< 표 > 2015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91,400	81,500	-9,900	-10.9
○ 제조·서비스업	72,400	68,500	-3,900	-5.4
○ 건설업	7,000	10,000	3,000	42.9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10,000	1,000	-9,000	-90.0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2,000	2,000	0	0

가) 제조·서비스업 지출계획 감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685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9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일 사업장에 대한 평균 지원단가를 현실화(사업장당 8백만원→1천만원)하면서 사업물량을 축소했기 때문임.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고 산업재해 발생에 취약하여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점, 정부가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 지출계획안을 대폭 확대(2014년도 1,002억원→2015년도 2,000억원)한 점을 감안할 때, 지출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 사업장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재해자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	비중
2011	93,292	76,885	82.4
2012	92,256	75,151	81.5
2013	91,824	74,836	81.5

*자료 : e-나라지표

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출계획 감소

2015년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지출계획안은 10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1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동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내역사업임.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2013년 10월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공고’를 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차례 사업 설명과 홍보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2014년 9월 현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산업단지는 19개소에 불과하며, 심사 결과 지원이 결정된 금액은 48억 2,400만원으로 계획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표 > 2014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집행현황

(2014년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개소)

계획액	신청 산업단지	신청금액	지원결정금액	집행액
10,000	19	5,188	4,824	0

※ 최소 지원결정금액은 610만원, 최대 지원결정금액은 9억 2,600만원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은 것은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들이 안전보건교육시설 등 보조대상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산재예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사업 실시 2차년도가 되는 2015년의 경우도 안전보건공단이 전국의 산업단지를 모두 방문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한 결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산업단지가 4개소에 불과하여 내년에도 집행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만일 2015년에도 사업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다) 건설업 재해감소 효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필요

2015년도 고용노동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클린사업장 재해율 감소실적(%)’ 하나임. 즉, 클린지원사업장의 지원 후 재해율이 지원 전 재해율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2014년 목표치는 31.2%, 2015년도 목표치는 34.8%임.

2013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재기금을 투입한 결과 추락 등으로 인한 재해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적과 효과를 구체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향후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투입예산을 늘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음.

2)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통해 사고성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

< 표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개요

내역사업	사 업 내 용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제조업·서비스업 30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대상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 조선업 등 특수업종, 산재취약계층 대상 재해예방활동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제조업·서비스업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심사·확인 및 안전보건종합진단 실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10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컨설팅 실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공생협력프로그램 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463억 6,2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1억 7,800만원 증가하였음. 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규모가 23억 6,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안전보건공단 기간제근로자인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인원을 260명(2014년 16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업종별재해예방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 업종별 재해예방	43,184	46,362	3,178	7.4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8,877	11,237	2,360	26.6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25,287	25,287	0	0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2,472	2,560	88	3.6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6,548	7,278	730	11.1

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4년 현재 160명(이중 30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함)의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 중에 있고, 2015년에는 100명을 증원하여 모두 260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임.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

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했으며, 2015년에도 동일하게 연령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만 55세 이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일정 수준의 경륜과 실무경험이 지킴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킴이 지원자격을 만 55세 이상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정도로 낮추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나)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은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잠재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함¹³⁷⁾.

2015년도 안전보건진단 지출계획안은 5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3억

137)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3,3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안전보건공단이 행하는 명령진단 물량을 2015년에 150개소(전체 진단물량 1,500개소의 10% 수준으로 산출)로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안전보건진단 지출계획안 및 목표 사업장

구 분	2014계획(A)	2015계획안(B)	증감(B-A)
지출계획안(백만원)	167	500	333
목표 사업장(개소)	50	150	100

2015년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명령진단 사업장 수를 대폭 확대한 것은 민간 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관의 진단수준 및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

현재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2014년 9월말 현재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하여 모두 36개임.

안전보건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후속 개선조치가 제대로 수립될 수 없고,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수립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신뢰성과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진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이에 고위험 공정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위주로 안전보건공단¹³⁸⁾의 진단 물량을 늘리고, 민간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을 뿐, 실제 진단을 담당할 기관은 사업주가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진단업무를 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사업주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진단이 아니고 국가(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해야 할 경우 사업주는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보다는 민간기관에 진단업무를 의뢰할 개연성이 높음.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명령에 의한 전체 진단물량이 연도별로 기록은 있었지만 모두 1,105개소였는데, 이중 안전보건공단이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은 66개소에 불과했음.

138) 안전보건공단은 2015년 50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50개씩 진단 물량을 확대해 2018년에는 300개소에 대해 명령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 표 > 명령에 의한 안전보건진단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진단 사업장(A)	공단 진단 사업장(B)	B/A
2011	213	17	8.0
2012	98	1	1.0
2013	293	38	13.0
2014. 9	501	10	2.0
계	1,105	66	6.0
2015(계획)	1,500	150	10.0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가급적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진단을 수행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사업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공단을 진단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둘째, 고용노동부는 민간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간의 진단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임. 그러나 민간기관이 평가 또는 정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출입이나 검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등과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¹³⁹⁾.

139)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⑦ (생략)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

3) 유해작업환경 개선(4153-350)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표 >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개요

내역사업	사 업 내 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 직업병 예방 기술지도 ▪ 석면해체·제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실시 ▪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 대상 방문기술지도, 안전교육 이수관리 및 사고사례 전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50인 미만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통한 보건관리 기술지도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157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39억 7,0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2014년에 작업환경실태조사(예산액 45억원)가 완료되는 데 따른 것임.

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생 략)

< 표 > 2015년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 유해작업환경개선	19,680	15,710	-3,970	-20.2
○ 작업환경측정비용 및 특수 건강진단비용 지원	12,946	8,446	-4,500	-34.8
○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1,123	1,653	530	47.2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 술지도(위탁)	5,611	5,611	0	0

가)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 질식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

최근 질식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나 부상이 증가하고 있음. 2009년 질식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2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4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13명에서 23명으로 크게 증가했음.

< 표 > 질식재해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해건수	16	12	17	25	18
사망자	13	12	14	20	23
부상자	8	11	15	15	21

질식재해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위험등급에 따라 밀착기술지원, 안전교육이수제, 장비대여 등의 맞춤형 지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표 > 등급별 종합관리 체계

등급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질식재해 다발 사업장	질식재해 발생 사업장	잠재적 위험 보유사업장
	오페수 · 정화조 관리, 탱크 · 피트 청소	불활성가스 사용, 상하수도 공사, 분뇨수집 운반, 건설업	지자체, 호퍼 · 사일로 보유
밀착기술지원	○	-	-
안전교육이수제	○	-	-
교육 · 홍보	○	○	○
자료보급	○	○	○
장비대여	○	○	○
협업강화	○	○	○

특히,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수제를 도입해서 화학공장 및 제철소가 많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문 보수업체나 청소업체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임.

현재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문업체 중에는 영세한 사업체가 많고, 작업의 신속한 수행,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사용 등의 이유로 특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육 미이수자 사용을 적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도급이나 용역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급인(원청)이나 발주기관이 작업 근로자가 특별교육을 받았는지, 안전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에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등 도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안전보건문화 정착(4154-350)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표 >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 사업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 예방활동기법 교육 ▪ 안전보건자료 및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법정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실무 위주 교육
안전문화사업	▪ 사회저변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산재예방 홍보
민간기관 재해예방활동 지원	▪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직능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안전보건활동 유도 및 소요비용 지원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303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53억 8,900만원(21.6%) 증가하였음. 내역사업 중 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지출계획이 52억 3,000만원(44.2%) 증가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업·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데 따른 것임.

< 표 > 2015년도 안전보건문화정착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 안전보건문화 정착	24,949	30,338	5,389	21.6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11,829	17,059	5,230	44.2
○ 전문교육과정 운영	3,047	3,206	159	5.2
○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7,073	7,073	0	0
○ 민간재해예방활동 지원	3,000	3,000	0	0

가)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이르면 2015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임. 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주는 직원을 안전보건지원자로 지정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표 >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목 적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대 상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30인~49인:2015.7.1., 20인~29인:2017.7.1, 10인~19인: 2019.7.1.
방 법	▪ 현장 직원 중에서 선임하되, 겸직 및 전문기관 위탁도 허용
교 육	▪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지정 후 2년마다)
직 무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 건강관리 등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지원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목표 교육인원은 20,000명임¹⁴⁰⁾.

정부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지원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나, 2015년 목표인원 20,000명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지원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지원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을 정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2015년 하반기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140)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보건지원자 선임대상 사업장 33,000개소의 60%를 기준으로 산출함.

그러나 2014년 10월 27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개정법률안 심사 및 시행령 작업 과정,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 안전보건지원자 지정제도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법정 의무가 되지 않는 한 실제 사업주들이 교육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교육이수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과거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교육 이수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서 발급)했으나, 실제 교육인원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바 있음.

< 표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실적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제 조업	실적	3,597명	3,055명	3,401명	6,652명
	목표	5,000명	20,000명	20,000명	45,000명
서비스업	실적	6,022명	8,663명	1,779명	14,685명
	목표	4,500명	8,500명	8,500명	21,500명

그리고, 실제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에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를 받았거나,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보건지원자 양성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어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표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개요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 제조업·서비스업 10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 16시간(서비스업은 8시간), 이론과 실습 각각 50%
교육기관	▪ 민간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일부 실시
교육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개요,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 사례 및 실습 등 실무역량 배양과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등
교육실적	▪ 2014. 9월까지 28,648명 이수

나)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 지원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012년 6월 1일 1천억원 이상 공사부터 우선 실시되어 현재는 3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1일부터 3억원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됨.

< 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 내용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	
교육시간		4시간
등록 교육기관 현황		(사)한국건설안전협회 등 89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 1명당 3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교육비용 부담을 꺼려 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면서 근로자들이 교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숙자(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014년 비용지원 목표는 25,000명으로 9월말 현재 약 18,000명에게 비용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목표인원은 17만 5,000명임.

< 표 > 2015년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4 계획		2015 계획안		증 감	
	목표인원	지출	목표인원	지출	목표인원	지출
건설업	25,000	1,460	175,000	6,160	150,000	4,700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나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활동기간: 2012. 3월 ~ 2013. 2월)에서도 “노사정은 건설근로자의 이동성을 감안하여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초산업안전보건요소에 대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다만, 현재와 같이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교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데 교육의 대상인 근로자가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가려 선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사각지대)가 남아있는 한 사업주가 교육 미이수자 채용을 기피하여 근로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사업주가 영세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일 건설현장의 규모(공사금액)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 비용지원이 어렵다면 취약계층 여부를 묻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그리고, 현재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청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 교육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 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론과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고, 안전보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음.

실무적으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산재기금에서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데¹⁴¹⁾, 2015년도 중소기업 안전

1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

보건전문인력 양성 지출계획안은 3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9,000만원(37.5%) 증가하였음.

현재 경기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등 4개 대학교에 계약학과가 설치되어 2014년도 2학기부터 모두 44명의 근로자가 5학기 석사학위과정(야간 또는 주말과정)을 밟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에게 학기당 3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참여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 표 > 계약학과 모집인원 및 재학인원

(단위 : 명, 원)

구 분	경기대	부산 가톨릭대	한국기술 교육대	동국대	계
소재지	경기 수원	부산	충남 천안	경북 경주	-
모집인원	12	12	14	12	60
재학인원	11	12	10	10	43
교육비용 부담	기업:681,000 학생:680,000	기업:182,500 학생:182,500	기업:350,000 학생:350,000	기업:495,500 학생:495,500	

* 한국기술교육대 학생 중 2명은 기업이 70만원 전액을 부담

2015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현재 재학 중인 44명의 근로자에게 학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인데, 중소기업 안전보건전문인력 양성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생략)

첫째, 교육을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임.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학사학위가 없는 근로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데, 굳이 5학기 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반드시 학위 과정은 아니더라도 보다 짧은 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임.

둘째, 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임. 4개 대학 재학생 43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1명(25.6%)이며, 이 가운데는 1천명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2명 포함되어 있음.

< 표 > 소속 사업장 규모별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명 이상
인원	21	11	3	6	2
비중	48.8	25.6	7.0	14.0	4.7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를 모집정원 중 60% 이상 우선 모집하고 나머지를 중견기업 순으로 모집해야 함에도, 부산가톨릭대의 경우 500명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명(이중 3명은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정원의 40%를 초과하고 있음.

사업 실시 첫 해인 관계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산업재해가 취약하고 재정 여건이 어

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현재 참여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학기당 330만원)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통상 참여기업과 학생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소규모 참여기업일수록 보다 더 많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¹⁴²⁾.

넷째, 현재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4개 대학이 각각 경기, 경북, 부산광역시 및 충남에 소재하고 있어, 강원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 근로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¹⁴³⁾. 해당 지역 대학들이 계약학과 운영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향후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지역에도 주관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섯째, 학생모집 공고 등 일정에 관한 문제임. 현재 학생모집은 주관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광고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포함)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할 것임.

그리고, 부산가톨릭대의 경우 2014년 8월 7일에 학생모집 공고를 내

142) 2014년 6월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모집할 때에는 중소기업에는 공단 지원금을 전체 교육비용의 70% 이내로, 중견기업에는 50% 이내로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여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동일하게 공단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음.

143) 기업 및 근로자가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은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 단위)내에 있거나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함.

고, 원서접수는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만 실시하였는데,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너무 짧은 시간을 둘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향후 신입생 모집을 실시할 경우 공고에서 접수마감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주관대학의 학생 모집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5) 산재예방시설용자(4158-450)

‘산재예방시설 용자’ 사업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표 > 산재예방시설용자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사업장당 5억원
대출금리	연리 3%(고정금리)
상환조건	3년거치 7년상환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용자 지출계획안은 2,000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대비 두 배 가까이(998억 4,0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산재예방시설용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증감률
산재예방시설 용자	100,160	200,000	99,840	99.7

2015년 용자계획을 약 두배로 늘린 것은 사업물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지만(사업장당 1억원 기준 2,000개소), 증가규모가 너무 커서 2,000억원을 모두 지출(집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임.

2014년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매우 양호하기는 하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예방시설용자 계획은 줄곧 1,000억원 미만이었고, 2012년 외에는 불용액도 상당 규모 발생하였음.

< 표 > 최근 산재예방시설 용자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용자한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08	500	95,750	89,139	93.1	6,611
2009	500	86,163	79,646	92.4	6,517
2010	300	83,034	76,188	91.8	6,846
2011	300	98,963	93,811	94.8	5,152
2012	300	89,067	89,066	100.0	1
2013	300	90,160	86,322	95.8	3,828
2014. 9월	500	100,160	97,888	97.7	-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기업과 국가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종래 사업장당 3억원이던 용자한도를 2014년 3월부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지만, 2015년도 지출계획안 2,000억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1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여¹⁴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할 예정임. 만일 사업주들이 안전투자펀드를 이용할 경우 산재예방시설 용자 수요는 감소할 수 있음.

< 표 > 안전투자펀드 개요

구 분	내 용
운용목적	▪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 투자 지원을 통해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
운용규모	▪ 5조원(산업은행 2.5조원, 기업은행 2.5조원) ※업체별 한도는 1회 최대 150억원(총 200억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과도한 지원 및 다른 기관 자금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용
운용기간	▪ 2014년 9월 ~ 2017년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방식	▪ 대상기업의 수요(대출 또는 투자)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대출(투자)기간 등	▪ 자체 여신관련 내규에 따르되, 산출 대출금리에서 1%p 자동감면
주요 지원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상 명시된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관련 설비투자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 ▪ 안전관련 업종(석유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144)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산재예방시설 용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자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3%→1.5%)와 융자한도 상향(5억원→10억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투자펀드 운용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긴밀한 논의도 필요함.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1991년에 설치한 것이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취업지원,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14 계획(A)	2015 계획안(B)	증 감 (B-A)	%	구 분	2014 계획(A)	2015 계획안(B)	증 감 (B-A)	%
계	528,843	653,119	124,276	23.5	계	528,843	653,119	124,276	23.5
○고용부담금	280,158	334,136	53,978	19.3	○장애인고용장려금	141,740	141,740	0	0.0
○가산금	728	381	-347	-47.7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14,939	12,664	-2,275	-15.2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5,426	-114	-2.1	○장애인직업능력개 발	22,401	17,476	-4,925	-22.0
○기타민간기업수입	7,134	4,496	-2,638	-37.0	○장애인고용유지	6,573	8,442	1,869	28.4
○기타민간이자수입	183	59	-124	-67.8	○장애인취업지원 등	23,275	24,088	813	3.5
○기타재산수입	6,703	9,208	2,505	37.4	○기금운영비	48,963	51,009	2,046	4.2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0	0.0	○정부내부지출	22,501	701	-21,800	-96.9
○여유자금회수	203,397	274,413	71,016	34.9	○여유자금운용	248,451	396,999	148,548	59.8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전년 5,288억원 대비 1,243억원(23.5%)이 증가한 6,531억원이 편성됨.

주요 증감사유는 표준사업장 지원 개소 감소에 따른 22억 7,500만원 (15.2%) 감소, 근로지원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8억 6,900만원(28.4%) 증가, 서울 맞춤훈련센터 '13년 설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원운영 49억 2,500만원(25.6%) 감소, 여유자금운용 1,485억 4,800만원 (59.8%)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사업코드)	'14계획 (A)	'15계획(안) (B)	증 감 (B-A)	%
계	528,843	653,119	124,276	23.5
○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141,740	141,740	0	0.0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453-304)	14,939	12,664	-2,275	-15.2
○ 보조공학기기지원(1454-305)	8,000	8,000	0	0.0
○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5-306)	6,573	8,442	1,869	28.4
○ 장애인취업지원(1456-311)	8,269	8,457	188	2.3
○ 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19,236	14,311	-4,925	-25.6
○ 직업능력개발지원(1457-315)	3,165	3,165	0	0.0
○ 장애인기능경기대회(1458-319)	4,041	4,778	737	18.2
○ 장애인고용연구(1459-324)	2,462	2,350	-112	-4.5
○ 장애인인식개선지원(1460-327)	503	503	0	0.0
○ 기금관리비(인건비)(7079-110)	64	67	3	4.7
○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7079-120)	37,493	39,557	2,064	5.5
○ 기금관리비(기타경비)(7079-210)	138	134	-4	-2.9
○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7079-220)	7,670	7,519	-151	-2.0
○ 장애인고용공단 청사임차보증금(7079-230)	315	515	200	63.5
○ 장애인기금 정보화경비(정보화)(7079-240)	2,201	2,135	-66	-3.0
○ 장애인고용공단 대외협력(7079-250)	1,082	1,082	0	0.0
○ 복권기금반환금(8999-840)	3,428	701	-2,727	-79.6
○ 공자기금(융자계정) 원금상환(9120-850)	18,000	0	-18,000	-100.0
○ 공자기금(융자계정) 이자상환(9220-851)	1,073	0	-1,073	-100.0
○ 한국은행예치(9702-971)	300	300	0	0.0
○ 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2)	99,340	158,680	59,340	59.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3)	148,811	238,019	89,208	59.9

1)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201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입 계획(안)은 6,531억 1,900만원으로 2014년 5,288억 4,300만원 대비 1,242억 7,600만원(23.5%) 이 증액되었음.

< 표 > 201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별	2014계획 (A)	2015계획(안) (B)	증 감 (B-A)	
			(B-A)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28,843	653,119	124,276	23.5
- 장애인고용부담금	280,158	334,136	53,978	19.3
- 가산금	728	381	-347	-47.7
- 기타경상이전수입	5,540	5,426	-114	-2.1
- 기타민간융자금 회수	7,134	4,496	-2,638	-37.0
- 기타민간이자수입	183	59	-124	-67.8
- 기타재산수입	6,703	9,208	2,505	37.4
- 일반회계 전입금	25,000	25,000	-	-
- 여유자금회수	203,397	274,413	71,016	34.9

이 기금 수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여유자금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임.

장애인 의무고용¹⁴⁵⁾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된 재원이 되는데, 여

145)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임.

유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5년 수입부문에서 88.2%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이 기금에서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3년 결산현황을 보면 이 기금의 수입은 5,323억 2,700만원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187억 7,700만원으로 59.9%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고용장려금¹⁴⁶⁾은 1,392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5,323억 2,700만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음.

< 표 > 2012년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계획 대비 징수·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9.22 현재 기준)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98,149	426,434	416,888	472,433	543,119	532,327	528,843	567,036	553,247	104.6
○법정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253,661	250,506	243,466	270,476	326,515	318,777	280,158	333,933	324,279	115.7

146)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년도	계획액 (A)	전용	이용	기타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11	122,586	6,641	-	-	129,227	129,227	105.4	100.0	-
2012	132,180	-	-	-	132,180	128,074	96.9	96.9	4,106
2013	141,962	-	-	-	141,962	139,250	98.1	98.1	2,712

또한,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2010년 1,461억원에서 2014년 3,243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장려금 지출은 고용부담금에 비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규모

(단위: 백만원, %)

연 도	고용부담금(수입)		고용장려금(지출)		차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0	146,086		152,050		-5,964
2011	214,384	46.8	129,227	-15.0	85,157
2012	243,466	13.6	128,074	-0.9	115,392
2013	318,777	30.9	139,250	8.7	179,527
2014	324,279	1.7	141,740	1.8	182,539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파른 증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의무고용주체의 범위 확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부담기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의 차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금고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기금의 지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지출이 고용부담금 수입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기금고갈 우려 때문에 고용장려금사업 이외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사업을 확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고용률 제고 필요

201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27,349개소)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은 153,955명이며 고용률은 2.48%로 2012년 말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11,933명 증가, 고용률은 0.13%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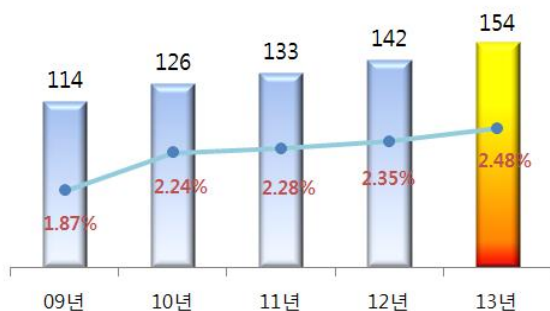
< 표 >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기준: '13.12월 /단위: 개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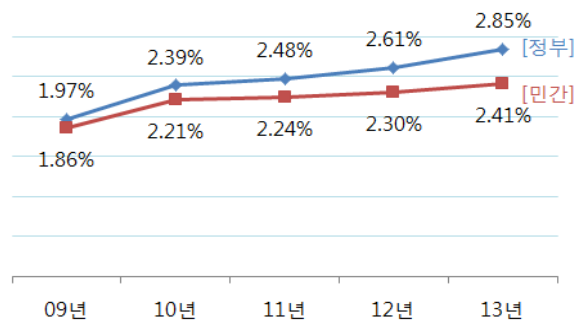
구 분		기관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계		27,349	7,499,665	153,955	2.48
정부 부문	공무원	313	836,367	19,275	2.63
	근로자	295	269,640	7,082	3.51
민간 부문	공공기관	268	310,461	7,764	2.81
	민간기업	26,473	6,083,197	119,834	2.39

※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수치임

<장애인고용률 및 고용인원(천명)>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



그런데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38.3%이고, 고용률은 36.0%인데,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동향과 비교해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4.0%p, 고용률은 24.4%p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임.

< 표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¹⁴⁷⁾(2013년 5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 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남자	1,425,957	711,915	669,426	42,489	714,042	49.9	6.0	46.9
	여자	1,031,669	228,465	215,599	12,866	803,204	22.1	5.6	20.9
	전체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전체 인구	남자	20,557,000	15,195,000	14,715,000	480,000	5,362,000	73.9	3.2	71.6
	여자	21,490,000	11,000,000	10,683,000	317,000	10,490,000	51.2	2.9	49.7
	전체	42,047,000	26,195,000	25,398,000	797,000	15,853,000	62.3	3.0	60.4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각 수치는 추정치임

5)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3년 5월) 참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문제가 있음.

147)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도별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4.8%인데 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25.0%, 실업률은 11.5%로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장애정도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15~64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 활 률	실 업 률	고 용 률
	인구	비중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	530,627	37.4	149,662	132,481	17,181	380,965	28.2	11.5	25.0
경증	886,408	62.6	566,163	539,020	27,143	320,245	63.9	4.8	60.8
계	1,417,035	100.0	715,825	671,501	44,324	701,211	50.5	6.2	47.4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쏠림현상 사유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사업장에 바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으나, 지금의 의무고용할당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제한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나 컨설팅 및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장애인고용증진(1400프로그램)

1) 장애인고용장려금(1452-303)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계획액 1,417억 4,000만원 대비 동액으로 편성됨.

< 표 >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3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장애인고용장려금	139,250	141,740	141,740	131,979	141,740	-	-

이 사업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장려금은 근속기간과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지급단가를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 원)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 3년초과 만5년까지(70%)	210,000	280,000		
만5년 초과 (50%)	150,000	200,000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2002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정이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9차례에 걸쳐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2010년 이후 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고용장려금은 2010년 1,521억원, 2011년 1,292억원, 2012년 1,281억원, 2013년 1,393억원으로 고용부담금에 비해 변동폭이 낮고, 고용부담금은 2010년 1,461억원, 2011년 2,144억원, 2012년 2,435억원, 2013년 3,188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한편, 고용장려금 지출과 고용부담금 수입간의 차액 규모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 >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고용부담금(수입)		고용장려금(지출)		차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0	146,086		152,050		-5,964
2011	214,384	46.8	129,227	-15.0	85,157
2012	243,466	13.6	128,074	-0.9	115,392
2013	318,777	30.9	139,250	8.7	179,527
2014	324,279	1.7	141,740	1.8	182,539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기금고갈 가능성이 있어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계속 상향조정하면서 고용장려금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고, 최근 기금수지 현황을 보면 부담금의 과도한 증액으로 기금수지가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장애인취업지원(1456-311)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를 제시하는 한편, 구인·구직 취업알선 등 장애인 고용촉진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4억 5,700만원으로 2014년 계획액 82억 6,900만원보다 1억 8,800만원(2.3%)이 증액 편성되었음.

< 표 > 장애인취업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도 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장애인취업지원	8,166	8,269	8,269	8,765	8,457	188	2.3

이 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위해 10억 5,4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임.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는 15~64세 중증장애인의 고용률¹⁴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절반 이

148) 장애인 고용률: 경증 60.8% 중증 25.0%, 장애인 실업률: 경증 4.8% 중증 11.5%, [출처: 2013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하로 낮고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에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턴제를 운영하려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2015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미취업 중증장애인 200명에 대하여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 간 1인당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 이는 비장애인 인턴제도인 장년인턴 취업지원¹⁴⁹⁾ 사업과 유사한 수준임.

< 표 >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중증장애인 인턴제	1,054	- 인턴채용지원금 800,000원×200명×6개월= 960백만원 - 정규직전환금* 650,000원×200명×6개월×60%×20%=94백만원

* 정규직전환금은 사업 초기년도이므로 조기 정규직 전환금에 한하여 산정하며 인턴채용 인원(200명)의 정규직 전환율 60%와 조기 정규직 전환율 20%를 적용

149) 장년인턴 취업지원: 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턴기간 4개월동안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함

미취업 중증장애인 20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합리적 사업 목표로 보이지만, 인턴 대상이 직장생활과 직무적응이 힘든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턴기간 6개월은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장애인 인턴사업과 달리 중증장애인 인턴채용으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수준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로 사업 운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3) 직업능력개발원운영(1457-314)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사업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43억 1,100만원으로 2014년 계획액 192억 3,600만원보다 49억 2,500만원(25.6%)이 감액 편성되었음.

< 표 > 직업능력개발원운영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요구	조정(B)	(B-A)	%
직업능력개발원운영	12,434	19,236	19,284	14,311	△4,925	△25.6

이 사업의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2014년에 반영된 서울맞춤훈련센터,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실습동 증축 사업의 완료로 인해 자연 감소 소요가 발생되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비 8억 3,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됨.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규로 반영한 것은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수요¹⁵⁰⁾에 비해 서울·경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정원 200명)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정원이 연 50명에 불과하여 그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한 점, 수도권 발달장애인¹⁵¹⁾ 훈련

150) 일산직업능력개발원(정원 200명): '13년 기준 입학선발평가 발달장애인 206명 중 56명 훈련, 150명 미실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부모 등 보호자가 직업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기인함.

< 표 > 특수학교·학급 등 고등 학생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소계	발달비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전 국		26,106	-	11,149	10,677	4,280
서울시	소 계	3,900(2,639)	67.7	1,872(1,221)	1,427(1,202)	601(216)
	고 3	1,530(1,049)	68.6	917(621)	432(367)	181(61)
	고 2	1,201(796)	66.3	500(305)	491(407)	210(84)
	고 1	1,169(794)	67.9	455(295)	432(428)	210(71)

* 2013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기준, ()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수

* 2013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고등학교 및 전공과기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성일중학교 발명센터(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4층(500평)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진로컨설팅 500명, 직업훈련체험(심화 포함) 500명, 직업훈련 및 준비 100명, 학부모 연수 550명 등을 운영할 계획임.

151) 수도권 발달장애인 훈련수요 현황

구 분	수도권 특수교육인원(고3)	발달장애인인원(비율)
계	3,244명	2,412명(74.4%)
서울시	1,530명	1,049명(62.2%)
경기도	1,360명	1,128명(83.0%)
인천시	354명	235명(66.4%)

* 2013년 특수교육연차 보고서 기준

* 발달장애인: 교육부 기준 정신지체장애, 자폐성 장애

< 표 > 2015년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경비 산출내역

□ 소요예산 835백만원

○ 교육훈련비(학생모집, 홍보, 재료비, 교재비, 급량비 등) 404백만원

○ 사업관리비(건물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431백만원

※ 서울시 교육청은 센터장소 제공 및 리모델링비용 부담(10억원)하고 공단은 직업훈련 및 진로설계, 직업훈련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교육부(서울시 교육청)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서울시 교육청이 유희시설(성일중학교 발명센터)을 리모델링하여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협업모델은 향후 타 지역교육청과의 연계 등 전국적으로 확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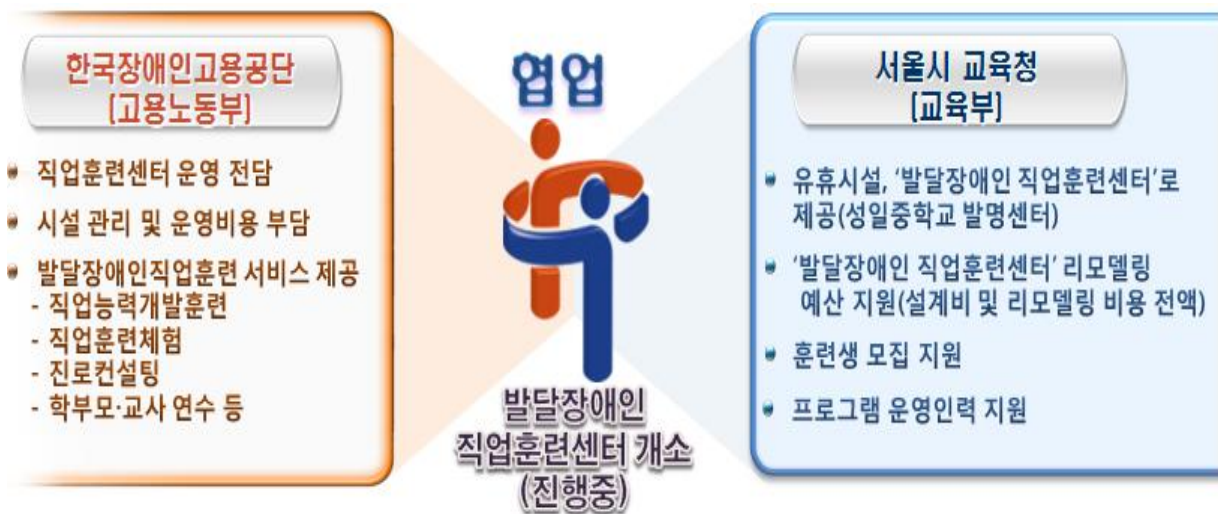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운영은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직업적 소외계층¹⁵²⁾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일”에 대한 욕구증대에 적극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사업은 2014년 2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공단,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4개 기관이 모여 동 센터를 금년 10월에 개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센터를 개소하지 못하고 있음.

152) '1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15세이상 기준): 장애인실업률 5.9% 중 발달장애인 실업률 13.2%

더구나 금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 리모델링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배정조차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센터 개소는 2015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임.

< 표 >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추진방식



고용노동부는 금년 11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되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에 소요되는 사전행정절차와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사업지연이 예측되는 만큼 관련 경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향후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의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훈련과 고용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6. 임금채권보장기금

가. 임금채권보장(3000프로그램)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사업 지출계획안은 1조 2,040억 2,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1,545억 5,6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임금채권보장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계획		2015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당초	수정(A)			
합 계	1,049,472	1,049,472	1,204,028	154,556	14.7
○ 체당금 지급	252,484	252,484	274,253	21,769	8.6
○ 무료법률구조지원	20,299	20,299	20,299	0	0.0
○ 체당금 조력지원	406	406	200	-206	-50.7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응자(응자)	2,997	2,997	2,040	-957	-31.9
○ 사업운영비	10,274	10,274	10,344	70	0.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70,000	70,000	150,000	80,000	114.3
○ 여유자금운용	693,012	693,012	746,892	53,880	7.8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 체당금 지급 217억 6,900만원(8.6%)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800억원(114.3%) 증액됨.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체당금 조력지원 2억 600만원(△50.7%)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9억 5,700만원(△31.9%) 감액됨.

1) 무료법률구조지원 (3052-302)

가) 사업 개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보전·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체불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업무를 제공하는 것임.

이 사업의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20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05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시행 초기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커져 수입지출상으로 이미 사업초기(2006년) 대비 3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가 됨¹⁵³⁾.

153) 물론 200억 상당은 2013년도 이후 예산총계주의상 수입부분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전액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임. 다만, 합계액에 있어서 비교를 하면 사업초기(2006년)보다 현재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함.

< 표 > 2015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결산	2014계획(A)	2015 계획안		증 감 (B-A)	증감률
			요구	조정(B)		
무료법률구조지원	19,867	20,299	20,299	20,299	0	0.0

< 표 > 2015년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 무료법률구조 지원 : 체불금품피해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등에 관한 법적지원을 위한 사업비 20,299백만원 요구
-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
- 산출내역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 13,823백만원
 - 63,061건 1」 × 1.038 2」 × 1.038 2」 × 203,447 3」
 - 1」 최근 5년간('09~'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 '09년('09년 사건수*10.0%)+ '10년('10년 사건수*15.0%)+ '11년('11년 사건수*20.0%)+ '12년('12년 사건수*25.0%)+ '13년('13년 사건수*30.0%)
 -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 3.8%
 - * '11년(△1.2%)+ '12년(9.2%증)+ '13년(3.5%증)
 -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소송비용: 203,447원
 - * '11년(213,213원)+ '12년(209,065원)+ '13년(188,064원)
 - 변호사비용 : 6,542백만원
 - 63,061건 1」 × 1.038 2」 × 1.038 2」 × 96,138 3」
 - 1」 최근 5년간('09~'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 '09년('09년 사건수*10.0%)+ '10년('10년 사건수*15.0%)+ '11년('11년 사건수*20.0%)+ '12년('12년 사건수*25.0%)+ '13년('13년 사건수*30.0%)
 -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 3.8%
 - * '11년(1.2%감)+ '12년(9.2%증)+ '13년(3.5%증)
 -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변호사비용: 96,138원
 - * '11년(97,827원)+ '12년(92,619원)+ '13년(97,967원)
 - 자체 절감 감액 : -56백만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제7호¹⁵⁴⁾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기금에서 출연되는 사업임. 이에 따라 매년 공단이 출연금을 받아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소송을 통한 회수금 중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양 기관이 맺은 협약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소요 재원을 출연하고 공단이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13 :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나) 출연금 구분·관리의 필요

(1) 출연금의 구분관리

출연금은 기관에 대한 출연목적에 한정하여 그에 부합하게 운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산·결산 과정에서 출연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출연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지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¹⁵⁵⁾. 특히 목적출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소관 부처는 이에 따른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¹⁵⁶⁾.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자료]

출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세부내역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의 세목으로 편성되어 각각에 부합하게 집

154)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155)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대자출판사, 2012, 177페이지 이하 참조.

156)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대자출판사, 2012, 788페이지 이하 참조.

행됨¹⁵⁷⁾. 만약 출연을 받은 기관이 다른 사업비나 보조금 등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 출연금은 해당기관의 일반회계에 혼입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계정을 두어 출연사업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구분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2) 무료법률구조지원 출연금 구분관리 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동 사업의 경우에 출연금에 대한 구분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예·결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요구된다고 하겠음¹⁵⁸⁾. 이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지원한 출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라고 명시한 바도 있으므로, 공단은 출연금의 구분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그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매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사업 계획안을 보면 출연금의 구분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출할 세목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체로서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요구할 뿐임¹⁵⁹⁾.

2015년도 계획안에서도 출연금의 구분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은

157)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마찬가지임.

158)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도 출연금의 구분관리(“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제107조제3항)를 두고 있음.

159)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을 받게 되면 계정을 따로 만들어 그 계정에서 사건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고 하나, 이는 본연의 구분관리가 아니고 단지 거쳐가는 통로(導管, pass through)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계정은 어차피 소송비용, 변호사보수의 명목으로 다시금 전액 구조공단의 일반회계에 혼입되는 것으로서 출연금의 구분관리에는 미흡함.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출연기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올리는 계획안 요구를 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공단의 일반회계와 목적출연금이 혼입될 여지가 있으며 동사업에 어떻게 출연금이 지출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움¹⁶⁰⁾.

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동 사업의 계획안은 최근 5년간의 사건수에 가중평균치를 고려하여 2015년 사건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표 > 고용노동부 출연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산출근거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 13,823백만원
 - $63,061 \text{건} \times 1.038 \times 1.038 \times 203,447$
 - 1) 최근 5년간('09~'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 '09년('09년 사건수*10.0%)+ '10년('10년 사건수*15.0%)+ '11년('11년 사건수*20.0%)+ '12년('12년 사건수*25.0%)+ '13년('13년 사건수*30.0%)
 -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 3.8%
 - * '11년(△1.2%)+ '12년(9.2%증)+ '13년(3.5%증)
 -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소송비용: 203,447원
 - * '11년(213,213원)+ '12년(209,065원)+ '13년(188,064원)
- 변호사비용 : 6,542백만원
 - $63,061 \text{건} \times 1.038 \times 1.038 \times 96,138$
 - 1) 최근 5년간('09~'13년) 무료법률구조사건수 가중평균*
 - * '09년('09년 사건수*10.0%)+ '10년('10년 사건수*15.0%)+ '11년('11년 사건수*20.0%)+ '12년('12년 사건수*25.0%)+ '13년('13년 사건수*30.0%)
 - 2) 최근 3년간 평균 사업실적 증가율: 3.8%
 - * '11년(1.2%감)+ '12년(9.2%증)+ '13년(3.5%증)
 - 3) 최근 3년간 1건당 평균 변호사비용: 96,138원
 - * '11년(97,827원)+ '12년(92,619원)+ '13년(97,967원)

160) 일반회계와의 구분, 출연금의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도 살필 수 있고 향후 결산에서도 사업목적에 적절한 집행이 되었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이와 비교하여,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음. 상세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 2013년도 공단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 비교

지급기관명	금액 (2013년 기준)	지원대상	산정근거(산정 방식) ¹⁶¹⁾	사건수 (2013년 기준)
고용노동부	198억원	임금체불근로자	예상 사건수에 가중치·증가율을 반영하여,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각각 곱하는 방식 사건수 * 소송비용 사건수 * 변호사보수	66,706건
여성가족부	14억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정액 보조(사건수 고려) (협약상 부족시 재배정가능)	3,662건
공탁금관리위원회	103억원	법률보호취약계층	정액 지원(사건수 고려)	28,272건
농협	14억원	농민	정액지원 100억을 목표로 기금으로 적립(협약).	4,362건
KB국민은행	0.1억원	학교폭력피해자	정액지원. 매년 1.8억원을 출연(협약).	32건
신한은행	28억원	도시영세민	정액지원. 매년 50억원 이상 출연(협약). 500억을 목표로 기금으로 적립(협약).	8,320건
서울보증보험	1억원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정액지원 적립	268건
국가보훈처	0.2억원	중장기복무제대 군인	정액지원 적립	67건
중소기업청	1.5억원	소상공자영업자	정액지원 적립	390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4억원	임금체불선원, 재해피해선원	정액 지원 적립	111건
케이티앤지	0.2억원	담배소매인	정액지원 적립	43건
수협	0.7억원	어업인·수산업인 등	정액지원 적립	185건

161) 기존의 관례를 참조하여 작성함.

이를 보면, 다른 부처나 기관들은 일정액(정액)을 지급하거나 기금총액을 정하여 매년 적립하면서 관련 사건의 수행을 위탁하고 있고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인 공단은 그 지원금(보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각 기관이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사건수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총액도 200억을 상회하여 규모가 제일 큼. 즉, 공단은 의뢰하는 사건 전수(全數)에 대하여 ① 소송비용을 지급받고, ②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정하는 변호사보수라는 명목으로 사건대행비용을 따로 받고 있음.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공단의 사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되므로¹⁶²⁾, 고용노동부가 출연하는 금원(목적출연금)은 결국 공단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임.

본래 공단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기본적인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음. 공단은 매년 3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재원으로 인건비(변호사, 임직원 포함)와 기관운영비를 소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사건 전수(全數)에 대하여 각각 비용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비용절감의 재량폭이 거의 없어 앞으로 지속적인 증액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특히 2009년 이후로 사건수와 구조금액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출연금 규모는 계속

162) 대한법률구조공단,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반회계, 특별회계)」 23페이지 이하 참조.

증가해 온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2015년도에 편성된 202억 9,9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표 >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구 분	인원수(명)	사건수(건)	구조금액(백만원)	집행액(예산)
'09	145,871	61,869	887,770	8,891
'10	130,675	59,703	802,174	8,891
'11	127,781	59,002	875,098	9,317
'12	136,218	64,425	944,057	9,783
'13	134,056	66,706	911,064	19,867 ¹⁶³⁾
'14.8	83,539	44,365	544,754	20,299

163) 예산총계주의상 수입부분으로 회수되는 부분을 전액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임.

7. 근로복지진흥기금

가. 중소복지계정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3000)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프로그램 지출계획안은 1,222억 8,8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정계획 대비 336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 표 > 2015년도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계획		2015 계획안(B)	증 감 (B-A)	증감률
	당초	수정(A)			
합 계	88,650	88,650	122,288	33,638	37.9
○ 문화예술제	626	626	595	-31	-5.0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2,655	2,655	2,522	-133	-5.0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1,176	1,176	1,117	-59	-5.0
○ 퇴직연금 사업운영	1,881	1,881	3,275	1,394	74.1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규)	-	-	10,000	10,000	순증
○ 근로복지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44	444	400	-44	-9.9
○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신규)	-	-	4,011	4,011	순증
○ 생활안정자금대부(융자)	81,868	81,868	100,368	18,500	22.6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의 주요 증액 또는 신규반영 내역을 보면,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100억(순증)
- 퇴직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0억 1,100만원(순증)

- 퇴직연금 사업운영 13억 9,400만원(74.1%)
- 생활안정자금대부(용자) 185억(22.6%) 증액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사업의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 자산운용전산시스템운영 2,800만원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근로복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통합하고 4,400만원(△9.9%).
- 문화예술제 3,100만원, 직장여성아파트관리운영 1억 3,300만원,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5,900만원(각 △5.0%) 감액됨.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3061-32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2015년의 신규사업으로서 i)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복지시설 설치 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을 협력지원하고, ii)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은 크게 사내복지기금지원사업과 공동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대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학자금 및 주택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총비용의 일부를 지원 (1개 기금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비용의 50%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산업단지에 소재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학자금 및 주택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총비용의 일부를 지원 (1개 기금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비용의 50% 지원)

동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로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비목은 민간경상보조(320-01)임.

< 표 > 2015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안(A)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10,000	10,000	순증

지출계획안 산출근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에 50억원(50개 기금, 기금당 1억원씩),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에 50억원(50개 기금, 기금당 1억원씩)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격차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취지를 가졌음에도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향후 집행가능성 측면에서도 담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¹⁶⁴⁾.

첫째, 동 사업의 계획은 개략적인 부분만 드러난 상태로서 사업목적 달성에 아직 미비한 점이 있음¹⁶⁵⁾. 대기업이 사내복지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체들을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세사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세사업은 각각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미흡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전례 등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현재 실행 중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둘째, 동 사업의 예상 집행률에 관한 것임. 2015년도에 계획대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게 될 경우면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164)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보고(부처별)」 2014.10.

165)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근거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 동사업의 근거로 보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제7호 외에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년 9월 19일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않게 되면 지원금의 상당수가 불용될 위험에 처함. 특히 사업대상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을 떠안기는 식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따라서 2015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동 사업은 사업실시에 앞서 수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¹⁶⁶⁾.

166)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 보다는 우량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우려가 있는 등 사업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2014.10 참조.

2)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3061-302)

가) 사업 개요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은 전국 6개소에 임대아파트를 운영함으로써 독신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여성근로자에게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을 증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임.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수정계획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소한(Δ5%) 2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표 > 2015년도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사업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3년 결산	2014년		201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2,038	2,655	2,655	2,522	-133	-5.0

직장여성아파트는 서울,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 총 6곳에 입주정원은 1,632명('14년 9월 현재)임¹⁶⁷⁾.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다음 표와 같음.

167) 입주요건은 미혼 또는 기혼 독신여성근로자로서 월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임.

< 표 > 직장여성아파트의 입주현황 및 소재지

6. 입주현황 및 소재지				(2014년 6월 30일 기준)	
아파트	입주정원	공실 수	대기자 수	주 소	연락처
구로	201	0	74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35	02-857-7852
부천	198	0	3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9	032-672-4224
인천	396	55	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7번길 57	032-528-6932
대구	198	16	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36길 6	053-381-9063
부산	400	29	0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5	051-327-8643
춘천	237	58	0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15	033-256-7742

★ 구로아파트는 현재 입주신청자가 너무 많아 입주신청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 세대 당 입주인원 : 2명(큰방, 작은방 각 1명)

< 표 > 직장여성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

● 기본 보증금 및 임대료			
구 분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별도
큰방	400,000원	70,000원	
작은방	200,000원	46,500원	

2015년도에는 계획액을 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의 내역으로 산출하고 있음. 이는 주택관리공단, 민간용역업체 등에 지급하는 일반운영비 및 외부용역수수료¹⁶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시설비(노후시설개선)가 주(主)를 이루고 있음.

¹⁶⁸⁾ 관리인, 경비원, 청소원 등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로 보임.

특히 최근 들어 시설비가 매년 10억원 상당씩 소요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직장여성아파트 건립이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급하고, 2013년 12월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2015년에는 우선적으로 외벽도장 및 실내문짝 등 내부시설물 교체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표 > 2015년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사업의 계획안 상세

○ 산출근거

- ① 운영비: 1,495 → 1,495백만원(전년수준)
 - 일반운영비 및 외부용역수수료 등: 1,243 → 1,243백만원(전년수준)
 - 종합부동산세: 252 → 252백만원(전년수준)
- ② 여비 및 업무추진비: 3 → 3백만원(전년수준)
- ③ 시설비: 1,157백만원 → 1,019백만원(감 133백만원)
 - 외벽도장공사: 329백만원
6개소 × 54,900천원(아파트 단지별)
 - 화장실 문짝 등 내부 시설물 교체 공사: 250백만원
100세대 × 2,500천원(세대 당)
 - 노후 베란다 교체(석면 철거 포함) : 440백만원
200세대 × 2,200천원(세대 당)

○ 지원필요성

- 직장여성아파트는 '88~'90년 건립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소산정책으로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공사가 시급함
- '13년 12월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15년에는 우선적으로 외벽도장 및 실내문짝 등 내부시설물 교체 공사 추진 예정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2009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각각 2배, 2.5배 상당이 늘어난 상태임. 이것은 입주자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¹⁶⁹⁾ 동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지속적 증가와 시설개선비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표 >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사업의 결산 및 계획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년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해 이월액	불용액
2009	1,162	-	35	1,197	1,197	103.0	100	-	-
2010	1,219	-	-	1,219	1,108	90.9	90.9	-	111
2011	1,515	-	-	1,515	1,514	99.9	99.9	-	1
2012	1,872	-	-	1,872	1,704	91.0	91.0	167	1
2013	1,872	167	-	2,038	2,038	99.9	99.9	-	1
2014.9	2,655	-	-	2,655	1,559	58.7	58.7	-	-
2015	2,522								

※ 2014년도 집행률 부진사유 : 창호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 11월 준공 예정 및 직장여성아파트 종합부동산세 12월 고지·납부 예정으로 12월중 집행 완료

나)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촉구

동 사업은 20여년 넘게 독신여성근로자를 위한 거주지로서 나름의 기능을 다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9) 2011년 1,443명, 2012년 1,516명, 2013년 1,457명, 2014년 초 1,535명 등으로 특별한 변동추세를 보이지 않음.

첫째, 향후 재정의존을 줄이고 수지차 보전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입주자들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년 상당한 지원을 받아 거주하고 있음. 입주자의 월임대료가 46,500원 또는 70,000원으로 이 재원으로는 6개 아파트의 운영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시설비, 조세 등의 기타비용은 더더욱 충당할 수 없는 편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독신 여성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전체 근로자 등을 위하여 쓰일 재원인 진흥기금을 1,500명 상당의 극소수 인원에게만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함¹⁷⁰⁾. 20여년이 넘는 동안 동사업은 사업의 존폐 등에 관한 논의를 해왔을 뿐 실질적인 운영체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방식개편 및 수지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¹⁷¹⁾.

둘째, 동사업의 적절한 출구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각·재건축 등이 논의되었고 2012년에는 매각을 전면철회하는 등 수행에 혼란을 겪었음.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전부 위탁하거나 시설개조를 통한 주거지원방식 변경 등도 논의되었던 바임¹⁷²⁾. 이처럼 동사업에 여러 존폐 논의가 나온 것은 ① 사

170)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산재병원 운영도 점차 그 폭을 줄여 수지차를 보전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동 사업도 수익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171)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음. 아파트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응능부담이 아닌 응익부담으로 바꾸어 수혜자부담분을 조정하는 등 수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임. 이 렇게 된다면 비교적 많은 인원이 나온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소수인원에 대하여 30억에 가 까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유지하는 현 상황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음.

172)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주택종합계획 중 매입임대 정책의 일환으로 소형아파트인 직장여성아파트 매 입을 대안으로 정부에 건의 ※ 아파트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매각 및 재건축 사례 검토 후 연구용역,
--

업의 장기지속필요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② 지속적인 사업비 지출에도 사업의 효과가 높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③ 다른 부처·기관 등의 임대주택사업이나 민간의 주택공급사업 등과 겹치게 되어 특별한 존립이유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임.

현재 20여년이 넘는 시설물(아파트)에는 석면철거, 노후설치물교체, 도장·방수공사 등의 공사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목적에 따른 입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Upgrade) 또는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¹⁷³⁾. 결국 동사업은 사업의 개편·축소 등의 여러 방식(Exit Strategy)을 논의하여야 할 것임¹⁷⁴⁾.

셋째, 동 사업에 참여한 입주자에 대한 자립의지 독려가 필요함. 동 사업은 단순히 거주지를 저가에 제공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사업에 참여한 여성근로자들이 향후 독립하여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짐.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자립형임대보증금(표 참조)제도¹⁷⁵⁾를 운영하고 있고 거주 종료 후 입주자가 낸 적금을 돌려주고 있음. 다만 보증금제도에 입주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2년간 낸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대체로 100~

공청회 개최 및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173) 이러한 개선·유지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면 점차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입주자의 불만이 폭증하여 사업의 운영이 급속한 악순환구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174)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는 기타권고사항으로서 “직장여성아파트와 같이 비금융 사업의 경우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 소수가 아닌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적으로 리모델링 등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종료를 사전에 전제하는 원칙을 세워 중기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175) 2014년 8월말 현재 160명이 가입하여 6,240만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음.

2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제도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¹⁷⁶⁾. 따라서 앞으로 자립형임대보증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한편 입주자의 자립을 돕는 거주지 연계이동 방안¹⁷⁷⁾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표 > 자립형 임대보증금 제도 소개

● 자립형 임대보증금 (기본 보증금 외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주거 자립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A 형	B 형	비고
본인 납부액	월 5만원(총 120만원)	월 10만원(총 240만원)	자립지원금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공단의 자립지원금	112,500원	225,000원	
총 지급액	1,312,500원	2,625,000원	

176)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체 입주민의 10%이상이 가입하였고 입주자에게는 총소득금액의 5%~10% 상당의 금액이므로 입주자 스스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177) 여러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무리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입주만료 전에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의미함. 특히 구로, 부천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퇴거를 거부하여 대기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따른 소송(쟁송)비용도 발생하였음. 따라서 계약만료 후 거주자들을 다른 주거지로 이전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야 함.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5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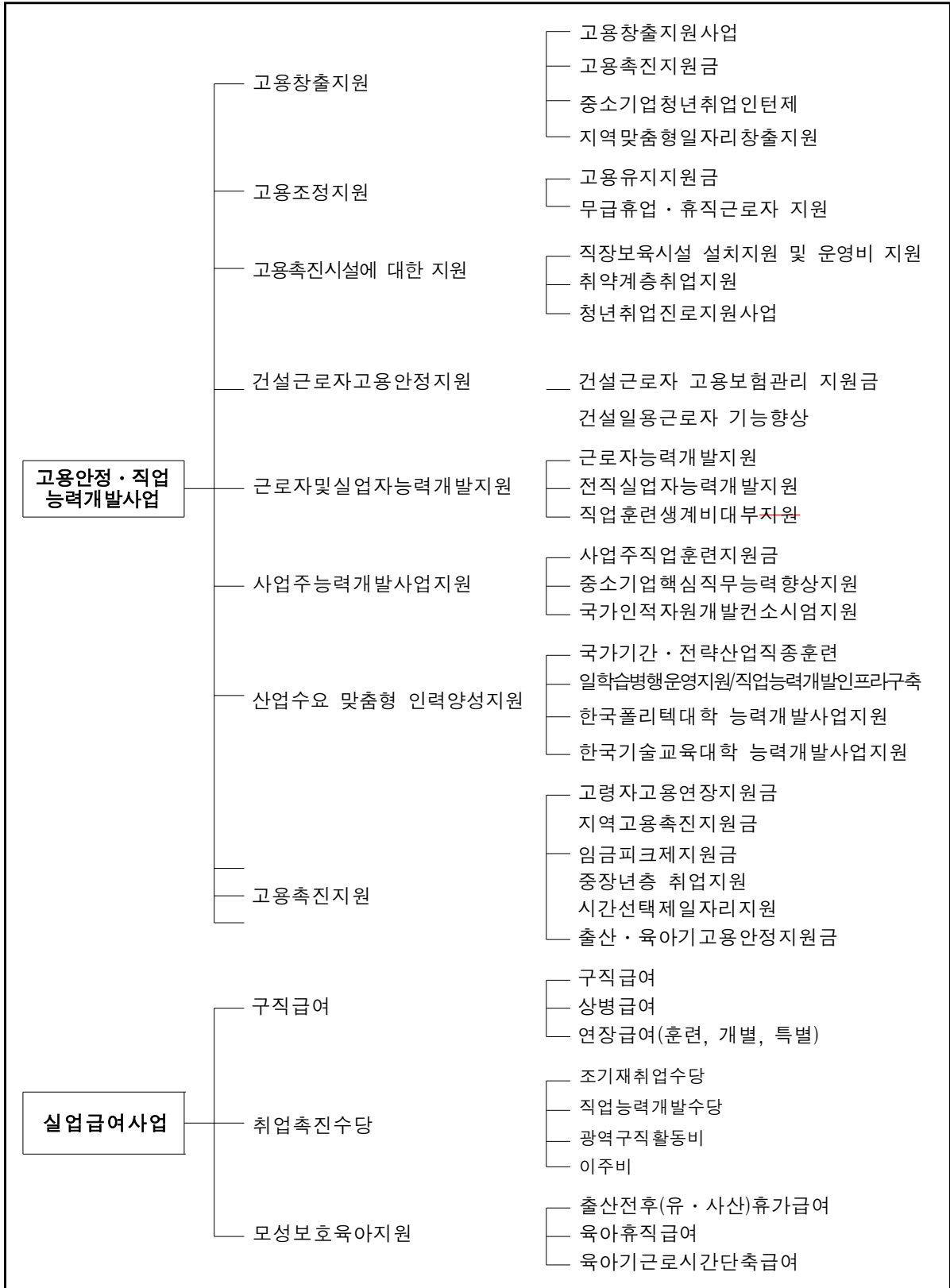
(2014년 기준)

구 분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및예방 기 금	임금채권보장 기 금	근로복지 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주 목 적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	임금채불근로자 생활안정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취업지원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초시행		1995년	1964년	1998년	1994년	1991년
운영 기관	징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급	고용센터				
적용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184만 개소)	근로자 1인 이상 (194만 개소)	좌동	-	부담금: 근로자 100인 이상 장려금: 근로자 1인 이상
보험가입자 (부담자)		근로자(1,186만명) 사업장(184만명)	사업주(194만명)	좌동	-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
피보험자 (수혜자)		근로자(1,186만명)	근로자 (1,563만명)	좌동	저소득근로자	의무고용 초과 사업주
보 험 료		보수총액× 보험료율	좌동	좌동	복권 수익금 분배 비율	부담기초액(고시) × 고용미달인원
보험 료율	산출 방법	30/1000 내에서 정 함	보험급여 지급률 + 추가지출률 + 부가보험료율 <보험급여 지출액 /보수총액>	0.08%	복권수익금× 1.86%	장애인 고용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
	계정별 요율	실업급여계정 1.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평균 1.70%	0.08%	복권수익금× 1.86%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 인원 670,000원, 의 무 고 용 인 원 의 1/2~3/4미만 인원 837,500원, 의무 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 1,005,0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88,890원

※ 자료 : 고용노동부

■ 사업체계도

< 고용보협사업 >



■ 사업내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신청절차
고용 창출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 인건비지원: 1인당 연720만원~1,080만원(중소제조업) ※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2년간 2,160만원 - 설비투자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설비투자비 1/3범위내에서 증가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제조업은 1,000만원) 최대 2억원 지원 - 설비투자용자: 설비투자비 2/3 범위내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5억원) - 임금보전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제도 도입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통근차량, 기숙사 설치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환경개선·근로자 고용	- 시설비지원: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기업은 2/3)의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 다수사업주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비용자: 최대 2억5천만원 - 인건비지원: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3개월 경과시 고용센터에 신청
	지역·성장 산업 고용 지원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U턴)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 인건비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1,080만원(제조업) <지원 한도> - 성장유망업종 매 회차 3명 이내 - 국내복귀 기업: 매 회차 100명 이내 - 지역특화산업 및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매 회차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이내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인건비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50세 이상자 고용시 1명 추가지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월 60만원 한도)를 1년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 <지원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근로자수의 15%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 한도로 지원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	
고 용 조 정 지 원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배제)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 등: 1개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행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 -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 -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급 (훈련)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월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 -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변경필요시 사전에 변경신고) -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달에 고용센터에 신청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1일 4만원 한도) -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별로 180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고 령 자 등 고 용 촉 진 지 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 금	정년 연장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간 지원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지원 ※ 정년폐지·연장 후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고용센터에 신청

		정년 퇴직 자 재고 용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1년간 지원	고용센터에 신청
		60세 이상 고령 자 고용 지원 금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 -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고용센터에 신청
	임금 피크 제지 원금	정년 연 장 형	- 근로자 대표 동의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 80%(300인 미만 사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84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72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급 받으려면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재 고 용 형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 55세 이상 -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감액	-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연 60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근 로 시 간 단 축 형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 피크임금 대비 7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연 50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고 용 촉 진 지 원 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다만,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총 720만원) 지원 -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근로자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신청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주민(3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통영지역 지정기간: '13.1.25~'15.1.24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 지원(1일 4만원 한도)	지역고용계획 제출<관할고용센터> → 근로자 채용<3월 이상 거주 지역주민> → 조업 시작 신고서 제출<조업시작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임금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 지원금 지급<6월 이상 고용 근로자>
기 타 고 용 안 정 지 원	출 산 육 아 기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1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20만원)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 부터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고 용 안 정 지 원 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낮은 날부터 신청 가능

기 타	고용환경 개선용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동일함		
		-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 가능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용자 - 고령자친화시설·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를 뺀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용자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를 뺀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 여성 고용환경개선자금용자 -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7억원(공동 설치 시 9억원)까지 연리 1~2%로 용자(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연초 사업공고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연초 사업공고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시설장·교사·취사부 인건비지원: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월 120~520만원) - 시설비(최고 3억원, 사업주단체는 6억원)와 유구비품비(최	- 보육교사 등 인건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교재·교구비):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신청 - 어린이집 설치비용 무상·용자지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고 50백만원) 무상지원 ※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최고 15억원(공모사업)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원: 최고 6억원(공모사업) ● 7억원 한도 용자(연리 1~2%,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스마트워크센터 임대 및 설치비용의 80%(10억원 한도)	●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 청년을(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일 당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14.4.1.부터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 지원 ※ 인턴기간동안 참여자 인건비 (임금의 50%, 월80만원한도) 지원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인턴수료후 정규직 전환통보(고용센터, 운영기관)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센터에 신청→고용센터에서 지급
	장년 취업 인턴제	●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인턴참여자: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1964.12.31이전 출생자) -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 지원 ※ 인턴기간동안 참여자 인건비 (임금의 50%, 월80만원한도) 지원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초 1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과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각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연간지원 한도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훈련비용 연간총액⇒ 고용안정, 직능 납부보험료의 240% - 대기업 : 훈련비용 연간총액⇒고용안정, 직능 납부보험료의 100%	● 훈련실시자는 훈련개시 7일전(자체 5일전, 훈련일수가 2일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전일)까지 인정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종료 후 또는

			※ 지원 최소금액 : 500만원 <연간지원 한도액>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매 3개월간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집체훈련·현장훈련》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 1,000인 이상 50%) 《원격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 × 수료인원×80%(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 우편원격훈련 -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 × 수료인원×80%(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기업 50%) ※ 원격훈련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
		기간제 등 훈련 우대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소정 훈련시간×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소정 훈련시간×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훈련지원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 ● 임금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소정 훈련기간×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 훈련시간×최저

		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훈련비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 1,000인 이상 50%)	
	대체인력 채용 지원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	●대체인력 임금지원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훈련비 및 훈련생 임금은 유급휴가훈련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대상 - 훈련참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 훈련기관 : 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	●훈련참여 기업 - 훈련비 환급절차 없이 무료로 맞춤형 교육훈련 참여 ●훈련기관 - 시설·장비비 :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 동안 매년 심사하여 지원하되, 6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 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 훈련 프로그램개발비(100%)는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 훈련비 : 공동훈련비 또는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으로 지원	●신규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규 기관 모집공고 → 신청서(지원금 포함)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금 지원 ●기존 선정기관 :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서(지원금 포함) 제출 →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금 지원 ☞ 훈련비는 신규 및 기존 선정기관 모두 훈련종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신청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6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 대기업, 우수훈련기관 연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 직업훈련시설 및 법인 연 25% - 대규모기업, 기타사업주(단체) 연 3%	
근로자 지원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	●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 피보험자 -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근로자 - 대규모 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 3년 이상 사업주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지원	● 훈련비용의 100%(정규직 80%) ※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60% (정규직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지원금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내일배움 카드제	●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지원요건: 카드를 발급 받고 자비부담액을 납부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 ※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수료(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출석)한 경우 훈련비의 60~80% 지원 ※ 미수료의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 카드신청(근로자) :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으로 신청 ● 지원금 신청(훈련기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4주이상의 직업훈련(지자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운영중인 훈련 포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연소득 2,400만원 미만자) 및 전직실업자(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제외)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 '14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 대부사업과 통합운영(세출구조조정계획의 일환)	● 지원수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월 100만원 분할 대부 ● 대부기간 및 상환조건: 연 1%, 최대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상환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단홈페이지 (www.workdream.net)로 신청
구 직 자 지 원	국가기관 전력산업직종 훈련지원	●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 고3 재학생으로 고등교육기관 비진학자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다음년도 2월 까지 졸업예정자)	● 훈련비(훈련기관)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실비용 지원 ● 훈련장려금(훈련생) - 매월 최대 316천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월10만원 6개월간 추가 지급)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고용센터에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급청구서」를 제출

	내일배움 카드제	• 실업자로서 취업상담을 거쳐 취업지원을 받고도 취업·창업하지 못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	• 훈련비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50~100% 지원 ※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일정비율은 훈련생이 부담 • 훈련장려금: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 1일 5시간 미만: 2,5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50천원 한도) - 1일 5시간 이상: 5,8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116천원 한도)	• 구직 등록 → 취업상담 → 교육동영상 이수 → 훈련상담 → 훈련과정 선택(최대 5개) → 고용 센터에 『내일배움 카드제 발급신청서』를 제출
	알·학습 병행제	• 참여기업: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의 기술기업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중 명장기업, Best HRD 기업,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학습근로자: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려는 청년취업희망자 등	• 기업 지원사항 - 인프라 지원: 연간 2,400만원 한도 - 훈련소요 비용지원: 실소요비용 • 학습근로자 지원사항 - 학습근로 지원금: 월 40만원 - 식비 및 숙박비: 월 21만원 한도	• 기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일·학습지원센터 및 13개 산업별단체를 통해 신청 • 학습근로자 - 기업의 채용공고 등을 통해 신청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 근로자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하여야 함	-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최고 : 40,000원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됨 【소정급여일수】 (단위 : 일) <table><tr><th>피보험 기간 연령</th><th>1년 미만</th><th>1년 이상 3년 미만</th><th>3년 이상 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 년 이상</th></tr><tr><td>30세 미 만</td><td>90</td><td>90</td><td>120</td><td>150</td><td>180</td></tr><tr><td>30세 이 상 ~ 50세 미만</td><td>90</td><td>120</td><td>150</td><td>180</td><td>210</td></tr><tr><td>50세 이 상 및 장 애 인</td><td>90</td><td>150</td><td>180</td><td>210</td><td>240</td></tr></table>	피보험 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 년 이상	30세 미 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 상 ~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 상 및 장 애 인	90	150	180	210	240	- 실직 후 워크넷 (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피보험 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 년 이상																							
30세 미 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 상 ~ 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 상 및 장 애 인	90	150	180	210	240																							
연 장 급 여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급(최대 2년)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고용센터에 1~4주 범위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자	60일간 구직급여의 70% 지급	고용센터에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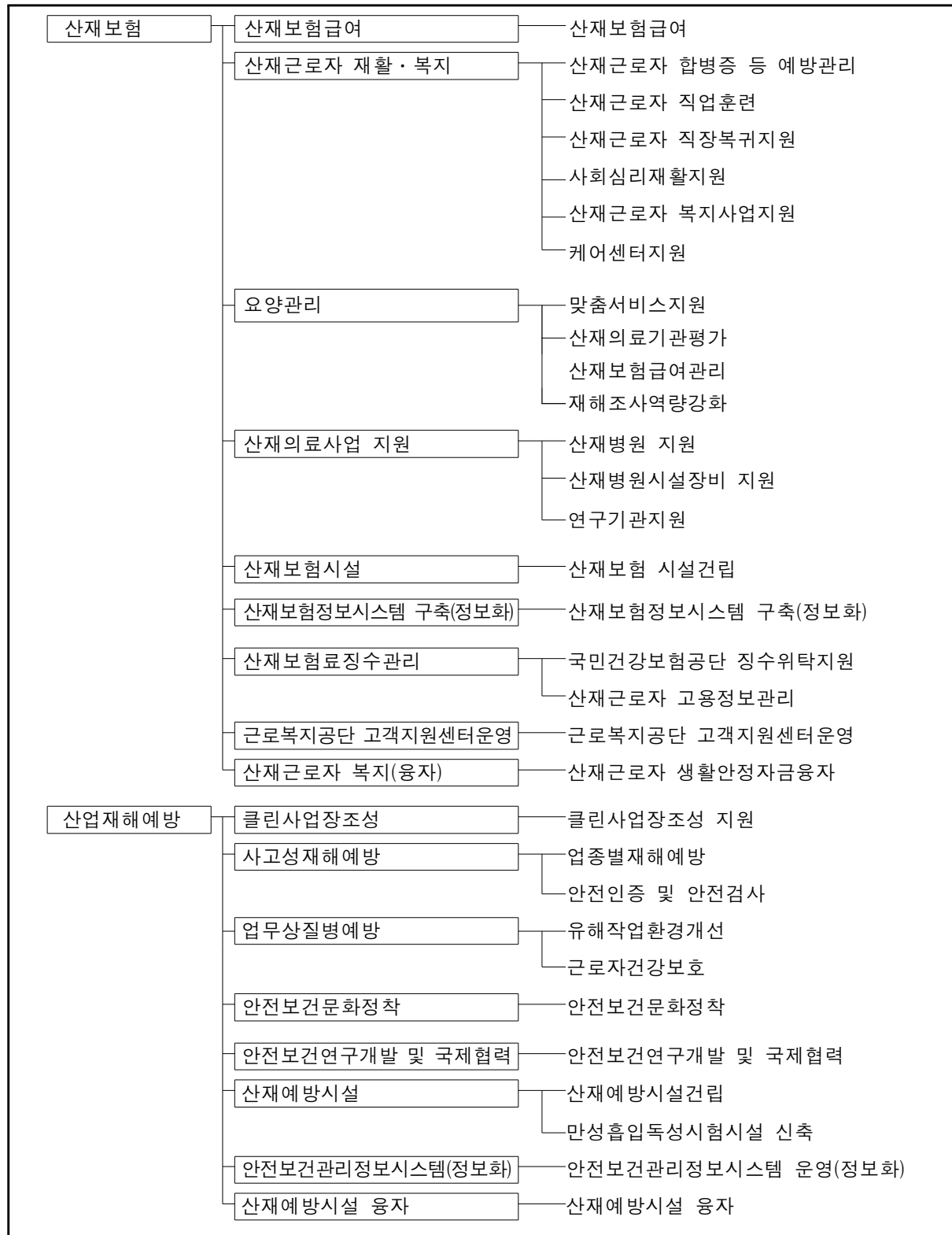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취 업 촉 진 수 당	조기 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지급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제출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 활 동 비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 숙박료: 실비(1일 40,000원 한도) - 운임: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이주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5톤 이하는 실비(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 7.5톤까지 50%), 사다리차 포함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육 아 휴 직 급 여 등	육아휴직 급 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로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 - 상한액: 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 단, 월 실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 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 최고: 135만원~ 405만원 - 최저: 최저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구직급여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6개월동안 적자 발생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자연재해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소정급여일수] (단위 : 일) <table border="1"> <tr> <th>가 업 기 간</th><th>1년 이상 3년 미만</th><th>3년 이상 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th></tr> <tr> <th>급 여 일 수</th><td>90</td><td>120</td><td>150</td><td>180</td></tr> </table>	가 업 기 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 여 일 수	90	120	150	180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가 업 기 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 여 일 수	90	120	150	180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직무 수행 능력 향상 지원	• 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해당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지원	• 훈련비용의 100% ※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6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내일 배움 카드제	• 대상: 영세 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자격 취득)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그만둔 경우 • 지원요건: 카드를 발급 받고 자비부담액을 납부하고 훈련을 수강한 경우 ※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훈련비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50~100% 지원 ※ 훈련분야에 따라 훈련비의 일정비율은 훈련생이 부담 • 훈련장려금: 단위기간 출석을 80% 이상인 경우 지원 - 1일 5시간 미만: 2,5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50천원 한도) - 1일 5시간 이상: 5,800원 × 단위기간 출석일수(116천원 한도)	• 구직 등록 → 취업상담 → 교육동영상 이수 → 훈련상담 → 훈련과정 선택(최대 5개) → 고용 센터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신청서』를 제출										
자영업자 전직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보험 가입 이후 폐업 등으로 실직하였거나, 전직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 재취업(창업)에 필요한 전직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상담, 진단, 재취업교육,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등) • 전직지원에 참여하는 자영업자에게 참여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노사발전재단에 서비스 신청										

■ 사업체계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내용 >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 기준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산재보험급여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산재환자에 대하여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	· 진료비(진찰,처치,수술등) 전액 - 현물급여 * 병원으로 직접 지급 * 본인 부담금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해자에게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 평균임금의 70% 지급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및 고령자 감액제도 운영('08.7.1. 시행) * 평균임금최고·최저보상기준고시(2013년 기준) 최고 : 1일 180,919원 최저 : 1일 50,255원 * 최저임금 : 41,680원(2014년 기준)
- 장애급여	· 치료종결후 신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상태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애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 1~3급 : 연금 지급(1~4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선급금의 2% 이자 공제) *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1~2년분 선급금 청구시 50%만 지급, 선급금의 2% 이자 공제) * 8~14급 :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50% 일시금 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 후 장애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 1일 3만원 내외 지급 * 상시 간병 1일당 41,170원 * 수시 간병 1일당 27,450원 (2014년 8월 기준)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중인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의비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 최고13,459천원, 최저 9,539천원(2014년 기준)
- 진폐연금	· 요양하거나 진폐장해 판정받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진폐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 지급	· 기초연금 : 최저임금의 60% · 진폐장해연금 :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매월 평균임금의 11일분~월 2일분 · 진폐유족연금 : 사망전 진폐보상연금 금액 * 유족보상연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해인(1~12급)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거나, 원직장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 지원('08.7.1.시행)	· 직업훈련비용 - 훈련비 : 고시금액/1인 -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100%까지 차등지급/1인 · 직장복귀지원금 - 1~3급 : 600천원/1인 - 4~9급 : 450천원/1인 - 10급~12급 : 300천원/1인 · 직장적응훈련 : 450천원/1인 · 재활운동지원 : 150천원/1인
○ 산재근로자재활·복지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치료종결 환자가 상병의 특성상 발생하는 합병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진료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용 지원	· 진료대상 : 42개 상병군('14.5.01.) · 진료기간 : 예방관리 증상별로 치료 종결 후 1~5년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산재장해인(1~12급)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요양종결 1년 경과 3년 이내인 자)	· 훈련비용 : 600만원/1인 · 훈련수당 : 최저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훈련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1인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반 재활서비스 운영 비용 · 산재장해자(1~9급)를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 지원 ('08.6.30. 이전 요양종결자 대상)	· 직업능력 강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상담역량 강화 등 · 직장복귀 지원: 창업지원 컨설팅, 전세권 설정, 취업실태 및 패널조사, 학술연구 등 · 직장복귀일로부터 6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지원금 지급 * 1~3급 : 600,000원/인 * 4~9급 : 450,000원/인
- 사회심리 재활 지원	·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손상된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회복시켜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지원	· 요양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산재근로자에 대한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등 재활스포츠 비용 지원 (월10만원 범위, 최장 3개월) ·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 진폐환자 수용 의료기관이 취미활동반 운영시 산재환자 1인당 월 3만5천원 지원 ·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경험을 공유·전파하는 재활멘토링 운영
-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교육 기회 제공과 건전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장학사업, 가족복지 프로그램 지원	· 고등학생 학비 전액 무상지원 - 산재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제1~7급 및 그 자녀 · 산재가족 복지사업 등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케어센터지원	· 중증·고령의 산재장애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유지와 그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간병시설(케어센터) 운영 지원	· 경기케어센터: 60세 이상 장애 1~3급자 - 시설비용: 간병급여수급자는 간병급여액 전액, 미수급자는 월 509천원(본인부담) · 강원케어센터: 65세 이상의 진폐장애인 - 시설비용: 월 246천원('14년 본인부담) - 수지차지원 2,960백만원 * 경기케어:1,571백만원(수입 885-지출 2,456) * 강원케어:1,389백만원(수입 263-지출 1,652)
○ 요양관리		
- 맞춤형서비스 지원	·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산재 근로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요양·재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업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	· 산재의료전문위원 운영: 2,338백만원 · 의료영상저장전달장치(PACS) 설치 운영: 271백만원 ·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 122백만원 · 상담전용차량 지원: 194백만원 · 상병코드오류데이터 보정: 100백만원 · 잡코디네이터 양성 및 전문교육 강화: 500백만원 · 영세사업장의 산재인식개선사업: 100백만원 · 자문의사 수당 및 자문의사 회의비용:3,507백만원
-산재의료기관평가	·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의료서비스나 그밖에 요양의 질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	· 평가전담반 운영: 230백만원 · 평가결과분석 및 항목개발: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개최: 18백만원 · 현지평가실시: 89백만원
- 산재보험 급여관리	· 산재보험 범죄 방지 및 적발을 통한 산재보험급여 누수 방지로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보호	· 조사역량 강화: 116백만원 ·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160백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 248백만원 · 자문위원회 운영: 21백만원 · 조사 업무 및 장비 지원 등: 442백만원
- 재해조사역량강화	·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재해조사서 및 판정서 품질 제고, 재해조사 장비지원 등 재해조사역량강화를 통해 재해조사·판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제고	· 재해조사 전문교육과정개설: 126백만원 · 재해조사서 및 판정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103백만원 · 재해조사지원 인프라 구축: 684백만원
○ 산재의료사업 지원		
- 산재병원지원	·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치료효과 향상 및 잔존 장애 경감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재활 전문센터 및 대구병원, 산재 병원(본부) 수지차 지원	· 산재병원 7개소에 설치된 재활전문센터 수지차 지원 - 수지차지원 4,270백만원 * 수입 4,194백만원 - 지출 8,464백만원 · 대구재활전문병원 수지차지원 - 수지차지원 3,363백만원 * 수입 12,031백만원 - 지출 15,394백만원 · 산재병원본부 운영비 지원 - 본부직원 인건비지원 3,600백만원
-산재병원시설장비 지원	· 재활·연구 장비 및 시설현대화 지원	· 노후 안전시설 개선: 14,953백만원 · 의료 및 재활전문장비: 6,14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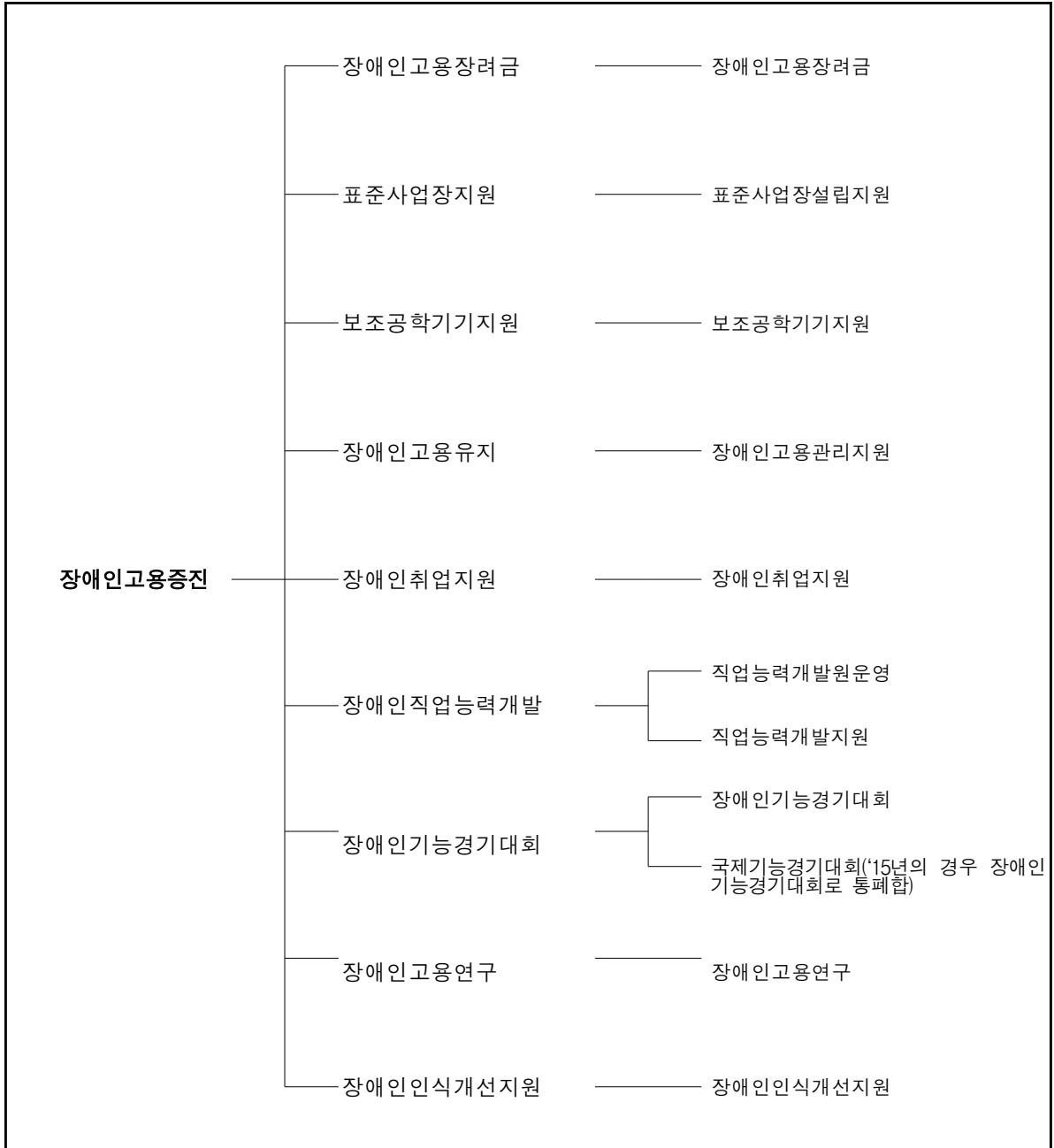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연구기관지원	· 산재장애인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진폐 등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역학조사 시행	· 재활공학연구소 : 4,965백만원 - 운영비 수지차지원 4,285백만원 *수입 8,310백만원-지출 12,595백만원 - 연구장비 680백만원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 2,193백만원 - 운영비 : 2,108백만원 - 연구장비 : 85백만원
○ 산재보험시설		
- 산재보험시설	· 민원업무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재보험시설 건립	· 본부 신사옥 채권매입비 : 977백만원 · 의정부지사 건립 : 5,134백만원 · 충주지사 증축 및 리모델링 : 3,917백만원 · 공동직장어린이집 : 1,329백만원 · 소속기관 개보수 : 3,081백만원
○ 산재보험정보 시스템 구축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 안정적인 산재보험 및 산재 의료사업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운영 경비 : 9,643백만원 · 산재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 3,017백만원 · 개인정보 암호화 도입 : 2,433백만원
○ 산재보험료징수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위탁지원	· 보험료 징수사업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수수료 지원	· 인건비(168명) 9,019백만원, 관리 167백만원, 사업비 5,546백만원)
- 산재근로자 고용정보관리	· 월부과고지 징수체계 도입에 따른 근로자 고용정보관리 지원	· 고용정보관리사업비 : 989백만원 · 보험료부과전문인력 확충 및 운영(51명) : 1,165백만원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운영	· 산재보험 징수·보상에 대한 민원(전화,인터넷 등),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위탁사업비 : 3,2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471백만원 · 상담실 설치 공사비 : 258백만원 · 자산취득비 : 189백만원
○ 산재근로자복지용자		
- 생활안정자금용자	· 산재근로자 (1급~9급), 상병 보상연금수급근로자 및 산재 사망자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용자 · 산재장애인에게 창업점포를 임대 지원함으로써 원직장복귀 또는 재취업 곤란한 자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공	· 생활안정자금용자 - 신용대부 : 20백만원 한도/가구당 - 연리 3%,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창업점포지원 - 연리 3% - 최장 6년까지 운영 후 전세권 반납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클린사업장조성		
- 클린사업장조성 지원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79,500백만원 ※ 소요비용의 50~70%,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클린사업장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경비 : 2,000백만원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사고성재해예방		
- 업종별재해예방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11,237백만원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25,287백만원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2,560백만원 · 심사확인 업무 : 7,278백만원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 및 인증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3,000백만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2,127백만원 ·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 252백만원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 1,618백만원
○ 업무상질병예방		
- 유해작업환경개선	·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지원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8,446백만원 · 유해작업환경개선 및 평가 : 1,653백만원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 5,611백만원
- 근로자건강보호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및 직업병 예방활동 추진	· 근로자건강센터 : 12,150백만원 · 근로자건강증진 활동지원 : 2,214백만원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2,291백만원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932백만원
○ 안전보건문화정착		
- 안전보건문화정착	·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보건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를 통한 범국민 안전의식 확산	·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 17,059백만원 · 전문교육과정운영 : 3,206백만원 · 안전보건문화선진화 : 7,073백만원 · 민간기관재해예방활동지원 : 3,000백만원
○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 안전보건분야별 연구 및 학술정보 공유, 선진외국 안전보건전문기관과의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산업재해발생현황 및 원인 등 통계생산	· 안전보건연구사업 : 4,231백만원 · 국제협력사업 : 4,893백만원 · 산업재해통계 : 1,213백만원
○ 산재예방시설		
- 산재예방시설건립	· 산재예방시설건립 및 리모델링	· 본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 2,871백만원
-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신축	·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신축	·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신축(3년차, 건축비 및 설비비) : 22,315백만원
○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주요 단위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 안전보건관리정보 시스템운영	· 산재 예방정보시스템 보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통신 보안강화, 정보화 사무환경개선 및 임직원 정보화교육,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이용환경 조성	· 안전 보건 관리정보시스템운영 : 3,313백만원
○ 산재예방시설용자		
- 산재예방시설용자	·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	· 산재 예방시설 용자 : 200,000백만원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5억원 한도

■ 사업체계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장애인고용증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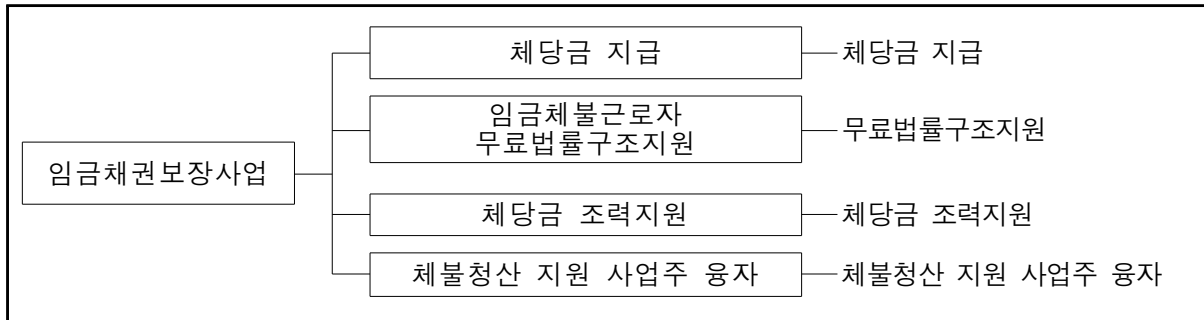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업주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사업주 2.7%,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 월 15~50만원을 지급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기간 계속 지원 ※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최저임금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한 경우만 지원 대상	매분기 다음달부터 사업주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표준 사업장 지원	표준 사업장 설립지원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상시근로자의 30%이상, 그 중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고용하여 7년간 고용유지 * 100명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이상 300명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0%+5명, 300명이상은 상시근로자수의 5%+20명	- 신규 10~15명 고용은 3억원 이내, 16~20명 고용은 5억원 이내, 21~25명 고용은 7억원 이내, 26~30명 고용은 9억원 이내, 31명 이상은 10억원 이내로 각각 지원 ※ 실제 투자한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매년 1월~2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기간내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보조공학 기기지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고용유지조건 지원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3백만원(중증 5백만원) 한도로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고용유지조건)은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수시로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고용 유지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선임·위촉·배치한 경우와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 ※ 직업생활상담 '10년, 수화통역비용지원 사업은 '11년도에 폐지되어 이전 수급인정분에 한해서 비용지원	-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3년간 지급하고, 작업지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지급(최대 5명) ※ 근로지원인 지원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지속지원가능	- 수급자격 인정 후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 근로지원인 지원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익월 초까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비용 신청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 애 인 취 업 지 원	장애인 취업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 장애인 중 구직 등록한 경우	•구직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 평가,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경우 참여 장애인에게 1일 17,000원, 사업주에게 1일 19,110원을 3~7주간 지원하고, 시험고용의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지원고용은 훈련 종료 후 참여일수에 따라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 시험고용의 경우 매월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장 애 인 직 업 능 력 개 발	직업능력 개발원 운영	•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한 경우	•장애인 훈련수당 ·훈련준비금(6일 이상 출석 한 훈련생, 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월 7만원),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최대 3인), 훈련참여수당(세대주가 아닌 훈련생, 월 5만원), 교통비(월 5만원), 식비(월 6만원) ※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훈련기간 ·1개월 이상 최대 2년 이내	•매월 훈련실시 후 익월 초 장애인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원
	직업능력 개발지원	• 민간훈련기관 지원 -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공단 위탁 민간훈련기관에 입학한 경우 • 공공훈련기관 지원 - 구직 장애인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에 입학한 경우 • 훈련수강료 지원 - 15세 이상의 구직 장애인이 국가자격·면허 취득과정 또는 공무원 시험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민간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 훈련수당 ·훈련준비금(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월 7만원),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최대 3인), 훈련참여수당(세대주가 아닌 훈련생, 월 5만원), 교통비(월 5만원), 식비(월 6만원) ※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훈련기관 훈련비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 110%) * 조정계수 *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 * 평균훈련생수』로 산정한 금액 • 공공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 훈련수당 ·민간훈련기관 내역과 동일 ※ 해당 공공훈련기관에서 유사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자 제외 - 교사수당 ·훈련생 1인당 월 2만원(최대 6만원) ※ 훈련과정의 장애인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지원 • 훈련수강료 지원 -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학원비 전액	•매월 훈련실시 후 10일 이내에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장애 인 기 능 경 기 대 회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적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연 1회 개최) 입상자, 장려상 수상자에게 상금 지급 - 참가자(기권, 실격, 부정 행위자 제외)에게는 참가 장려금 지급	• 상금(정규직종 기준) - 지방,지적장애인기능대회 : 금 50만원, 은 30만원, 동 20만원 - 전국기능대회 : 금 1,200만원, 은 800만원, 동 400만원, 장려150만원 • 참가장려금 - 지방·지적장애인기능대회 : 5만원 - 전국기능대회 : 10만원	• 채점 및 기능경기 종료 후 입상자 및 장려상 수상자, 참가자를 확인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해당비용 지급
	국제기능 경기대회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입상 다음연도 부터 20년간 연1회 기능 장려금 지급	• 기능장려금(10년차 이상 기준) - 입상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연1회 지급 - 금 840만원, 은 505만원, 동 346만원	• 매년 6월까지 지급신청서를 공단본부에 신청
장애인 고용 연구	장애인 고용연구	• 장애인 고용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해 장애인 고용 정책 기초자료를 보급하고 관련통계자료 제공	• 연구개발 부문 - 장애인 관련 각종 연구 보고서, 기초통계집, 고용 정보서 및 현장 매뉴얼 제공 •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실시	•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 장애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계속사업 평가등을 통해 민간단체 선정	•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고용인식개선사업연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매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사업체제도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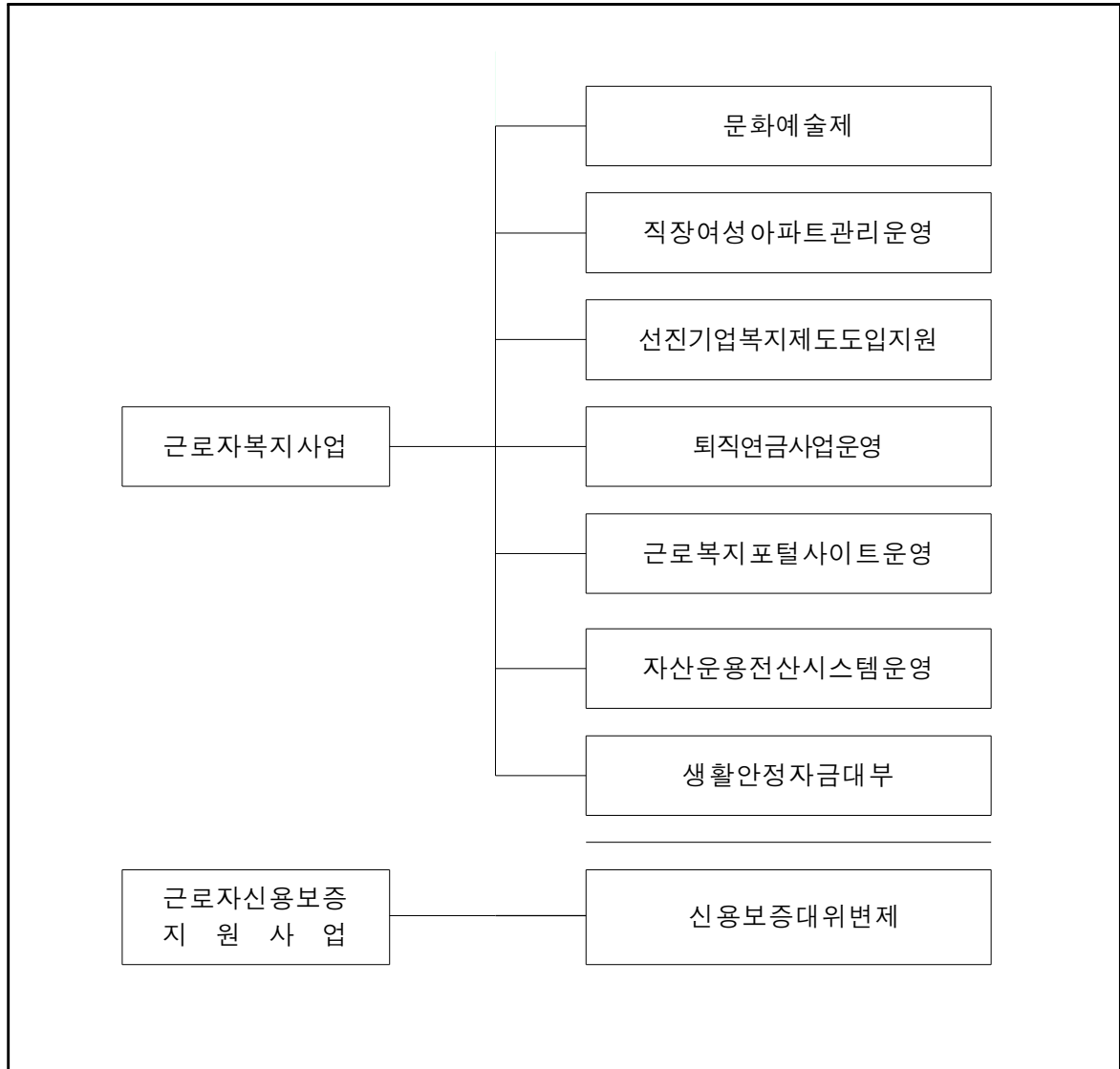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임금채권보장사업 >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 원 금 신 청 절 차
체당금 지급	-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자 -사업주요건 :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 도산한 사업주 -근로자요건 :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일 1년전인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최종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다만, 다음월정상한액 초과시 월정상한액을 지급 ※30세미만: 180만원 30세~40세미만: 260만원 40세~50세미만: 300만원 50세~60세미만: 280만원 60세이상: 210만원 -휴업수당은 위상한액의 70%	-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확인 신청 및 체당금지급 청구 -지방노동관서 체당금 지급액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토록 이첩 -지급
임금채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근로자가 임금채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채불 사실을 확인 →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한 사건	임금채불관련 민사절차(본안, 소액심판, 보존, 강제집행 등) 일체에 대한 비용일체(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고용노동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요비용 출연 → 동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 실시
체당금 조력지원	일정규모(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있도록 지원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체당금 청구 1인당 6만원	- 조력지원을 한 공인노무사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조력지원비용신청 -지방노동관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사업주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융자금액) 사업장 당 최저 1백만원,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4.5%, 담보제공시 연리 3.0%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방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조사) → 근로복지공단(융자신청수령, 요건 확인) → 은행 (융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미수채권관리)

■ 사업체계도

<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내용 >



사업내용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 청 절 차
근로자 복지 사업	문화예술포럼	○ 참가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및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 해외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미술·문학·음악·연극분야별로 작품접수를 받아 심사 후 시상, 수상작품 전시, 작품집 발간 및 분야별 금상 이상 수상자 해외문화체험	○ 접수기간내 참가신청서 및 작품 접수 ※금액지원이 아님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미혼(독신기혼)여성근로자	○계약기간 2년 ○임대료(큰방 기준) -임대보증금 400,000원 -월임대료 70,000원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속
	선진기업복지제도도입지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선진기업복지제도(EAP, 선택적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퇴직연금) 도입 지원 -기업 진단/평가/설계	○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으로 서비스 신청 -권역별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에서 전문컨설팅 실시
	퇴직연금 사업운영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퇴직연금 서비스 제도 운영(2012년 7.26부터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서비스 제공)	○근로자 퇴직시 신청하면 적립금 및 운용수익 포함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	○자소득근로자, 일반근로자 및 중소·영세기업	○6개 주요 콘텐츠(개인별맞춤복지, 근로자지원상담, 선택적복지, 선진기업복지, 복지상품몰, 어울림마당)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속
	자산운용 전산시스템운영	○근로복지진흥기금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자산배분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성과평가시스템, 기타 지원시스템	
생활안정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의료비, 노부모요양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6월 이상 재직중이고 사업장 경영상 조치로 월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로 저하된 근로자(임금감소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소득 140만원 이하근로자(소득임금감소생계비)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부한도 : 종류별 1,000만원(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300만원, 소득임금감소생계비 200만원) ○대부이율 : 연 3.0% ○상환기간 : 1년까지 3년분할상환(소득임금감소생계비는 1년거치년 분할상환)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 및 적격자 선발 후 용자에 정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대행금융기관의 대부수속 절차를 거친 후 대부금 수령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신 청 절 차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신용보증대위변제	○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재직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 임금체불생계비 · 대학학자금 - 산재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 대학학자금 · 요양비대부 - 실업자 · 직업훈련생계비	○ 각 대부사업의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최고 1,000만원(다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학학자금 및 고용보험학자금 2,000만원) ※ 1인당 보증한도 내에서 융자사업간 중복보증 가능 ※ 보증료는 대부사업별로 연 0.3~1.0%징수	○ 신용보증지원 대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자격심사 후 신용보증지원 결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현황도

■ 일반회계 : 1개부문 - 9개 프로그램 - 51개 단위사업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1. 노동(086)	1. 고용정책(1000)	1.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2.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3.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1034)
		4. 해외취업지원(1035)
		5. 대상별취업지원(1036)
		6. 사회적기업육성(1037)
		7.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8.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9.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10. 한국잡월드운영(1049)
		11.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50)
		12.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1051)
		1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055)
		14.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 및 보급(1056)
		15.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구축(1058)
		16. 실업크레딧지원(1060)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2. 직업능력개발(1100)	1. 실업자능력개발지원(1131)
		2.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1134)
		3. 한국폴리텍대학출연(1135)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1136)
		5. 국가·민간자격관리(1138)
	3. 고용평등실현(1300)	1. 고용평등환경개선(1331)
		2. 장년희망찾기지원(1336)
	4. 노사정책(2000)	1. 노사협력(2031)
		2. 노사문화구축(2032)
		3. 노사발전재단지원(2036)
	5.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1. 근로조건보호(3031)
		2. 근로감독행정(3032)
		3. 퇴직급여정착지원(3034)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6. 국제 고용노동협력(5000)	1. 국제기구협력지원(5031)
	2. 국제 노동교류협력(5032)
	3. 외국인력 관리지원(5033)
7.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1. 본부인건비(7001)
	2. 소속기관인건비(7002)
	3. 지방청인건비(7007)
	4. 본부기본경비(7011)
	5. 소속기관기본경비(7018)
	6. 지방청기본경비(7024)
	7. 정책연구개발(7031)
	8. 고용노동행정혁신(7032)
	9.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
	10. 청관사유지(7036)
	11. 고객상담센터운영(7038)
	12. 노동위원회운영(7039)
	13. 노사정위원회운영(7040)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8. 지방고용노동행정(7100)	1. 지방고용노동관서운영(7101)
	9.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8400)	1.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고용보험운영)(8420)
		2.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8421)
		3.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8422)
		4.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기금으로의 전출금(장애인기금운영)(8424)
		5.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의 전출금(임채기금운영)(842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개 부문 - 1개 프로그램 - 1개 단위사업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1. 노동(086)	1. 산업재해예방(4100)	1. 진폐근로자보호(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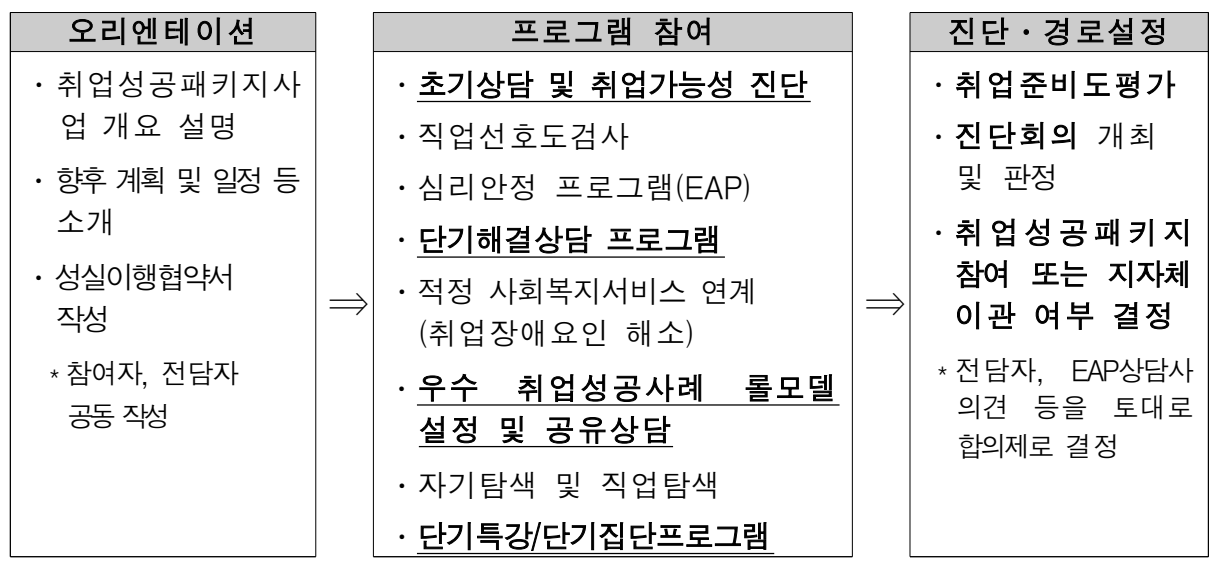
- 지역발전특별회계 : 1개 부문 - 2개 프로그램 - 4개 단위사업

부 문	프 로 그 램	단 위 사 업
1. 노동(086)	1. 고용정책(1000)	1. 사회적기업육성(1037) * 생활기반계정
		2. 사회적기업육성(1037)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1. 제주이관업무지원(7041)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 자 치 단 체 직 업 능 력 개 발 지 원 (제 주) (7042)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참고자료 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 **(의의)**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동기 및 의욕을 제고하고, 취업가능성을 토대로 이들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적정 자활경로 설정
 - * 종전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자활역량평가 절차를 폐지하고, 고용센터에서 취업가능성에 따른 자활경로 설정 업무 수행
- **(사전단계 운영)** 원칙적으로 1개월간 운용하고, 프로그램 참여 일당 실비 2만원(최대 20만원) 지급
 - 예외적으로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참여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최장 2개월)
 - * 사전단계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취업을 원하는 자는 전담자 재량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바로 배치하여 집중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1개월간 최소 4회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최종단계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적정 자활경로 설정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



- **(참여자 관리)** 기초수급자 전담반을 지정·운용하고,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 단계 밀착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4】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나의 소중한 첫 번째 일자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2014.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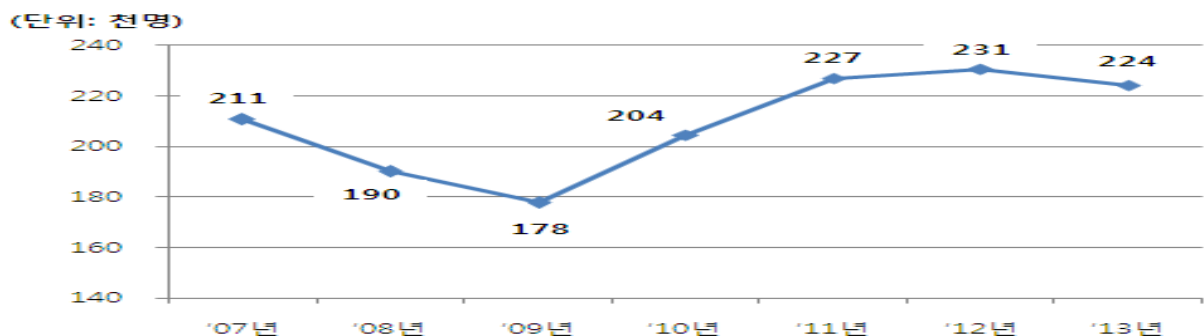
I.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 청소년 근로자 현황

- 15~19세 청소년 근로자는 '09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13년 22만명 수준임

- 방학기간(12~2월, 7~8월)에는 28만명까지 증가하고 있음

< 15~19세 청소년 근로자 추이 >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특성화고 등 학생의 현장실습은 매년 하반기~익년 2월 실시되며('13년도 28천개 사업장에서 64천명),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사례도 다수 있음

□ 근로실태 및 부당경험

- 청소년들은 주로 음식점(패스트푸드 포함),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전단지 돌리기 등 임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활동을 하나

- 근로조건이 취약하여 최저임금(미만율 22.2%), 서면근로계약(체결율 20.8%), 임금체불(14.2%)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며

- 기타 폭언, 성희롱, 업무 중 재해 미보상 등 부당경험을 겪는 것으로 조사 됨

-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참고 일하거나(33.2%), 일을 그만두는(24.3%)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며

- 고용부나 경찰(3.8%), 교사(1.2%), 민간단체(0.7%) 등을 통한 권익구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13년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

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개선방향

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 각종 법령·제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지 못함
- ⇒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에 찾아가는 특강 실시, 민-관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

②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폰 앱 등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권익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
- ⇒ 「정보제공-상담·신고-권리구제」로 이어지는 통합시스템 구축,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권익 보호

③ 사업장 감독

-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3천여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근로조건 지킴이」 제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
- * 법위반율 '11년 88.0% → '12년 91.8% → '13년 84.1% → '14.3월 69.2%
- ⇒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예방효과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필요



Ⅲ.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①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 수요자 중심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방학 전 찾아가는 특강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해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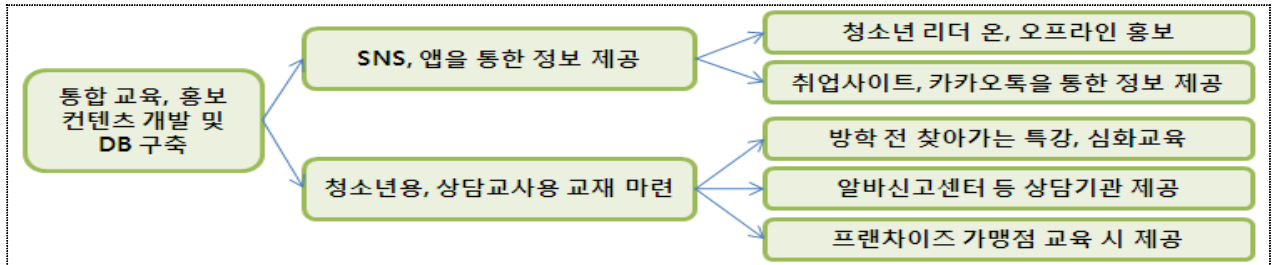
□ 권익 침해 유형별 노동법, 사회보험, 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상담·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DB 구축(6월)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등과 협조하여 유형별(임금체불, 폭언·폭행, 산재, 부당해고, 성추행 등) 관련 정보 제공

○ 수요자(청소년, 상담자, 교육실시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도구로 표준교재 제작·보급
-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SNS, 모바일 앱, 문자상담(#1388)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및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고용부·여가부 협업)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 「법 안자키는 일터 신고해 앱」(고용부) 활용



□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숙지하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확대

* '14년 모든 특성화고(32만명) → '15년 모든 특성화고 + 희망 일반고교

○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 실시(6~7월, 교육부 협조)

* 시·도 교육청별로 17개 지역(예: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고용노동청) 간 협업

** 교육 희망 공인노무사(76명) 및 지방관서 변호사·노무사(50명)로 강사풀 구성, 청소년이 알아야할 노동관계법 중심 교육 및 Q&A(2시간)

○ 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해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 운영('15년)

* 올바른 직업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이해, 진로설계 등 교육내용 다양화

② 상담·신고 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강화

□ 상담·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5월)

○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 운영

* 민: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노·사단체 등 / 관: 지방청, 교육청, 지자체

-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에게 교

육, 상담서비스 제공<알바신고센터 재정지원(10개소, 개소 당 500만원)>

-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이 교육 지원 및 신고사건 즉시 대응

□ 권리구제 요청 시 공인노무사 등 무료지원(5월)

-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 추진
 - 공인노무사회 등과 **MOU 체결**, 지방관서별로 2~4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 스마트폰 앱, 알바 취업정보 사이트 등을 통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14.下)

- 교육청(취업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사업장 명단을 연계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공하여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 구축
 -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완료 전 복귀자 발생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 우선 실시

* '14.4월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140개소) 대상 감독 및 실태조사 실시

③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법 위반 제재 기준 강화,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14일 이내 시정 시 1/2 감액

- 상반기 중 집중 홍보 및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 (현행)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 미부과

-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현행) 시정명령(즉시) → 불이행시 사법처리, (개선) 과태료 부과 → 시정시 일부 감면 → 미이행시 사법처리

□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분 감독 강화

- 비방학 기간(4~6월, 9~11월) 중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PC방, 주점, 만화방 등), 취약사업장(주유소, 택배집하장 등) 등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실시(900개소)

- 진로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비진학 청소년 지원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취업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 안내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심야시간(24시~6시) 야간근로 인가 제한

□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 은퇴한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100명 → 하반기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 강화(3월~)

- 지킴이가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우선 점검 실시

- 프랜차이즈별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의 가맹점 인사노무관리 교육, 근로자 고충처리 지원 등 협조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등 반기별 개최

IV. 갈등관리 및 홍보계획

① 갈등 관리

□ 예견되는 갈등

-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에 대하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의 반발 소지

* 서면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갈등 관리 방안

- **(서면근로계약)** 상반기 중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후 시행

*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홍보(표준계약서 및 홍보자료 배포, 버스측면·라디오 광고 등)

- **(최저임금)** 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전 경과 기간 등을 두어 부담 최소화

② 대국민 홍보

□ 정부 내 협업 및 민간의 홍보수단 활용

- 고용부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홍보 실시

- 지방고용노동청 - 교육청 -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민간 매체(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천국, 알바몬 등)를 활용, 프랜차이즈 본사, 시민사회단체 등과 민관 협업 강화

□ 추진과제 달성 시 홍보 실시

- 추진과제 별로 성과 달성 시(예: 권익침해 유형별 DB 구축, 근로권익 특강 실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서비스 실시 등) 적극적 홍보

< 참고 1 >

담당부서 및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서	추진일정
1. 청소년·사업주에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①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		고용부, 여가부	'14.上
②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매칭을 통한 교육 실시		고용부, 교육부	'14.上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고용부 (고용노동연수원)	'15년
교육부 수업과정을 통한 근로권익 교육		교육부	'14년
③ 「청소년 리더」 온·오프라인 홍보 내실화		고용부	'14.上
④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고용부	'14.上
2.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① 상담·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용부, 교육부, 지자체 등	'14.上
알바신고센터 내실화		고용부	'14.上
②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고용부	'14.上
③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고용부, 교육부	'14.下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기준 강화			
①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고용부	'14.下
②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부문 감독 강화		고용부, 여가부	'14년
③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고용부	'14년

< 참고 2 >

세 부 보고 자료

I.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1. 청소년 근로자의 범위 및 수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이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임

○ 연소근로자 수는 2~3만명,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20만명 수준이나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150만명* 수준임

* 150만명 중 아르바이트생 비율은 알 수 없음

< 근로 청소년 수 연간 추이 >

(단위: 천명)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5이상~18미만	34	20	21	25	22	28	24
15이상~19이하	211	190	178	204	227	231	224
15이상~24이하	1,524	1,410	1,359	1,375	1,387	1,480	1,502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연소근로자와 19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방학기간 동안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 청소년 수 월간 추이('13년) >

(단위: 천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이상~18미만	33	30	25	18	24	24	23	17	19	23	24	30
15이상~19이하	288	259	198	180	199	203	260	244	206	208	202	242
15이상~24이하	1,528	1,461	1,402	1,425	1,506	1,520	1,596	1,522	1,510	1,487	1,531	1,541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실태 및 부당경험

*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중앙대) 결과 및 「2013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를 바탕으로 분석

□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실태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22.2%~50.7%) 전체근로자('13년 경찰 부가조사 결과 11.4%)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다만,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11년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감소하였음

<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

구 분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청소년 유니온
시간급	4,603원	-	-
최저임금 미만율	46.7%	22.2%	50.7%

- **(근로계약서)** 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율은 20% 수준으로 전체근로자('13년 경찰 부가조사 결과 55.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51%로 나타남

<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

구 분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청소년 유니온	사업장 감독
근로계약 체결율	23.0%	20.8%	22.2%	41.5%

- **(임금체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12.6%,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4.2%임

*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6%임

<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

구 분	'11년	'13년
	중앙대	연구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함	11.4%	12.6%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음	11.3%	14.2%

청소년의 목소리

- ◇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음. 청소년을 쓰는 업종과 지역이 한정돼 있으며 시급도 통일돼 있음. 홍대 고깃집은 시급 5천원, 인천지역 편의점을 시급 4천원임.
- ◇ 식사시간을 30분 밖에 안 주었음. 퇴근시간도 팀장님이 “추가시간은 그냥 니가 봉사한 거로 치자”면서 실제보다 줄여서 쓰게 했음.
- ◇ 사장은 “근로감독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줄테니 그 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음. 그런 식으로 어떤 위법사항도 적발되지 않았음.

□ **청소년 근로자의 부당경험 및 대응**(13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결과)

- **(폭언 및 성희롱)** 고용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청소년은 **8.6%**이며,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은 **1.9%**임
- **(상해 또는 질병)** 일하다 다친 것에 대해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4.1%**임

- (대응)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 청소년이 참고 일하거나(33.2%) 그냥 일을 그만 둔 경우(24.3%)가 많으며
 - 고용부나 경찰에 신고(3.8%)하거나 교사(1.2%) 또는 민간단체(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낮음
 - 특히,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도 9.8%임

청소년의 목소리

- ◇ 주위 청소년들이 미지급수당을 받고 싶어도 구제방법을 모르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다시 사장과 대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 청소년 근로시간을 훌쩍 넘긴 11시간을 일하게 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돈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레스토랑을 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청소년이 신고를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겠음.

□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 현장실습은 약 28천개소(특성화고 585개)에서 약 64천명의 학생을 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교육·훈련 실시
-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장시간 근로 등 근로조건이 취약하고
 - 폭행·안전사고, 성희롱 등 사고 발생 위험도 큰 상황

< 실태조사 결과('12.1월) >

- **(1일 실습시간)** 점검사업장의 33.9%(89개소), 실습생의 38.3%(757명)은 1일 8시간 초과 실습
 - **(1주 실습시간)** 점검사업장의 46.4%(124개소), 실습생 46.2%(914명)은 1주 40시간 초과
- **(야간·휴일실습 여부)** 야간실습은 점검사업장의 22.3%(61개소), 실습생의 35.4%(700명), 휴일실습은 점검사업장의 25.3%(67개소), 실습생의 30.5%(604명)가 이루어 짐
- **(실습수당 적정 지급여부)** 점검사업장의 12.4%(31개소)에서 실습생 120명에게 16,062천원의 실습수당 과소 지급

- ◆ **청소년의 주요 근로조건**(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은 성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험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 ⇒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장 감독 등 전반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
- ◆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률은 비교적 높으나('13년 96.9%)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 ⇒ 교육청과 협업하여 현장실습업체 전수 관리 체계 마련, 실습생 보호를 위한 문제사업장 관리 필요

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12.11월)을 관계부처 합동(고용부, 교육부, 여가부)으로 수립하여 진행

1. 사업장 감독 강화

- (감독대상 확대) 감독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당초 3,8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종합감독 계획 변경으로 3,000여 개소 점검

* '13년 3,057개소 감독, 사법처리 12개소, 과태료 2개소

- 특히, 여름방학 감독 시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11개 브랜드 770개소)하여 업체별 위반율 언론 보도

- (확인감독 실시) 점검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업체 확인 감독 실시

* 192개소 실시, 사법처리 4개소, 시정조치 41개소, 위반없음 147개소

- (평가)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율을 발표하는 등 효과는 있었으나 기존에 감독을 실시한 업종을 중심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한계

- (국회)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발표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청년 유니온) 법 위반업체에 대해 대부분 시정만 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등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하되,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취약한 업종을 발굴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기간제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추진 필요

2. 통합신고체계 구축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은퇴 전문 인력을 지킴이로 위촉(100명) 하여 사업장 방문을 통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13년 2,092개소 위반 · 의심사업장 적발, 65,574개소 사업장 홍보

- **(청소년 리더)**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들 「청소년 리더」로 선발하여 팀별 블로그 활동, 거리 캠페인 등 홍보 실시

* '13년 45개팀 220명

- **(평가)** 「청소년 리더」 활동은 또래 눈높이에 맞는 홍보로 인해 효과는 있었으나 신청한 청소년 대부분을 선발(인원 확대)하여 참여의지가 약한 리더들의 활동 미흡

- **(청년 유니온)** 「청소년 리더」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

* '13년 청소년 리더 : 특목고 6개팀 25명, 일반고 23팀 121명, 특성화고 7팀 32명, 중 · 대학교 9팀 43명

- ⇒ 제안서 심사를 통해 참여의지가 있는 「청소년 리더」를 선발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활동 독려

- **(알바신고센터 확충)**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

* '13년 242개소 설치(특성화고 151, 일반고 24, 중학교 2, 대학교 2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 기타 13) ⇒ 434건 상담(36개소), 84건(16개소) 사건 접수

- **(평가)** 알바신고센터 개소는 증가('12년 128개소 → '13년 242개소)했으나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함

- **(국회)**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는 학교의 운영의사, 실적 등을 반영하여 **통·폐합**하고,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는 지방관서와 협업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활성화**

- **(앱·대표전화)**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로 실시간 상담·신고

* '13.9월 신고전화 667건, 모바일 앱 431건

- **(평가)** 앱이 사업장 신고 기능만 있어 청소년의 활용도가 저조

* 다른 부처의 신고 앱도 활용 실적 저조

- **(국회)**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신고전화 운영 실적 부진 지적

⇒ 임금계산 기능, 노동법률 정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필요**

- **(전담 근로감독관)** 지방관서별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운영

- **(평가)** 다양한 기능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여 전담 근로감독관 유명무실, 일부 지방관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

⇒ 청소년 관련 지침 및 업무수행 등을 정리한 **전담 감독관 업무 매뉴얼 마련**, 지방관서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업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워크숍·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기 제고 필요**

3.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 **(청소년 교육)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제도·정책 포함**(교육부)

-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교육** 실시

- *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14년 5,209명), 「진로와 직업」은 선택교과로
고등학교 채택률은 80.4%('13년)임

-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에 따라 근로권익
교육 실시('13년 65개 학교 9,187명)

-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집체교육(3만명) 및 사이버 교육(9만명) 실시

- **(평가)**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간단한 노동관계법 소개 수준이며, 학
교 신청에 따른 근로권익 특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국회)**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

- **(청소년 유니온)**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교육청과 지방고용청 간의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특
강 및 고용노동연수원의 심화교육** 실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진로
와 직업」 스마트북 보완

-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 CEO 간담회 등 개최(2회)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협약 체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다짐 결
의(4.25, 11개 프랜차이즈 업체)

- **(평가)**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협약 체결 이후의 관리 미흡

* 가맹점주 자체 교육, 신고센터 운영,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

⇒ 프랜차이즈 업체와 반기별 회의체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홍보 실시)** 알바 10계명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업주, 유관기관 등에 연중 홍보 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 홍보 DVD 등 6종 187천부 제작·배포

Ⅲ.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계획

- ◆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② 상담·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권리구제 지원, ③ 사후 관리 측면의 사업장 감독, 제재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① 청소년, 사업주에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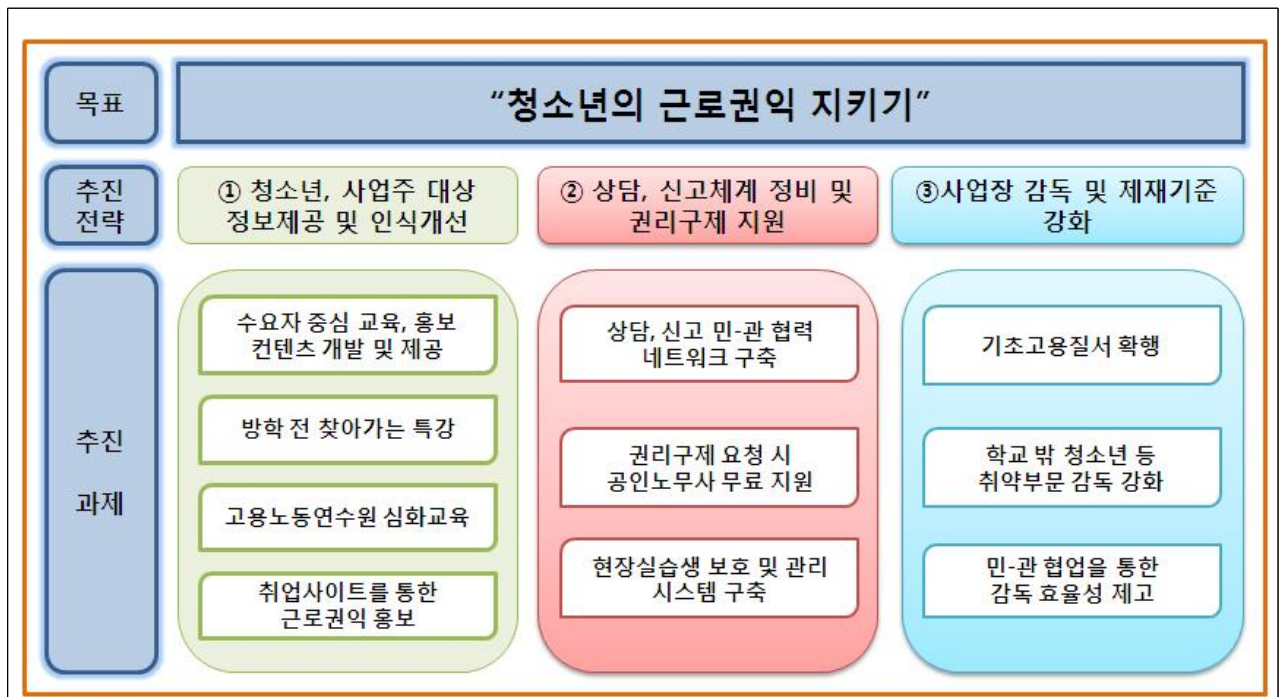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여 방학 전 찾아가는 특강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정보제공

②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에게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권리구제 무료 지원
-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

③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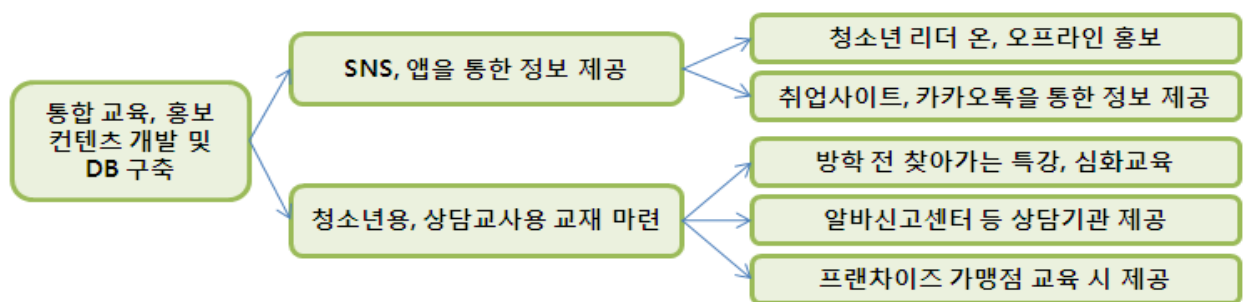
-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1.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① 청소년의 근로권익 교육·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 ◆ 노동권 관련 통합 DB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홍보자료를 작성하고 학교 및 사업주에게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 근로생활 취약요인별 교육 자료 집적(6월)

- 권익 침해 유형별 노동법, 사회보험, 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상담·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DB 구축

-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NGO 등과 협조하여 유형별(임금체불, 폭언·폭행, 산재, 부당해고, 성추행 등) 관련 정보 제공

□ 수요자(청소년, 상담자, 교육실시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6월)

○ 청소년 대상 노동권 및 사회생활 교육 자료 개발

- 중등, 고등교육별 정보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차등화
- 교육실시자의 활용 편의에 맞게 PT, 동영상,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도구로 표준교재 제작·보급

○ 학교 상담교사, 시민단체 상담사 등을 위한 심화 상담자료 보급(6월)

- 주요 사례별 권익보호 방법 안내자료, 관계기관 네트워크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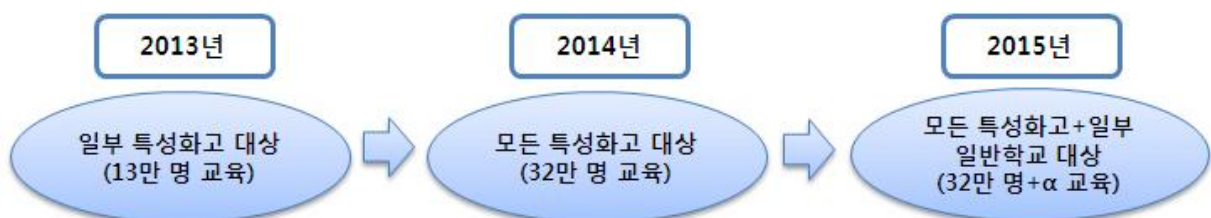
○ 청소년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SNS, 모바일 홍보·정보제공 강화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여가부 「대한민국 청소년」 활용), 문자상담(#1388 여가부),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을 통해 권익침해 유형별 대응요령 등 정보 제공

②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소년이 노동시장 진출 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알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 확대

- * 특성화 494개교(32만명), 일반1,525개교(136만명) 등 대상



□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교육청과 지방청 간 지역별로 협약을 체결한 후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 실시(6~7월, 교육부 협의)
- 지방관서 변호사·공인노무사(54명), 사회봉사 희망 노무사(76명) 등으로 강사 풀 구성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중심 교육 및 Q&A(2시간)

< 교육청과 지방청 간 협업(안) >

연번	교육청	관할(지)청	연번	교육청	관할(지)청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청	10	충북 교육청	청주시청
2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청	11	충남 교육청	보령(천안)지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청	12	전북 교육청	전주시청
4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부청	13	전남 교육청	목포지청
5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청	14	경북 교육청	대구서부지청
6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청	15	경남 교육청	창원지청
7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청	16	제주 교육청	제주감독과
8	경기 교육청	경기지청	17	세종 교육청	대전청
9	강원 교육청	강원지청			

☐ 「청소년 노동교육」 심화과정 운영(고용노동연수원)

- **청소년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14년)**
 - 집합(1박2일)·사이버 교육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교체
- **교육청, 학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화교육 실시('15년)**
 - 근로권익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의 필요성,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이해, 진로설계 등 교육내용 다양화

* '14년에는 기존에 진행 하던 집합교육(3만명), 사이버교육(10만명) 실시

☐ 교실에서의 수업과정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실시(연중, 교육부)

-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14년 5,209명), 커리어넷,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활동지 등에 근로권익 내용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스마트북 활동지는 고용부에서 제작하여 교육부에서 탑재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통교과인 「법과 사회」, 「실용 경제」와 전문교과인 「공업 일반」, 「해사 법규」,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과목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③ 「청소년 리더」 온·오프라인 홍보 내실화

☐ 중·고교·대학생 150명(약 25개팀)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에게 청소년 근로조건 온·오프라인 홍보(4월~)

* (온라인) 팀별로 블로그를 개설하여 웹툰, 영화 패러디 등을 통한 홍보
(오프라인) 길거리 홍보, 라디오 출연, 학교 방문 등을 통한 홍보

-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모든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스펙 쌓기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④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모니터링

- 청소년이 자주 활용하는 주요 취업사이트*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정보가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 알바몬, 알바천국, 알바인 등

☐ 정확한 취업 정보 등재 및 신고해 앱 링크 요청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 및 추후협의를 등의 내용 등재 금지
- 급여계산기 구성 시 주휴수당 반영, 노동관계법 설명자료 업데이트 (최저임금, 표준근로계약서, 알바10계명 등)
- 취업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사이버신고센터와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링크

〈 알바천국 사례 〉

- 관리자가 검수한 업체만을 모아 청소년 전문채용관 코너 운영
 - 알바 10계명, 노동법규 및 상식, 표준근로계약서 등 주요 양식 등재
 - * 표준근로계약서 (갑), (을)이 표시된 과거 자료 등록되어 있음



- 구인공고를 내는 업체의 급여 밑에 최저임금 시급 명시
 - * 급여계산기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4대보험 준수 서약한 공고의 경우 G마크(Guarantee) 부착

2. 상담·신고 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 ◆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리 및 실태조사 강화

① 상담·신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알바신고센터 내실화(5월)

-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는 상담·교육 및 신고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년 간 실적이 없는 알바신고센터 통·폐합

* 전체 242개소 중 '13년 434건 상담(36개소), 84건(16개소) 사건 접수

-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10개소, 개소 당 500만원 지원)

- 학교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 (예) 민간: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한국노총 상담실,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지킴이 등 자율적으로 선정, 정부: 지방청, 교육청, 지자체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②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리구제 무료지원(진정 대리 등) 방안 추진(5월)

○ 공인노무사회와 **MOU 체결**, 지방관서별로 2~4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위촉

* 공익적 차원의 업무로 소액의 실비(교통비 등)만 지원

** 신고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소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감안/ 현재 연소자를 위한 예약상담 및 방문상담제도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연소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현황 >

(단위: 건)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신고사건 처리건수	1,076	1,214	1,449	1,736	1,598	1,718

* 출처: 노사누리

③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보호 및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장실습생 전수 관리체계 마련('14.下)

○ 매년 하반기 중 관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사업장 명단을 연계된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제공하여 관내 현장실습업체 DB 구축

□ 문제사업장 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14.下)

○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완료 전 복귀자 발생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 우선 실시

* '14.4월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140개소) 대상 감독 및 실태조사 실시

** 현장실습 전 근로감독관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의 연락처 안내

- 법정 근로조건 위반 및 사내 문제발생 사업장 정보를 특성화고 등에 제공하여 취업지도 시 활용(교과부 특성화고 정보제공 홈페이지 활용)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법 위반 제재기준 강화,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 집중

①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 청소년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 확행을 위해 제재기준 강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14일 이내 시정 시 1/2 감액
 - * (현행) 적발 → 시정지시(14일) → 시정 시 과태료 미부과
 - 상반기 중 집중 홍보 및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 (현행) 시정명령(즉시) → 불이행시 사법처리, (개선) 과태료 부과 → 시정 시 일부 감면 → 미이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근거>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 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 근로시간·휴게 /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휴가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기간제법 제24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 1) 법 제1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
- 2) 법 제17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서면명시사항 1개 호당)

② 취약 청소년 보호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

- **비방학 기간(4~6월, 9~11월) 중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실시**(900개소, 여가부 협조)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PC방, 주점, 만화방 등), **취약사업장**(주유소, 택배집하장 등) 집중 점검
 - 기초고용질서(서면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및 주휴일, 야간근로 등 취약요인 시정
 - * 지방청 자체 수시감독으로 할당된 물량에 대해 비진학 청소년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지시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로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비진학 청소년 지원 연계**

-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취업프로그램 안내(취업성공패키지) 등 안내

□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및 감독 강화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심야시간(24시~06시) 야간근로 인가 제한

- 「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인가업무 처리지침」(’04.7월)에 따라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 귀가 등 안전을 고려하여 24시까지 제한적으로 인가하도록 지침 재 시달

* ’13년 연소자 야간근로 인가 15,844명 중 롯데리아가 74.1% 차지

↳ 롯데리아 본사는 근무시간이 22시가 넘어갈 수 있어 미리 인가를 받도록 지시, 심야시간(24시~6시)에 근무하는 연소자는 소수로 판단됨

○ 24시간 운영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근로자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조치 지도

③ 민-관 협업을 통한 감독 효율성 제고

□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인사노무관리 교육, 근로자 고충처리 지원 등 협조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 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자 협의회 등 반기별 개최

○ 업종별 주요 프랜차이즈 단위 근로감독을 통해 사회적 관심 환기

- 기초고용질서 위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법적 근로조건 점검 외에 부당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예방 지도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근로감독 연계 강화

- 은퇴한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100명→하반기 확대)하여 사업장 방문 점검 및 계도활동 강화(3월~)
- 홍보 실시 기준을 상향 조정(1일 5개소→8개소)하고, 유형별 홍보수단(리플릿, 만화) 제공
- 2인 1조 등 활동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무지 외 점검 시 교통비 추가 지원 등 활동 여건 개선
- 「지킴이증」도 일률적으로 제작·보급하여 명예 및 신뢰도 개선
- 지킴이가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우선 점검 실시
- * '13년에는 지킴이가 시정여부를 확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킴이가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

【참고자료 5】 2013년도 및 2014년도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 프랜 차이즈 사업장 점검결과

□ 2013년 여름방학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 결과

연번	프랜차이즈 명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위반건수
1	씨유	91	77	84.7	240
2	세븐일레븐	115	103	89.6	348
3	GS25	129	106	82.2	356
4	미니스톱	48	41	85.5	166
5	롯데리아	66	50	75.8	162
6	파리바게뜨	66	58	87.9	238
7	뚜레쥬르	37	32	86.5	113
8	배스킨라빈스	54	50	92.6	166
9	던킨도너츠	57	52	91.3	190
10	엔제리너스	51	41	80.4	116
11	카페베네	56	55	98.3	245
계		770	665	86.4	2,340

□ 2014 겨울방학 프랜차이즈 사업장 점검 결과

연번	프랜차이즈 명	점검 업체수	위반 업체수	위반율(%)	위반건수
1	씨유	98	77	78.6	201
2	세븐일레븐	89	67	75.3	150
3	GS25	97	80	82.5	184
4	한국 미니스톱	45	37	82.2	95
5	미스터 피자	63	46	73.0	105
6	도미노 피자	51	39	76.5	76
7	피자헛	52	27	51.9	62
8	피자 예땅	32	23	71.9	47
9	이디야 커피	56	41	73.2	102
10	스타벅스	53	8	15.1	10
11	할리스 커피	50	44	88.0	99
계		686	489	71.3	1,131

□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제)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 기재부·고용부·금융위·복지부·금감원·KDI·노동연·자본연·금융연·보사연·국민연금연구원 등 참여

○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쏘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①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 자료 : 금융감독원

②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 ③ (수령)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세부 정책과제]

① 가입 측면 : 퇴직연금 도입 · 가입 제고

- 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2019.1.1.	20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신규 적용대상 기업수)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 사외적립에 따른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허용하는 한편,
 - 30인 이하 사업장은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유도하여 퇴직 연금 운영 부담을 경감
 -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여 최소한의 이행력 확보
- ② (신설사업장 전환 촉진) 현행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未도입시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 [현행] '12.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설립 1년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未도입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③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15.7월 도입

- 기금에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전문적 자산운용을 도모
- 中企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15년부터 한시(3년) 재정지원 실시

*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 지원

④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

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

② 운용 측면 :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① (자산운용규제의 대폭 완화)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상향(40→70%),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 폐지

-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가입자의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등 병행

②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16.7월부터 도입

-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자산 운용·관리

-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

- 기금형 운용원칙에 맞도록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을 분리

③ **(DB형 제도 개선)** 확정급여형(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 도입 필요성과 기업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④ **(DC형 제도 개선)** 영세기업들이 연합하여 **DC형** 퇴직연금을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세부지침 마련을 통한 **표준형 DC** 활성화 방안 강구

⑤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예: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가능 상품) 출시

③ 수령 측면 :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

- ①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연금의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14.12월까지 마련
- ② **(DB형 사외적립 강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
* ('14~'15) 70% → ('16~'17) 80% → ('18~'19) 90% → ('20년 이후) 100%
- ③ **(DC형·IRP 예금자 보호)**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④ **(연금 수령시 세금부담 경감)**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개편
- ⑤ **(장기유지 유도)** 퇴직연금자산 담보대출 상품 개발 및 사유 확대, 개인 연금 장기유지시 **운용수수료 할인**을 통해 장기유지를 유도

【참고자료 7】 단기실태조사의 신설 필요성 검토¹⁷⁸⁾

□ 개요

- 최근의 고용 정책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야기된 고용구조의 변화로 정책 대상이 계층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음.
-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14.4.15, 관계부처합동)을 보면 기존의 정책들에 비해 청년층의 유형을 계층화,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음.
- 여기서, 관련 정책의 근거 자료는 기존의 청년관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자료는 스팟서베이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음.
 - ※ 청년·기업·학교대상 청년고용정책 필요도·선호도 조사('14, 기재부)
- 외국의 경우도 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패널 외에 단기 조사(스팟 서베이)를 운영함.
- 미국의 유사기관인 BLS(Bureau of Labour Statistics)에서도 특정 정책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단기 조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규 정책 수립시 기존 패널 조사나 행정 통계에서 살피볼 수 없는 계층 및 정성적 자료 수집을 위해 단기 조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앞으로의 고용 정책 대상은 특정화된 취업취약계층(예 : 장기미취업자, 중고령 재취업희망자, 경력단절여성 등)이나 일부 정책(예 : 시간제 근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178) 한국고용정보원 제출 자료임.

- 하지만 기존 패널 데이터로는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 가능하나 ①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하여 세부 분석이 불가능(유효 표본수 부족)하고, ② 정성적인 항목에 대하여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짐.

	패널 데이터	단기조사 데이터
조사 대상	계층 전체를 대표 - 예 : 청년층, 중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나 정책 대상자 - 예 : 청년 NEET, 시간선택제 근로 희망자 등
조사 내용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정량 지표 및 정성 지표 모두 가능
장점	계층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 변동 등에 대한 분석 용이함	비용이 적게 들고, 특정 계층이나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단점	비용이 많이 들고, 세부 계층에 대해서는 유효표본수 부족으로 대표성 있는 분석 불가	단기 조사로 상태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 사업 방법 및 대상

- 주제 선정 후에 면접 조사(설문조사/FGI) 및 온라인, 이메일, 모바일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한 단기간의 제한적 표본조사
- 년 3회(격월)의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추후 정부 3.0에 맞춰 응답자 그룹은 새로운 자산의 형식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 경력단절자, 청년무직자, 시간선택제일자리, 조기퇴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자영업자 등 핵심계층의 시의성 있는 고용정책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 최단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동향 및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제공

□ 필요성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해서 경력단절자, 청년무직자, 시간선택제일자리, 조기퇴직자, 실업급여수급자, 자영업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정책 기초통계자료 생산 수요 증가

□ 기대효과

-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생산함으로써 단기 정책분석 기능 강화와 신속한 신규 고용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입안자, 관련기간 연구자들에게 고용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연구 및 관련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 진행된 설문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DB화를 통해 기 진행된 조사 결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동일 조사의 추세 분석을 위해 활용

※ 美BLS 단기조사수행목록

[별첨 1]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Supplements 2005-2014(BLS parts)

주 제	조사시기	목 적	조사주기	지원기관
실직자 연구	2006, 2008, 2010, 2012, 2014	지난 5년 이내에 다니던 회사의 폐업, 비용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혹은 그 외의 일(work)과 관련 된 다른 이유로 인해 직업을 잃었거나 잃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격년	BLS
퇴직/직업이동	2006, 2008, 2010, 2012, 2014	현 직업에서의 재직기간을 측정 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요청	BLS
비정규직	2005	고용계약 유형(종류)별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복지혜택에 관해 조사하고, 현재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만족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BLS
사회 경제조사	2005-2014	가구배경, 가족구성, 혼인여부, 교육수준, 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해외출생여부, 전년도 총수입, 직업력(work experience), 교육 및 훈련 참여여부, 이주 등 가구 전반에 관한 조사.	매년	Census/ BLS
실업보험	2005	실업보험 수급 신청규모와 수급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실업보험 수급으로 인한 혜택 및 비수급자들의 미 신청 사유 등을 조사.		BLS
장애 근로자	2012	특정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 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노동력 인구비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근로 이력, 취업장애요인,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작업 공간 조정 혹은 이동(workplace accommodations) 등을 조사함.		BLS
출산	2006, 2008, 2010, 2012, 2014	15세-44세 사이 여성들의 자녀수와 자녀들의 특성들(characteristics)을 조사함.	격년	Census/ BLS
참전용사	2005-2014	베트남전 및 페르시안 걸프전 참전 미국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 참전용사들의 장애여부 및 장애로 인한 노동 참여제한 정도, 수입 및 전쟁참전용사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여부 등을 조사함.	격년, 2009년 이후 매년	BLS
봉사활동	2005-2014	미국인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자료 제공. 봉사활동 참여 횟수 및 참여 가능한 봉사활동의 종류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선택 된 봉사활동 종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참여 장애요인 및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 한 요소들에 대하여 조사함.		BLS, CNCS
학교입학	2005-2014	초, 중,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입학에 관한 조사.	매년	BLS/ Census/ NCES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과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형성, 모임참여, 정치적 행동 및 언론매체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얻는 횟수 등을 조사하여 개개인의 시민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BLS, CNCS

【참고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재보험개선권고 결정문(2012.5.1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 2003년 이후로 새로운 질병목록을 추가·보완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 회의에 산업의학전문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이 유

I. 권고 배경

서울행정법원은 2011. 6. 2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

망한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판결). 이는 그 동안 유사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이 행정소송의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만 남게 되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의 지연 및 비용가중의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11. 10.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 암 협약(Occupational Cancer Convention)」을 비준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동년 6월에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해 전반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2항,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b)

III.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검토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재해도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 대비 불승인율은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9.3% 증가하였고,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불승인율은 2007년 59.8%에서 2010년 85.6%로 25.8% 급증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도 2007년 44.7%에서 2010년 52.3%로 7.6% 증가하였다.

2010년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관련 질병 현황에

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 질병 중 1위,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은 점점 높아가는 추세이다.

암질환에 관하여는,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2007년 경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내 중앙 암등록사업부는 우리나라에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7년 발생한 암 환자 총 161,920명 중 3,238~12,954명이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2007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바, 우리의 산업구조가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반도체, 정보통신 부품 등 IT 제조) 및 서비스업의 확대로 변화함을 반영하여 상해 중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업무상 질병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절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 혹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통상 이 때,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문답서, 직업력 확인자료,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록 등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때는 '사업주 날인 누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및 질병의 업무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그 역학조사결과는 다시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피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절차이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V. 판단

1.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피해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위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결국 피해 근로자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상의 조사 및 증명에 대한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라는 주장(신청)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표한 바 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유해·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된 업무시간, 종사기간 및 업무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한 것인지, 유해·위험요인 취급 및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게 되므로 그 증명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입증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서, ‘어떤 사실의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판단을 받게 될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법률상의 입증책임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당해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제3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지, 이를 들어 입증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은 아니다. 또한 비록 입증책임이 소송상의 법리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비사법적 구체절차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여부의 판단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 바,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한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09. 12. 2. 선고 2009누8849판결(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두283판결)에서, 이러한 입증책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대한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의 증명 책임을 배분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주장된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의 이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질병의 업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2003. 7. 1. 이후로 위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8. 7. 1. 이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존재하던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동법 시행령 별표 3으로 바뀌면서,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이 삭제된 바 있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발생,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등을 조사·검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관련

2008. 7. 1.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내의 자문의사회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구성원들이 보건학, 통계학 그리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및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위생 관리 및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 위원회는 그 중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06년 54.3%에서 2009년 39.3%로 감소하였고,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40.1%에서 15.6%로 급감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연구동향 2010년 10월호). 이러한 통계수치가 바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지적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직원(고용노동부 퇴직 후 공단에 입사한 전직 공무원 포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별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는 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이해관계나 재정상황(연금수급권자의 누적증가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부족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담당업무, 발병경위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업무관련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를 강박, 회유하여 보험급여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사업주의 회유 등으로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이후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항변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해야 할 질병을 국민 건강보험이 떠맡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주 날인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2005년부터 사업주 날인이 없을 경우, '사업주 날인누락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에서도 피해 근로자가 보험급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가 기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이미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날인제도의 의의는 반감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그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막을 가능성도 있고, 사업주 날인제도 외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 날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7.

위원장 직무대행	장 명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참고자료 9】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개선방안 의결문(2014.5.26.)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33호**

의 안 명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고용노동부

의결연월일 **2014. 5. 26.**

주 문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5월 26일
위원장 이 성 보

【별지】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2014. 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관련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등 2011년 1,609건, 2012년 1,714건, 2013년 2,082건

○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업종과 사업장에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차등보험요율제도 허점을 악용하여 기업들이 산재 은폐

-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최고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로 은폐의혹 제기

※ 하인리히 법칙(대형사고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 발생)에 의하면 중대재해 1건이 발생하려면 경상이 29명, 위험한 행동이나 사건이 300건 발생

〈2008년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국제노동기구(ILO)

구분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스웨덴	이탈리아
부상만인율	62.7	282.9	102.0	355.4	64.1	244.5
사망만인율	1.59	0.20	0.21	1.00	0.15	0.40

○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는 관행으로 국민부담 가중

— < 보도자료(○○○○신문, 2013. 11.)>

- 산재 은폐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91억원에 달하고, 2013년 9월까지 은폐 사실이 적발된 경우만 539억원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2014~2018년 5년 동안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른다

☞ 제도개선 관련 국정과제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 추진경과

- 자료 분석 등 추진계획 수립 : 2014. 2.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014. 2.~4.
- 관계기관 협의 및 안건 상정 : 2014. 5.

II

일반현황

□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당연가입 사업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사업 :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사업장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
 -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산재보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 운영
-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

-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 ①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종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② 가구내 고용활동
-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2호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⑤ 「선원」·「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⑥ 제②호 부터 제⑤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요양중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보험 급여(8종)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보험료 산정기준

- 보험료 부담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적용(6/1,000~340/1,000)

-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 재해와 관련한 형평성을 위하여 과거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50/100 범위안에서 증감하여 적용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100

□ 산업재해 현황

(단위: 개소, 명, %)

연도	전 체 적용사업장 (개소)	근로자수 (명)	계					재해율 (%)
			계	사망	부상	신 체 장애자	업무상질병 이환자수	
2011	1,363,807	14,362,372	93,292	1,860	84,662	36,968	6,516	0.65
2012	1,424,838	15,548,423	92,256	1,864	83,349	37,323	6,742	0.59
증감(%)	61,031 (4.47)	1,186,051 (8.26)	-1,036 (-1.11)	4 (0.22)	-1,313 (-1.55)	355 (0.96)	226 (3.47)	-0.06

※ 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순수입(A)	순지출(B)	재정수지(A-B)	적립금(누계)
2010	50,299	43,332	6,697	55,569
2011	51,946	44,938	7,008	62,577
2012	59,149	47,134	12,015	74,578

□ 건강보험 환수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98	63,450	63	24,960	
2012	333	56,781	81	27,305	
2013	444	71,300	90	26,751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산업재해 보고의무 강화

1-1.

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 유인제 도입

□ 문제점

- 산재보험 가입자(원수급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자(사업주)의 책임자가 상이하여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 하수급인은 종속관계에 있는 원수급인의 압력에 의하여 은폐를 하고 사후 적발 또는 신고시 미보고 책임부담

< 실태조사 >

- A업체가 공장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판넬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기지급한 급여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징수처분 하자 위법·부당함을 행정심판 요구하였으나 기각(행정심판, '13. 12.11)

※ 행정심판 요구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원수급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11년 153건, '12년 137건, '13년 210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원수급인의 재해율을 하수급인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적용함에 따라 은폐 부작용 발생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사업장 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하인 경우는 최고 2점 가점
- 산재은폐 현황 조사결과 사업주의 경우 은폐율이 60% 수준이고 근로자의 경우 86.9%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리감독 미흡

- 연구기관별 산재은폐 현황 조사 결과

(단위 : %)

연도	조사기관	산재처리	산재미처리	비고
2000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30.9	69.1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1	노동건강연대	45.2	54.8	"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3.9	56.1	"
2006	대한전문건설협회	36.0	64.0	협회 자체 조사
200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5 (39.8)	75.5 (60.2)	소규모현장 산재보험 타당성분석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7.0	93.0	철콘업종 재해 및 공상처리 설문
200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3.1	86.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33개 업체 - 산재발생 : 총 497건 중 공 상처리 432건
2010	대한전문건설협회	33.5	66.5	협회 자체 조사
합계		32.5	67.4	

※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원·하청업체의 산재발생실태 및 산재은폐근절방안」 (2002년)

※ ()는 사용자 대상 설문자료임

□ 개선방안

○ 산재 미보고 사업주를 신고하도록 신고유인제 운영방안 마련

〈예시〉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정하여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성과 : 116억원('10년)→256억원('11년)→294억원('12년)

- 산재 미보고 사업주도 신고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신고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1-2.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 인상

□ 문제점

-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부과 받는 과태료보다 보고하여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큼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미흡

※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 1차 3백만원, 2차 6백만원, 3차 10백만원

< 보도자료 >

- '08년 영국의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지반 침하로 구덩이에 빠져 사망하고 3년후 법원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기업에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 벌금 7억원을 부과함(000 '13. 12. 23.)

※ 영국에서 「기업 살인법」이 '07년에 제정되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임

< 실태조사 >

- 아파트 신축 공사를 원청 000 건설업체가 하청 00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하청 소속근로자가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하면서 원청업체를 감점처분 대상업체로 보고함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입찰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산재사고가 아니라고 주장(고충민원 '13. 5.)

☐ 개선방안

○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합리적 상향 조정

- 사망, 중대재해 등 미보고시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미보고 및 거짓 보고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1-3. 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구 확대

☐ 문제점

- 산재발생 미신고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관할 지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 >

- 기업체가 산재 발생을 미신고 하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접수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조치 관련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함. 방문 또는 우편신고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수창구 마련요구 (국민신문고 '13. 10. 10)

□ 개선방안

○ 사업주 산재재해 미보고 등 위반사항 신고접수 창구 확대

-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 문제점

- 개별실적 특례요율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나,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용
-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영업정지, 공사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하는 반면, 보험료 인하율 적용을 제재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 허점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할인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주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감면 현황 (단위: 천원)

업체명	연도	일반요율(A)		개별실적요율(B)		감액(A-B)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H건설	2011	36	37,466,700	25.20	26,226,690	11,240,010
	2012	37	34,435,130	25.90	24,104,590	10,330,540
D건설	2011	36	30,939,410	23.04	19,801,220	11,138,190
	2012	37	35,210,200	23.68	22,534,530	12,675,670
S물산 건설부문	2011	36	37,407,700	23.04	23,940,930	13,466,770
	2012	37	35,436,210	23.68	22,679,170	12,757,040

< 보도자료 >

-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해 1조 1,376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가 빈번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추세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000 언론 '13. 10. 10)

☐ 개선방안

○ 산재 미보고 과태료부과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인하율 감액 적용

- 개별실적요율 인하율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장은 인하율을 감액하는 방안 연구 조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는 중대재해, 산재 미신고 등에 관하여 요율인하 인정 취소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산재보험 교육은 형식적 운영

- 근로자들이 산재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급여 신청을 기피하거나 절차가 단순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재정 악화 초래

< 실태조사 >

- 학원 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동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사례조사 '14. 1. 22)
-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여부 조사결과 인식경로 부분에서 직장 관리자들을 통해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동료 29.6%, TV 10.3%등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수단으로서 직장 내 교육이 가장 효과적임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인식 및 대응유형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2년)

☐ 개선방안

○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직장내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 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산재보험제도 전반 교육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개정안 (예시)】

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내용(현행)	교육내용 (개정안)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IV

조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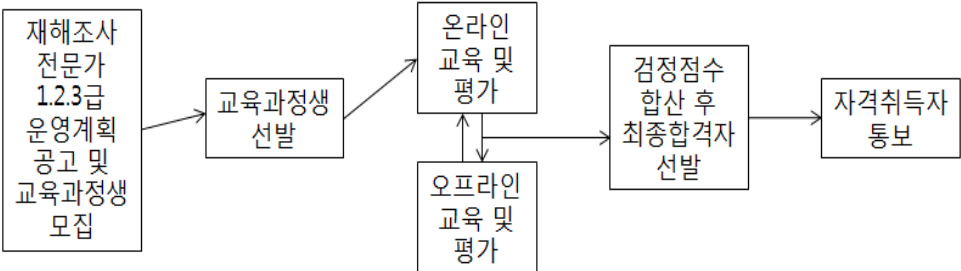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세부개선 과제	관계법령	관련부처	조치기한
1. 산업재해 보고 의무 강화	1-1. 산재 미보고 사업주 신고유인제 도입	「사 업 지 침」	고용노동부	2014. 1 0 .
	1-2. 사업주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 인상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5. 4.
	1-3. 산재 미보고 신고접수 창구 확대	「사 업 지 침」	고용노동부	2014. 1 0 .
2.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인하율 적용 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015. 4.
3. 산재보험 인식교육 실시 근거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5. 4.

【참고자료 10】 재해조사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 운영방안

구분	세부 내용
등급체계	■ 재해조사 전문가 1급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에 있어서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준 높은 지식 및 실무 능력 가진 전문가 • 산재보험 재해조사 실무경험을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 •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재해건 대해서도 고도의 실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가 • 주로 다빈도 재해에 대한 높은 처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자격취득 기준	■ 재해조사 전문가 1급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취득 이후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4년 이상된 자 이면서 보수교육을 4회 이상 이수한 자 중 검정을 통과한 자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취득 이후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2년 이상된 자가 재해조사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자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 재해조사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재해조사 전문가 3급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을 통과한 자
검정기준	■ 재해조사 전문가 1급 •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산재보험 재해조사에 관한 팀 관리, 자문, 분석, 평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 이론적 지식·기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난이도 높은 사고성 및 질병성 재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 일반적인 지식·기술 및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주로 발생하는 사고성 및 질병성(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재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방법	■ 재해조사 전문가 1급 • 주관식 논문형 80점 이상(100점 만점) • 구술형 면접 80점 이상(100점 만점)

구분	세부 내용
	· 업무수행평가 80점 이상(100점 만점)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 온라인 강의는 강의 수료 후 평가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 집합교육은 실습점수(일종의 작업형)로 평가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 업무수행평가 70점 이상(100점 만점)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 온라인 강의는 모든 강의 수료 후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 집합교육은 실습점수(일종의 작업형)로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 업무수행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취득절차	 <pre> graph LR A[재해조사 전문가 1,2,3급 운영계획 공고 및 교육과정생 모집] --> B[교육과정생 선발] B --> C[온라인 교육 및 평가] B --> D[오프라인 교육 및 평가] C --> E[검정점수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D --> E E --> F[자격취득자 통보] </pre>
자격 유효기간	· 보수교육을 2년 이상 수료하지 않을 때 자격 취소
보수교육	· 연 1회 실시(2박 3일 과정)
우대사항	· 인사상 가점(등급별 차등 가점) · 해외 산재보험 기관 방문기회(최고 득점자)
교육시간 (2,3급)	· 온라인강의 60시간 · 오프라인교육 1박2일 8회(80시간) ·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교육 2회
교육과목 (2,3급)	■ 산재보험 재해조사 2급(심화과정) · (공통과정)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관한 이해 및 실습 심화과정, 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 (의학과정) 중급 의료교육1(정형외과), 중급 의료교육2(신경외과) · (사고성 재해 교육과정)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및 실습, 구상권에 대한 이해 및 행사 실습, 보험급여 부정수급 교육 · (질병성 재해 교육과정) 산업위생학, 산업독성학, 인간공학,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진폐에 대한 이해 ■ 산재보험 재해조사 3급(일반과정) · (공통과정) 산재보험 및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한 이해,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관한 이해 및 실습, 보험급여 산정기준,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제, 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 (의학과정) 기초 의료교육

구분	세부 내용
	· (사고성 재해 교육과정)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이해,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및 실습 · (질병성 재해 교육과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뇌혈관·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및 재해조사 실습
관리전담조직	· 인재개발원(요양부와 수시 협의)

【참고자료 11】 재해조사 사내자격 과정별 교육목표 및 내용

1. 2급 교육과정

□ 교육 목표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 과정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모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높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조사 전문가 2급 자격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공 통 과 정	산재보험 적용관계 심화 과정- 근로자성 판단	온라인	3h	▪ 근로자 개념 및 판단 ▪ 관련 법령, 질의회시, 판례 등 해설 ▪ 최근 동향
	산재보험 적용관계 실 습 심화과정- 근로자성 판단	오프 라인	5h	▪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교육 ▪ 근로자성 판단 관련 실습
	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오프 라인	2h	▪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의 학 과 정	중급 의료교육(정형외과)	온라인	6h	▪ 근골격 해부학 ▪ 정형외과 검사 및 판독법 ▪ 관련 손상 등에 대한 이해
	중급 의료교육(신경외과)	온라인	6h	▪ 신경해부학 ▪ 신경학적 검사 및 판독법 ▪ 관련 손상 등에 대한 이해
사 고 성 재 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이 해 심화과정	온라인	4h	▪ 출장중, 출퇴근중, 행사중, 휴게시간중 재해 등 난이도가 높은 재해유형의 사례 분석 ▪ 심사실, 재심사위, 소송 취소사례 분석
	사고성 재해유형별 재 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오프 라인	10h	▪ 난이도가 높은 사고성 재해건에 대한 재해조사 실습(예: 사업주 날인거부, 사업주·근로자 의견이 상이, 출퇴근중 사고 등)
	구상권에 대한 이해	온라인	4h	▪ 구상권 발생사례 분석(시설물 결함, 요양중 의료사 고 등), 구상권의 범위 등 ▪ 구상처리 관련 각종 법령(도로교통법, 제조물책 임법, 자동차보험법 등) 관련 교육, 과실비율 판 단 등 ▪ 구상권 행사 방법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
	구상권 행사 실습	오프 라인	5h	▪ 구상권 행사 사례 교육 ▪ 구상권 행사 실습
	보험급여 부정수급 교육	온라인 / 오프 라인	4h / 2h	▪ 일반 보험범죄 동향 ▪ 산재보험 부정수급 발생현황, 관련 사례 및 재해 조사 착안사항 분석 ▪ 산재보험 부정수급 수사기법(각종 조사방법 등)
질 병 성 재 해	산업위생학	온라인 / 오프 라인	5h / 2h	▪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및 노출평가 등
	산업독성학	온라인 / 오프 라인	5h / 2h	▪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독성기전과 건강상의 영향 등
	인간공학	온라인 / 오프 라인	5h / 2h	▪ 인간공학 개론 ▪ 작업생리학(육체적 작업능력과 작업부하의 평가 방법, 작업환경 평가 방법 등) ▪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 근골격계 질병(부담작업 범위, 작업분석, 작업측정, 유해요인 평가, 작업부하 평가기법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심화과정	온라인	12h	▪ 근골격계, 뇌혈관·심장질환 이외 업무상 질병(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질병, 림프조혈기계질병, 피부계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 ▪ 업무와 질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 질병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 관련 지침 ▪ 직업병 진단 심의의뢰 및 역학조사
	질병성 재해 재해조사 실습 심화과정	오프 라인	20h / 참관 1회	▪ 유해요인, 작업환경 조사 ▪ 직업력 조사 ▪ 개인력 조사 ▪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 그밖의 업무상 질환 재해조사 실습 ▪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해조사 실습	오프 라인	10h	▪ 개별 사례별 판정위 심의안건 서류 검토 및 판정 관련 주안점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오프 라인	10h	▪ 개별 사례별 판정위 심의안건 서류 검토 및 판정 관련 주안점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온라인	5h	▪ 정신질환(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포함)에 대한 이해 ▪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 ▪ 정신질환의 인정기준 및 사례 ▪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 관련 지침
	정신질환 재해조사 실습	오프 라인	10h / 참관	▪ 조사실무(의료기록, 개인력 등 조사방법, 근로자 및 사업주 문답조사 요령 등) ▪ 관련 의료기록 종류 및 이해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1회	▪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 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관
	진폐에 대한 이해	온라인	3h	▪ 진폐의 개념, 인정기준 등 ▪ 적용관계 확인 ▪ 요양결정 절차 ▪ 진폐 보상 관련 제도 ▪ 관련 규정

2. 3급 교육과정

□ 교육 목표

- 산재보험 재해조사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 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질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이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조사 전문가 3급 자격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공통과정	산재보험 및 업무상 재해 개념에 대한 이해	온라인	6h	▪ 산재보험 관련 이론적 배경(사회보장제도와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 및 지위,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특성 및 사회보장적 특성 등) ▪ 업무상 재해 판단 이론(업무상 재해 개념,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개념 및 적용 등)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 총론(인정 범위, 인정기준 등) ▪ 업무상 개념 및 재해조사 관련 법령, 규정 등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한 이해	온라인	8h	▪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 사업종류 및 분류기준, 업종별 예시 ▪ 최초건 처리시 사업장 적용관계 관련 사례교육(예: 일반사업 적용기준, 건설업 적용기준, 생산제품 설치특례, 업무상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등) ▪ 근로자 개념 및 판단기준 ▪ 근로자 해석에 대한 지침 ▪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교육(특히 최초건 처리시 빈번한 사례 중심)
	산재보험 적용관계 실	오프	10h	▪ 사업장 적용관계 관련 사례교육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습	라인		▪ 사업장 적용관계 처리 실습 ▪ 근로자성 판단 관련 사례 교육 ▪ 근로자성 판단 실습
	보험급여 산정기준	온라인	4h	▪ 임금의 정의, 지급방법 ▪ 최초 평균임금 산정 ▪ 통상임금 개념 및 산정 ▪ 통상근로계수,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제	온라인 / 오프라인	3h / 3h	· 의사소통 일반 이론 · 의사소통의 실제(첫 면담시의 의사소통, 문답조사시의 의사소통, 사업주와의 의사소통 등)
	직무스트레스 대처교육	오프라인	2h	·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향상 훈련 프로그램
의학과정	기초 의료교육	온라인	4h	· 각종 의료기록의 종류 및 읽는 법 · 의학용어, 상병코드 등에 대한 이해
사고성재해	사고성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이해	온라인	5h	· 사고성 재해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빈도 상병에 대한 이해 · 사고와 상병간의 연관성, 재해경위에서의 상병 확인 착안사항 · 상병코드에 대한 이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이해	온라인	10h	· 재해유형 및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이해(업무수행중, 출장중, 시설물, 출퇴근중, 행사중, 휴게시간중, 특수한 장소, 제3자 행위 등에 대한 인정기준, 관련 사례 등) ·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 평균임금 산정 · 구상권 관련 법령 및 구상권 범위, 실무처리방법 ·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유형 및 재해조사시 착안사항
	사고성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실습	오프라인	20h	·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사례 교육 · 재해유형별 재해조사 실습 · 구상권 행사 실습
질병성재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온라인	7h	· 업무상 질병 분류, 관련 상병,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등 · 업무와 질병간의 연관성 관련 사례 교육 · 질병유형별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질병성 재해 재해조사 실습	오프라인	15h	· 근로자 개인의 과거력, 가족력, 환경력 등 조사방법 · 근로자의 직업력 조사방법 · 사업장 작업환경, 작업공정 등 조사방법 · 조사실무(문답조사, 현장조사, 동영상촬영 등) · 조사복명서 작성(조사결과에 대한 정리) · 평균임금 산정 · 업무상 질병 재해조사 실습

교육과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내용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	온라인	8h	· 근골격계 질환 및 업무상 인정 기준 · 업무와 상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 관련 지침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오프라인	20h / 참관 1회	· 조사실무(개인력, 환경력, 직업력, 작업환경조사 주안점, 문답조사요령, 현장조사방법, 동영상 촬영 등) · 근골격계 시트 작성방법 ·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 판정위 참관
	뇌혈관 ·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온라인	5h	· 뇌심혈관계 질환 및 업무상 인정 기준 ·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 업무와 상병간의 연관성 사례 교육 ·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 · 관련 지침
	뇌혈관 · 심장질환 재해조사 실습	오프라인	10h / 참관 1회	· 조사실무(개인력, 직업력, 작업조건조사 주안점, 문답조사요령, 사업장조사방법 등) · 재해조사시트 작성방법 · 조사복명서 작성방법 ·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조사 실습 · 판정위 참관

【참고자료 12】 사내자격인증제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 민간기업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1	삼성SDS(주)	INNOVATOR
2	(주)헤인	건설기계정비전기, 엔진, 유압, 동력전달
3	(주)에스원	방재관리사
4	삼성에버랜드(주)	SIX SIGMA
		Hygienics & Safety Instructor
		푸드테이너
		GCM(Golf Course Manager)
		ESMP
		EZEC
5	한전KPS(주)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핵연료장전, 품질, 비파괴검사, 용접, 공업세정, 송전정비, 크레인운전
6	LG전자(주)	SIX SIGMA
		기술력우수SE
		Digital Consultant
7	삼성전기(주)	SIX SIGMA
		AMEE
8	삼성전자(주)	디지털마스터
		LEAD4급
		반도체요소기술운영사
9	삼성전자서비스(주)	가전군, AV군, IT군, ANYCALL군
10	엘지엔시스(주)	SIX SIGMA
11	(주)엘지씨엔에스	ATM, CD, BP, 통합단말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12	제일화재해상보험(주)	Assistant
		JOC(Master Degree, Spe재해조사alist Degree)
13	현대중공업(주)	취부사, 마킹절단사, 배관조립사, 전기조립사, 목의장사, 중방식도장사, 기관설치사, 목형사, 조형사
		전자조립사
14	대림자동차공업(주)	이륜차정비기술자격
15	(주)신도리코	Sindo Certified Engineer
16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EQ, 소각처리EG
17	(주)하이마트	SALES MASTER
18	매직서비스(주)	CS Engineer
19	(주)삼성피앤에이	철강포장관리사
2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BMW Techni재해조사an Level
21	대한항공(주)	화물실무자격(1·2·3급), 여객실무자격(1·2·3급)
22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	뷰티컨설턴트(1급,2급), 두피모발관리사(1급,2급), 메이크업아티스트(1급,2급), 피부미용관리사(1급, 2급)
23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하수처리사, 소각처리사
24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커피마스터(1급, 2급, 3급)
25	(주)이수페타시스	PCB Academy(3급, 4급)
26	(주)신세계	패션어드바이저(샵마스터 부문, 직영사원 부문)
27	삼성전자로지텍(주)	가전제품설치가격, IT제품설치가격
28	(주)명문코리아	CS Star
29	(주)폴무원홀딩스	SIX SIGMA(BB/GB)
30	(주)교보문고	북마스터
31	한양이엔지(주)	배관용접(1급, 2급, 3급)
32	CJ프레시웨이	Foodservice Hygienist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33	(주)용평리조트	리조트경영관리사(초급, 중급)
34	STX조선해양(주)	포세이돈레벨인증
35	태산엘시디(주)	SIX SIGMA(GB, BB)
		LCM검사원자격(MATURE)
36	(주)하이프라자	Digital Consultant
37	(주)케이티	KTCC(2급, 1급)
		KTCC(2급, 1급)
		KTCB(특급, 1급, 2급)
		KTCM(2급)
38	(주)한국번디	G-KBC(Level I)
39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제조(1급, 2급)
40	(주)파리크라상	M.B.P(1, 2, 3급)
		W.B.P(B-, BO, B+, A)
		C.B.P(3급)
41	(주)아모레퍼시픽	Counselling Master
		Nail Care Master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EBRM)마스터
4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Volkswagen Techni재해조사an(Master, Expert, Advanced)
44	비알코리아(주)	던킨바리스타(2급, 3급)
4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46	한국가스공사	설비운영전문가(생산(I, II), 공급(I, II))
		설비보전기계전문가(생산(I, II), 공급(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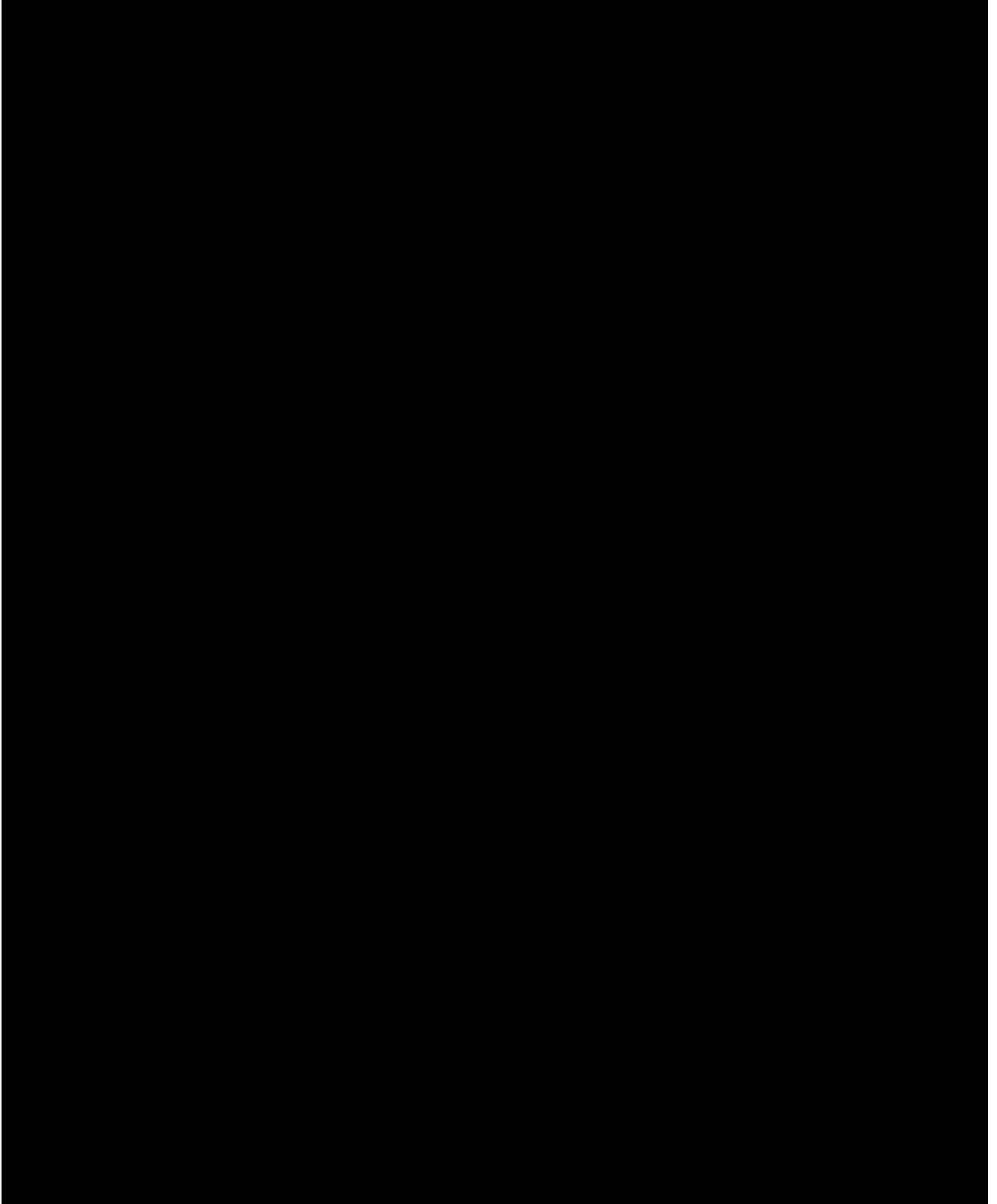
순번	사업체명	검정종목
		설비보전기계전문가(생산(I, II), 공급(I, II))
47	주식회사 만서기업	MPO
48	(주)한금포항공장	HSC(Level I)
49	한국남동발전(주)	발전정비사(2급, 3급)
50	국민연금공단	CSA(전문상담사, 상담사)
51	주식회사 피에스씨	Slab Scarfing(Engineer, Expert), Slab 절단(Engineer)
52	석원산업(주)	정비사(기계, 전기) Level I, II, III
53	(주)경동이앤에스	물류에너지 Expert
54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시스템에어컨 SVC Master(2급)
55	(주)게스텍 프카테크	자동차 차체제조(Engineer(조립))
56	(주)신신사	가전제조 Engineer
57	(주)이브자리	홈코디실무자격(3급)
58	(주)세영기업	설비점검전문가(구동, 윤활)
59	현대자동차주식회사	HMC금형기술(3급), HMC보전기술(3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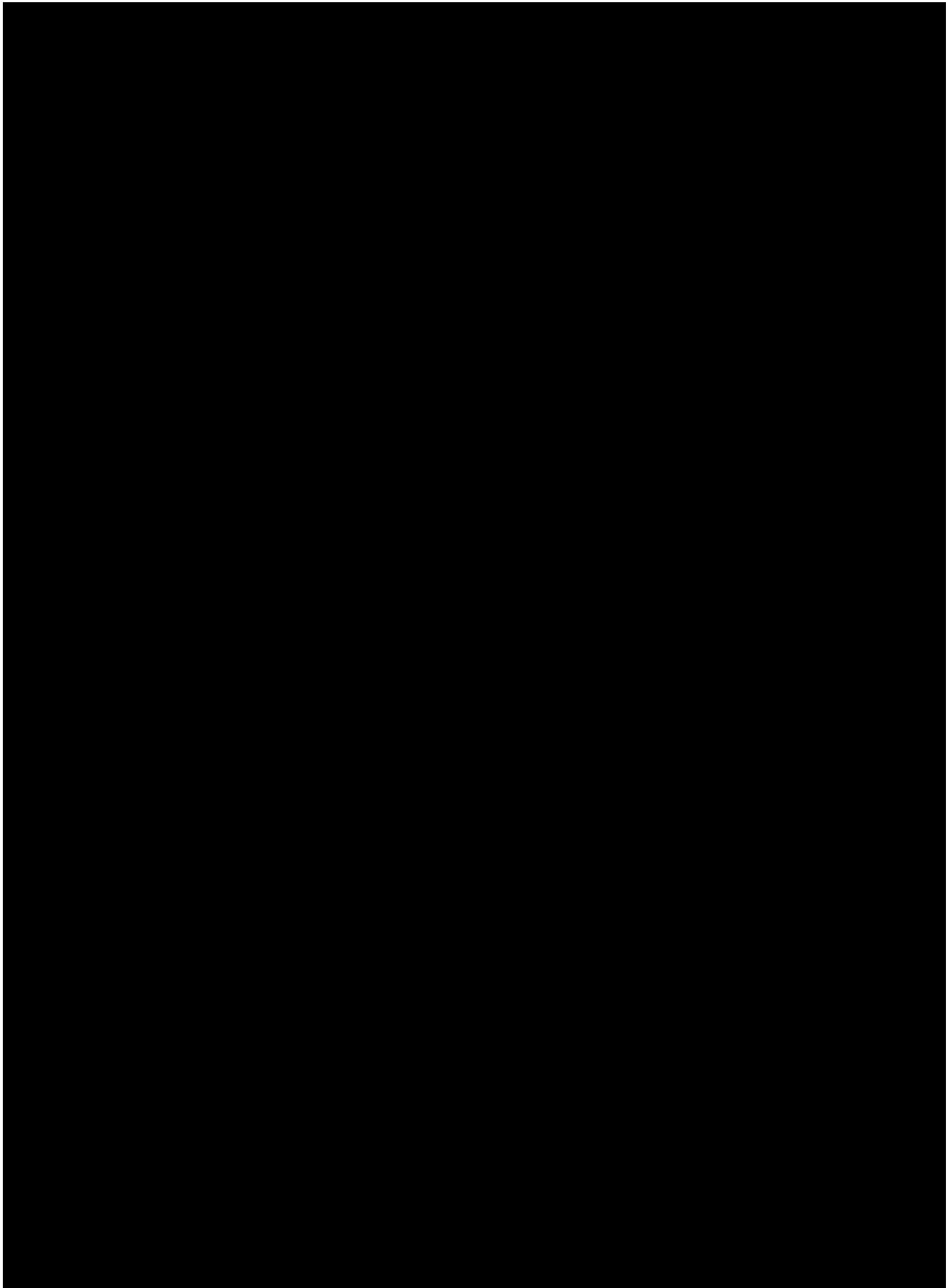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공공기관

기관명	사내자격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의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8,136억건의 DW(Data Warehouse) 자료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하여 부여하는 사내 자격인증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DW) 분석사	연간 12억건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진료 정보 5년분이 저장된 DW(Data WereHouse) 시스템의 자료를 연평균 25만회의 분석을 통하여 심사·평가업무에 직접 활용하며, 보건 의료 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사
	근 거 문 헌 활 용 지 침 (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 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을 말함. 평가원은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
국민연금공단	‘CSA(‘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노후설계 컨설턴트)’	▪ CSA 전문상담사 : CSA 전문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CSA 상담사: CSA 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CSA 준상담사: CSA 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참고자료 13 】 무료법률구조지원 협약서 전문





【참고자료 14】 비교사례 산재보험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

< 표 > 산재 보험 징수위탁지원사업 결산사항(2013년도)179)180)

		2013.12.31. 현재		
사업 단위	예산과목 세 목	예산현액 (e=당초예산에서 변)	집행액 (f)	집행잔액 (e-f)
합 계		269,863,750,000	266,488,584,000	3,375,166,000
통합징수사업		86,439,750,000	85,802,643,344	637,106,656
	고지수납관리	66,461,235,000	66,257,535,243	203,699,757
	보험료납부관리	37,844,000	34,710,760	3,133,240
	국내여비	11,794,000	9,688,410	2,105,590
	사업추진비	14,850,000	14,337,080	512,920
	관서업무비	6,000,000	5,892,270	107,730
	연구용역비	-	-	-
	일반수용비	600,000	583,000	17,000
	공공요금및제세	-	-	-
	기타운영비	600,000	250,000	350,000
	임차료	4,000,000	3,960,000	40,000
	보험료 고지수납	66,423,391,000	66,222,824,483	200,566,517
	국내여비	78,021,000	69,876,830	8,144,170
	사업추진비	8,854,000	8,057,390	796,610
	관서업무비	10,800,000	10,775,340	24,660
	일반수용비	33,632,290,000	33,483,238,883	149,051,117
	공공요금및제세	32,693,426,000	32,650,876,040	42,549,960
	채납징수관리	18,607,515,000	18,174,108,101	433,406,899
	채납관리	1,278,309,002	1,204,918,956	73,390,046
	국내여비	153,961,000	128,564,160	25,396,840
	사업추진비	17,265,000	15,904,320	1,360,680
	관서업무비	3,600,000	3,503,080	96,920
	일반수용비	448,141,780	430,333,817	17,807,963
	공공요금및제세	589,206,222	565,610,579	23,595,643
	기타운영비	7,100,000	2,580,000	4,520,000
	임차료	17,635,000	17,223,000	412,000
	포상금등	41,400,000	41,200,000	200,000
	징수관리	17,329,205,998	16,969,189,145	360,016,853
	국내여비	414,901,000	385,098,730	29,802,270
	사업추진비	35,828,000	30,339,190	5,488,810
	관서업무비	12,000,000	11,762,740	237,260
	일반수용비	2,128,677,000	2,039,327,299	89,349,701
	공공요금및제세	14,737,799,998	14,502,661,186	235,138,812
	고객지원및홍보(징수)	1,371,000,000	1,371,000,000	-
	고객서비스지원(징수)	1,371,000,000	1,371,000,000	-
	위탁사업비	1,371,000,000	1,371,000,000	-
경영지원사업		180,048,834,000	180,685,940,656	- 637,106,656

179)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전 체소요비용임. 이 중 산재보험 부분은 분담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됨(150억 상당).

180) 이를 보면 비교사업은 출연목적에 부합한 세부 집행이 가능하도록 목적출연금 결산이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일반회계 등과 구분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출연금 구분관리에 따 라 당초 계획안과 결산안이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임.

	경영지원(징수)	177,996,159,000	178,649,143,384	-	652,984,384
	종합기획조정(징수)	10,680,000	7,467,154		3,212,846
	국내여비	1,200,000	1,093,880		106,120
	관서업무비	3,600,000	2,451,200		1,148,800
	일반수용비	5,880,000	3,922,074		1,957,926
	공공요금및제세	-	-		-
	재정운용(징수)	575,347,000	566,302,070		9,044,930
	일반수용비	11,439,000	3,692,400		7,746,600
	공공요금및제세	563,908,000	562,609,670		1,298,330
	노사후생복지(징수)	176,220,852,000	176,946,659,424	-	725,807,424
	기본급여	107,626,285,000	106,329,094,570		1,297,190,430
	제수당	31,564,623,000	30,404,432,390		1,160,190,610
	상여금	5,029,361,000	4,919,289,040		110,071,960
	성과상여금	11,067,555,000	8,842,649,220		2,224,905,780
	퇴직급여비	2,097,279,000	8,780,892,120	-	6,683,613,120
	급여성복리후생비	3,298,859,000	3,116,889,353		181,969,647
	비급여성복리후생비	13,997,340,000	13,345,189,491		652,150,509
	사업추진비	41,664,000	38,320,000		3,344,000
	일반수용비	43,726,000	32,571,540		11,154,460
	피복비	-	-		-
	특근매식비	1,157,760,000	1,117,759,000		40,001,000
	위탁사업비	296,400,000	19,572,700		276,827,300
	행정관리지원(징수)	1,189,280,000	1,128,714,736		60,565,264
	사업추진비	76,230,000	71,180,056		5,049,944
	관서업무비	101,640,000	76,901,779		24,738,221
	일반수용비	193,370,000	181,393,751		11,976,249
	기타운영비	156,240,000	151,191,000		5,049,000
	월정직책급	649,800,000	636,048,150		13,751,850
	부서운영비	12,000,000	12,000,000		-
	정보관리(징수)	2,052,675,000	2,036,797,272		15,877,728
	IT기획(징수)	1,700,293,000	1,698,810,112		1,482,888
	일반수용비	1,692,308,000	1,692,062,152		245,848
	보험료	7,985,000	6,747,960		1,237,040
	IT개발(징수)	352,382,000	337,987,160		14,394,840
	위탁사업비	352,382,000	337,987,160		14,394,840
재무지출관리		3,375,166,000	-		3,375,166,000
	재원관리(징수)	3,375,166,000	-		3,375,166,000
	예비비(징수)	3,375,166,000	-		3,375,166,000
	예비비	3,375,166,000	-		3,375,166,000